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09:00 ~ 18:00
- 장소 : 엘타워 8층 엘하우스
- 주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9년도 연구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2019년 한 해 일구어낸 연구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19년 한 해 연구원은 총 29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과 범죄 현상에서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야간·심야조사, 대체복무제도 등 사법개혁 현안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 또는 시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의 그루밍(grooming), 소비자 ‘갑질’ 폭력 등과 같이 최근 이슈화된 범죄현상을 포착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견지하였습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한층 추동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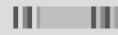
일 정 표

❖ 일시 : 2020년 1월 6일(월) 09:00~18:00

❖ 장소 :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약 100여명 수용)

시 간	내 용	
09:00~09:30 (30분)	☒ 등록	
전체사회		사회 : 장다혜 (기획팀장)
09:30~10:00 (30분)	☒ 개회사 및 축사 ☒ 기념촬영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0:00~11:00 (60분)	사법 개혁 세션	▷ 사회: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발표1: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야간·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 발표2: 허 황 부연구위원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 발표3: 김재현 부연구위원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 발표4: 김한균 연구위원(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 발표5: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형사사법 분야의 법외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11:00~11:50 (50분)	1세션	▷ 사회: 박성훈 연구위원 ● 발표1: 박성훈 연구위원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 발표2: 김영중 부연구위원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 발표3: 권수진 부연구위원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 발표4: 김정연 부연구위원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50~12:40 (50분)	2세션	▷ 사회: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 발표1: 연성진 선임연구위원(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 발표2: 김민영 부연구위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발표3: 장다혜 연구위원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발표4: 윤지영 연구위원(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12:40~14:00 (80분)	☒ 오찬	

시 간	내 용	
14:00~14:50 (50분)	3세션	▷ 사회: 박학모 연구위원 ● 발표1: 박학모 연구위원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 발표2: 윤정숙 연구위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발표3: 김유근 연구위원(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Ⅰ)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 발표4: 황지태 연구위원(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사회: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 발표1: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 발표2: 박경규 부연구위원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발표3: 김지선 선임연구위원(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Ⅳ):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 발표4: 최민영 연구위원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15:40~16:10 (30분)	▣ Intermission	
16:10~17:00 (50분)	5세션	▷ 사회: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 발표1: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발표2: 박형민 연구위원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 ● 발표3: 유 진 부연구위원(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Ⅰ)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 발표4: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 사회: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 발표1: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 발표2: 김대근 연구위원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 발표3: 김한균 연구위원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Ⅱ)) ● 발표4: 박형민 연구위원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17:50~18:00 (10분)	▣ 폐회	



목 차

사법개혁세션

1. 야간 및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3
박 미 숙 선임연구위원
2.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11
강 태 경 부연구위원
3.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17
김 재 현 부연구위원
4.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 23
김 한 균 연구위원
5.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27
강 석 구 선임연구위원

1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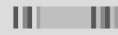
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33
박 성 훈 연구위원
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39
김 영 중 부연구위원
3.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45
권 수 진 부연구위원
4.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1
김 정 연 부연구위원

2세션

1.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65
연 성 진 선임연구위원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69
김 민 영 부연구위원
3.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75
장 다 혜 연구위원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79
윤 지 영 연구위원

3세션

1.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85
박 학 모 연구위원
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89
윤 정 숙 연구위원



3.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99
 - 김 유 근 연구위원
4.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105
- 황 지 태 연구위원

4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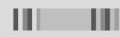
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115
- 홍 영 오 선임연구위원
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121
- 이 승 현 선임연구위원
3.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V)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127
 - 김 지 선 선임연구위원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135
- 최 민 영 연구위원

5세션

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143
- 박 미 숙 선임연구위원
2.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151
- 박 형 민 연구위원
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Ⅰ)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155
 - 유 진 부연구위원
4.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161
- 박 준 휘 선임연구위원

6세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167
- 박 준 휘 선임연구위원
2.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173
- 김 대 근 연구위원
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179
- 김 한 균 연구위원
4.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183
- 박 형 민 연구위원



사법개혁세션

● ● 자료집

1. 야간 및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_ 3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2.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_ 11
(허황 부연구위원)
3.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_ 17
(김재현 부연구위원)
4.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_ 23
(김한균 연구위원)
5.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_ 27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야간 및 심야조사의 범위와 인권보장



연구책임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법학 박사, misuk@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야간 및 심야조사 수사관행의 문제점 검토 필요

- 검찰의 심야조사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4년 이후 매년 1,000건 내외의 심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한 것이며 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장소 등 자백을 받기에 적당치 않아 심야조사를 활용함으로써 헌법상의 수면권과 휴식권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야기됨

○ 야간 및 심야조사 수사관행의 운영실태 및 법제도 분석 필요

- 야간 및 심야조사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규범적·비교법적인 분석과 인권침해사례 현황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토대로 야간 및 심야조사로 인해 야기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제시 필요

○ 야간 및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야간 및 심야조사 운영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신문방법으로서 심야조사의 법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야간 및 심야조사의 위법성을 불식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헌법상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방안 제시 필요

□ 연구방법

- 야간·심야조사 관련 쟁점 정리를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 내지 문제의식 검토
- 야간·심야조사 현황 내지 사례 파악
- 야간·심야조사 허용기준 및 수사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야간·심야조사 최소화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주요 연구내용

○ 야간 및 심야조사 현황

- 2015년~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심야조사를 받은 자가 2015년 943명, 2016년 1459명, 2017년 108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한 것이 9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의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 혹은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심야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행 범체포 사건, 임의동행 사건, 발생보고 사건 등을 24시간 지역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나 자진출석한 피조사자를 상대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음

〈표 1〉 검찰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¹⁾

(단위: 명)

연도	구분	심야조사 사유				합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기 타	
2008		250 (80.9%)	0	54	5	309
2009		278 (72.3%)	0	60	46	384
2010		411 (84.9%)	1	44	28	484
2011		453 (94.9%)	0	23	1	477
2012		509 (97.1%)	0	14	1	524
2013		691 (95.1%)	1	29	5	726
2014		1,162 (91.9%)	0	88	14	1,264
2015		901 (95.5%)	9	25	8	943
2016		1,412 (96.7%)	13	27	7	1,459
2017		1,067 (98.2%)	1	18	0	1,086
합계 (08~17)		7,134 (93.2%)	25	382	115	7,656
2018.6.		665		10	7	682

주: 1) 기본자료 출처는 2018년 10월 20일자 금태섭 의원실 배포한 보도자료 “검찰 심야조사 올 상반기만 682명” 내 통계 자료이며, 전체 대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비율은 연구자가 별도 표시한 것임

- 2014년 검찰의 심야조사는 2013년 전년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늘어났으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심야수사가 실무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야조사가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조사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경찰 및 검찰에서 훈령 형식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심야조사 금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심야조사시 당사자는 수사관의 심야조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사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심야조사를 허용할 것은 아님

○ 야간 및 심야조사 금지를 위한 논의경과

-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16일자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이라는 권고문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였음. 이는 심야조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는 수사관행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이후 경찰 인권 보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범죄수사규칙에 구체화되기에 이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 분과 권고문(2017.10.16.자)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에서 일부 발췌]

1. 강압적인 수사관행 지양

경찰관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반말, 비아냥,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체포구속 위협, 심야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정신적 피로와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사사례가 다수 접수되는 바, 조사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① 명시적으로 경찰관의 반말, 폭언, 강압적 어투, 비하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 및 ② 심야조사(자정 이후 조사)를 특별한 사정 없이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③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2월 7일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이라는 권고문에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강하게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반영할 것을 공식 권고하였으며, 심야조사 관행 관련한 개선방안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규정된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어도 밤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함. 이는 야간 8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오후 11시까지만 인정해주라는 취지여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헌법상 수면권 및 휴식권의 보장을 이행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정책을 제시한 점에서 종래 수사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임. 특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심야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밤 8시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의 조사, 일명 야간조사도 더 이상 합법적인 수사기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5차 권고안(2017. 12. 7.자)에서 일부 발췌]

3.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앞으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늦어도 당일 20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당일 23시를 넘을 수 없다.
- 피의자에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 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2018. 3. 25.까지 개정하여야 함)에 반영되도록 한다.
- 향후 ‘인권보호수사’의 원칙이 ‘준칙’ 차원을 넘어 ‘수사절차법’의 신설 또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심야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분석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는 수사가 시작되는 소환 직후부터 폭행과 가혹행위가 시작되고, 피의자의 고립을 위해 의도적인 연출과 인권침해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장시간 대기과 조사, 잠 안 재우기 등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회유·협박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내부 규정으로 정해놓은 절차(동의 및 허가서 작성 등)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피조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 인권침해 사례에서 심야조사를 할 만큼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수사기관에서 심야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수면 및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조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심야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 ‘신속한 조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심야조사가 피의자의 수면권이나 휴식권을 침해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판단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됨
- 심야에 장시간 조사로 인한 진술의 강제성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특히 심야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받는 것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큼
- 장시간 심야조사로 인한 피로도는 피의자측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임. 심야조사에 대한 부담감이나 심야조사 결과 얻은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심야조사의 실익은 크지 않음
- 피조사자인 피의자도 심야조사가 금지 제한되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예도 있을 수 있음. 일부러 야간에 출석하여 장시간 연속조사를 피하는 예도 있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음

○ 비교법 검토 결과

- 소위 ‘잠 안 재우기’라는 고전적 수사방법은 여전히 자백 획득을 위한 심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허용여부에 대한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은 약간씩 다름
-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등 국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 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가이드라인이 마련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준수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음. 피의자신문 시 미란다원칙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과 긴급한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권리,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 가족이나 친지 등에 구급사실의 통지 등의 권리가 보장됨

○ 심야조사와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설상으로는 야간조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다만 잠을 재우지 않고 신

문을 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판단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이로부터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봄

- 소위 '잠 안 재우기'는 고문에 해당하며 위법한 신문방법이므로 이로부터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신문방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담아낼 방안이 필요함
- 소위 '잠 안 재우기' 내지 야간 또는 심야수사의 경우, 대부분 진술 내지 자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법이 금지하는 어떤 불법적 방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 단순히 밤을 새워 조사했다는 것과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철야조사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때문에 심야조사 자체를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서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정책제언

○ 야간 및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 심야조사의 문제는 사전적 의미에서 심야 개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밤 늦게 피의자조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나 조사받는 피의자 모두 심야조사로 인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소위 워라벨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수사실무 및 수사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인간의 기본권보장 강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여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피의자신문이 금지되는 야간·심야시간대를 밤 8시 이후로 하여 10시 이후 수사는 전면 금지하고 밤 8시 이후의 야간조사는 휴식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로써 조사자나 피조사자 모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근무환경과 시간 속에서 피의자신문이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야간조사의 허용사유의 명확화

- 야간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의 판단재량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즉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피로감을 느낄 만한 야간조사는 제한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둘째 공범자의 검거와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야간조사를 허용하되 변호인의 참여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함
- 다만,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긴급하고도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는 피체포자를 유치장에 구금해두고 근무시간내에 조사를 할 수 있고, 야간에 갑자기 체포된 피조사자의 경우 변호인을 바로 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야간 또는 심야에 체포된 현행범인이 특히 야간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나 불구속 피의자가 퇴근 이후 야간에 조사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 당사자 동의 요건의 삭제

- 야간 및 심야조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의의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변호인의 입회를 조건으로 야간 및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것 또한 강제성이 있을 수 있고, 변호인의 입회를 위해서는 시간을 요한다는 점, 당사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시간 조사시 휴식권 및 음용권 보장

- 피의자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 피의자가 조사중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신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야간 및 심야조사 금지를 위한 향후 조치

- 2019.10.7.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 폐지를 천명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조서 열람만 가능하도록 함. 심야조사 폐지는 2019.10.7.부터 바로 시행됨.
- 이를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비교해보면, 현행 심야조사는 ‘자정’ 이전까지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한데 반하여, 검찰개혁안은 원칙적으로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밤 9시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고, 둘째 밤 9시 이후 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서면 요청’과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셋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경우 체포 후 구속여부 판단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준칙 제40조 제2항)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금지)

-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공통)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 한편 검찰은 2007년 5월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지검별로 ‘야간 및 심야조사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지검별 지침의 공통적인 내용은 1) 21시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를 ‘야간조사’로 규정하고 야간조사는 인권보호담당관(소속 부장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2) 24시 이후 이루어지는 조사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심야조사는 인권보호관(차장검사)의 허가과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에 의하면 피

조사자의 동의가 모든 심야조사에 필수는 아니나, 지검별 지침은 모든 심야조사 시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각 지검별 운영지침에 의하면 9시 이후 야간조사의 경우에도 인권보호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밤 12시 이후의 심야조사의 경우에만 동의와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10.7.자 검찰개혁안은 9시 이후의 야간 및 심야조사를 금지하면서 밤 9시 이후의 야간조사부터 당사자의 서면요청과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현행 각 지검별 시행현황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진일보한 심야조사 폐지 규정 마련과 실무운영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 야간·심야조사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현실적 이행방안 확보와 인권침해 최소화
- ☐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대검찰청 심야조사 억제를 위한 수사지침 개정 방안 마련 및 실무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 주요 키워드

※ 심야조사, 야간조사, 잠 안재우기, 위법한 신문방법, 자백의 임의성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강태경 부연구위원(법학박사, taegong@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허 황 부연구위원(법학박사, pistolhh@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일대 전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결 2018. 6. 28. 2011헌바379 등), 대법원은 병역법 제82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앙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 취지 판단(대판(전) 2018. 11. 1. 2016도10912)
- (대체복무제 도입 예정)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하면서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도록 입법시한 제시(기한 내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종류조항은 2020. 1. 1.부터 효력 상실)

○ 연구목적

- (합리적 대체복무제 모델 제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시행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비교법 연구
- 인권기구 결의·권고 분석
- 국내 판결 등 분석
- 대만·독일의 대체복무제도 공론화 과정 분석

○ 심층 면접

- 대체복무제도 관련 전문가 인터뷰

○ 담론 분석

- 대체복무제도 관련 언론보도, 시민단체 찬반 성명 등에 대한 내용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동향 분석

- **(국내 논의 동향)**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2965)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에서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 중
- **(국제 논의 동향)**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30여 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운영 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대체복무는 징벌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익적이며 민간적(또는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기준 제시

○ 대체복무제도 운영 사례(해외)

- **(독일)** 대체복무제 실시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 등 개인적 신념까지 넓게 인정(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 병력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징병제가 폐지된 현재 의무적 사회복무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대만)** 국군의 정예화 정책에 따라 병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병역의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무로서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부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의 길 열림(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
- **(대체복무제 주요 특징)**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안전,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민간·공공 분야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대체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

○ 기존 대체복무제도 모델 분석

- **(대체복무제의 쟁점)** 대체복무 신청 자격, 판정기구(성격, 소속, 구성), 심사 및 불복방식, 대체복무의 내용(기간, 분야, 형태, 처우, 관리·감독, 해태 제재, 만기복무 효과)
- **(시민사회안)**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전후하여 제시된 다양한 대체복무제안(案) 중에서 시민사회안이 대체복무의 내용·기간·방식 등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됨

○ 대체복무제도 모델 제시

- **(대체복무 내용)** 현역복무기간의 1~1.5배 범위 내의 기간 동안 비군사적인 사회복지 및 공익 분야에서 합숙 복무 원칙(단,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숙 여부와 복무기간에 차이 둘 수 있음)
- **(대체복무 심사)** 대체복무 적격 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 정책제언

【대체복무제 모델】

○ 대체역 편입 신청인

자격

-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보충역)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예비역 또는 보충역
- 복무 중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 대체역 편입 심사기구

성격

- 행정형 위원회
 - 대체역 편입 심사 및 결정 권한 보유
 - 행정형 위원회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신속성 확보

소속

- 국무총리 산하
 - 대체복무 분야의 확대 등 정책 결정 권한 확보
 - 대체복무 분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조정 가능성 확보
 - 군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심사의 중립성 확보

구성

- 위원 자격
 - 학계·법조계·중앙정부부처 경력 있는 전문가,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종교인’, ‘정신과 전문의’를 위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부적절)
- 위원 구성비
 - 위원 자격별 비율: 각 자격별 편중이 없도록 규정
 - 민간위원 비율: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규정
 -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정
 - 추천권자: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민간단체
 - 임명권자: 국무총리
 -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대체역 편입 심사

신청방식

- 대체역 편입 신청서 등
 - 신청서 및 이력서: 학교 및 직업교육 과정, 직업경력 등 기재

- 양심상 결정에 관한 소명서: 양심상 결정계기에 대한 상세한 기술
- 증빙자료: 이력서 및 소명서에 대한 증빙자료
- 신청 시기
 -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 신청
 - 신청에 따라 소집 연기

심 사

- 서면심사 원칙
 - 필요한 경우 대면심사: 신청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결 정

- 결정 기한
 - 서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 결정
 -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불복방식

- 신청인이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심사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사 신청
 - 위원회는 서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결정
 -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대체역 편입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

부정편입

- 부정편입자에 대한 제재
 - 대체역 편입 취소 및 병역기피에 준한 처벌

○ 대체복무의 구체적 내용

복무분야

- 대체복무가 허용되는 업무
 - 사회복지 관련 업무: 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의 보호·요양·이동·재활에 관한 보조 등
 - 공익 관련 업무: 교정·소방·재난·구호·산림감시·환경감시 등
- 대체복무가 금지되는 업무
 - 개인화기·공용화기, 도검 등 일체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체의 훈련 또는 보조 행위

- 그밖에 대체복무요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신체등급에 따라 적절한 업무 분야 체계 마련

복무방식

- 합숙 복무 원칙
 -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합숙 복무가 어려운 경우 출퇴근 복무

복무기간

- 대체복무제 시행 단계에 따른 탄력적 기간
 -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 단계: 육군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 대체복무제 확대·정착 단계: 육군 현역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단축
- 대체복무의 업무 및 방식에 따른 탄력적 기간
 - 현역 복무의 난이도와 비교하여 대체복무 기간 차등화
 - 합숙형 방식과 출퇴근형 방식의 대체복무 기간 차등화

관리감독

- 대체복무 업무 분야 관련 부처
 - 대체복무 기관에서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담당자 지정
- 심사위원회
 - 대체복무제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복무해태제재

- 복무규율 위반 및 복무 이탈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징계 체계에 준함 (예: 복무연장)
 - 대체역 편입 취소 조치는 대체복무제의 취지에 어긋남

처우

- 차별금지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등한 처우
 - 차별금지 조항
- 고충담당관제도
 - 대체복무 과정 중 발생하는 차별, 인권침해와 같은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담당관 제도 도입

효과

-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인권 친화적 제도 설계의 방향 제시

-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내외 인권규범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단일한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을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인권 친화적 대체복무제도의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제도 정착 환경 조성에 기여

- 극단적 대립 구도로 흐르기 쉬운 공론화 과정에 새로운 프레임을 덧입힘으로써 대체복무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주요 키워드

※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결정, 대체복무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재현 부연구위원(법학박사, jkim@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임정호 부연구위원(법학박사, limjh@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죄로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표 1〉 2008년~2018년 피의사실공표죄 처분현황

	접수	처리계	기소				불기소							타관 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각하	
				구속	불구속									
2018	18	18					18	8			1	0	9	0
2017	41	33					29	11			2	2	14	4
2016	38	21					16	5		2			9	5
2015	32	28					27	6		8		1	12	1
2014	43	25					16	7		1			8	9
2013	27	11					11	1		3	2	1	4	
2012	23	22					22	12		1			9	
2011	38	37					32	14		4			13	5
2010	40	37					35	15		3	1		13	2
2009	46	42					39	8		12	1		18	3
2008	8	8						6	4					2

* 출처: 대검찰청 검찰연감에서 발췌 및 편집

- 본죄로 처벌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형법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왔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무죄추정이나 기타 법익을 해하는 형태로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볼 때가 왔다고 보임.

○ 연구목적

-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을 통해 피의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 파악할 문제는 아닐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 실태조사

-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신고율 및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 실태파악
- 수사공보준칙 위반시 내부적으로 조사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파악

○ 문헌 및 비교법적 연구

- 현행법 체계 하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체계 및 법리 분석
- 관련 사례와 판례 분석(하급심 등)
-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워크숍 개최 및 자문회의

- 워크숍 개최
-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 특히 언론기관 및 수사기관 담당자와 회의를 함으로써 실무상 발생하는 고충이나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론이 주장되고 있음.
- 그러나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기능 또는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는 보호법익의 내면에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자리 잡고 있음.
- 따라서 공정한 수사기능 내지 국가의 공정한 수사권행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

○ 헌법적 관점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

-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이 상호 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피의사실공표죄가 없을 경우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와 법익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죄를 운용할 수 있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 자체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피의사실공표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

-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법관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음. 특히 영장심사판사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언론기관의 경우 본죄의 독자적인 주체는 될 수 없으나 수사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 처벌은 가능함.
- 피의사실이란 고소장, 범죄인지서, 체포 및 구속영장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바, 피의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피의사실’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지만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상 이를 포섭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및 인격권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라면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피의사실의 의미나 내용은 구체적이고 특정되어야 하지만 매우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반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소박한 가치평가 정도로 해석가능하면 충분함.
- 나아가 이미 언론을 통해 사회 일부에 알려진 피의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표는 일반인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격권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알려진 피의사실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바,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있으나 피해자인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요나 회유 등 모종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음.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국가적 법익 이외에도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나아가 이익교량의 대상이 공익대 공익의 관계에 있어 비교형량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긴급피난이 아닐지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므로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가능한데, 특히 검찰청이나 경찰청 훈령 절차에 의한 공보업무에 있어서 훈령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내규와 같은 훈령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며, 죄형법정주의는 유추적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유추적용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물론, 제310조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볼 때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고, 보호법익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명예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피의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국가의 공

정한 수사권 행사라는 넓은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피의사실공표죄에서의 피의사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계속된 수사결과 무혐의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진실이 거짓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진실성 개념과 맞물려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당화 사유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본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형법 제310조를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정책제언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등 훈령의 법령승격

- 국가기관의 내부규율에 불과한 준칙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준칙들이 훈령에만 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2019년 5월 2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도 가칭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내부 훈령을 법령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하여 위 준칙에 갈음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종래 준칙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이는 향후 본 준칙의 법령승격을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또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강력범죄사건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이미 사건내용이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진 경우,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의 공개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는 피의사실공표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문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 강화

- 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실제로 기소가 되어야 할 것임.
-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재정신청제도는 아직까지 그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은 예외적으로 기소강제주의를 택하는 방안,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불법과 비리 등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본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재수사 및 기소강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수사공보 자문위원회 제도의 신설

-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 제11조에 의하면 수사사건의 공개를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검찰청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공보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공보 여부 및 공보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제도 마련

- 과거 특정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하고 빈번하게 수사 상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공보 대상자가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고, 위법한 수사공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과 같은 사후적인 구제방안만으로는 공보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수사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보 대상자 혹은 공보로 인해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수사공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고 공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공보 대상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헌법 및 형법적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련 쟁점을 검토
- 본죄의 보호법익, 실질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에 입각하여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지금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본죄에 대한 학술적 관심 재고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관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사공보준칙 등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
- 본죄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합리적 운용에 기여
- 향후 법무부 준칙의 법령승격을 위한 형사사건공개 관련 특별법안 마련시 가이드라인 제공

□ 주요 키워드

※ 피의사실공표, 무죄추정, 피의자의 인격권, 알 권리, 언론의 자유

Human Rights and Criminal Justic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연구책임자: 김한균 연구위원
(법학 박사, hankyun@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North Korea”는 북한내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책임자 제재 필요성과 함께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따라 사법, 입법, 형벌집행 제도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 2019년 3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평화와 안전 목표에 기여함을 강조함.
- 2019년 3월 통일부는 2019년도 주요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등 정부·민간·국제사회간 북한 인권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발표함.
- 2019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대상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가 4년만에 개최되어, 북한인권문제가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주요현안으로 더욱 부각될 것임.

□ 연구방법

- 제33차 UN인권이사회 북한 UPR 참석 (5월 6-15일, 제네바)
-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책임성 관련 UN 기구, EU, 각 국 정부, 국제 NGO 제출 문건분석
-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UPR 제출문건 및 논의내용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북한내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violations)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과제임.

- 공적 책임성은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확인하면서 국제적 의제로 자리매김됨.
- 공적 책임성의 구체적 문제는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피해 북한 주민(또는 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는 문제,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개선하는 문제,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짐.
- 2017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문제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지면서 북한측에서도 국제인권기제와 협력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에 공적 책임규명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two-track approach)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인권 공적책임 전문가 그룹은 북한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적 책임규명은 법적 필요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법치와 인간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원칙에 기반한 공적 책임규명 절차, 그리고 북한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포괄적, 다각적 접근방식을 제안함.
- 한국 정부대표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모든 인권체제의 관여 필요성,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공적 책임 규명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과 공적 책임규명의 중요성

-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공적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됨.
- 북한은 아직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고, 북한 자국 내에 유엔 인권대표사무소나 인권 전문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내 언론과 시민사회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 장기적인 인권 정책과 전략을 세워가고 북한 및 관계국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함.
- 현존하는 유엔의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을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주민이 추가적인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편관할권 원칙을 활용하여 유엔조사위원회의 발견사항과 권고가 억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북한내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공적 책임성의 규명과 부과, 상호대화과 관여도 모두 필요함.

- 북한내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노력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핵심개념인 공적 책임성은 단순명료하면서도 입장차 논쟁과 현실적 난점 또한 불러일으키는 개념임.
-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인권을 빙자한 북한정권 비난이나 국제형사재판의 일방적 추진이 정치적 갈등이나 동북아지역 긴장을 초래한다면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임.
- 남북한 형사법을 각각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 남북한이 미가입한 형사사법 분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남북인권대화의 현실적 의제가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남북평화협력과 북한인권법 체계 현 상황속에서 지속가능한 남북인권대화 의제로서 인권증진적 형사사법개혁 논의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의 지속가능한 남북 평화협력 틀 내에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주요관심사인 북한인권논의를 선도하는데 기여해야 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국제사회 주요 현안인 북한인권/accountability 문제에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보편적 인권원칙과 남북인권대화 노력필요성 강조
-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넘어 인권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accountability 문제를 새롭게 정립함.
- 한국의 인권선도국가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남북평화교류협력 틀안에서 북한인권문제의 효과적 논의방안 제시
- UPR 제도와 북한인권법 체계 하에서 남북 인권대화를 통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형사사법개혁 협력의제 설정

□ 주요 키워드

※ 공적 책임성, 북한 인권, 북한인권법, 유엔인권위원회, 남북인권대화

»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

연구책임자: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law39@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 2019년 1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국회에서 독일식의 법왜곡죄 도입 추진
- 이에 넓은 의미의 법왜곡행위 또는 사법일탈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범할 수 있는 권력남용적 수사·재판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법왜곡죄 신설 필요성 검토 및 우리나라의 형법질서에 부합하는 범죄구성요건 탐구 필요성 대두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필요한 경우 언론기사, 판례 등 활용
- 법원·검찰 종사자에 대한 면담 병행

□ 주요 연구내용

○ 형사사법 분야의 법왜곡 행위유형

- ‘법왜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선행연구 등에 나타난 법왜곡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조사정리함으로써 법왜곡행위의 윤곽 또는 판단기준의 열개를 예상하거나, 직무범죄로서 구성요건화할 수 있는 행위유형 도출 기대
- ‘사실관계의 조작’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 ① 고문이나 강압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여 법적용한 경우, ② 위계·회유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한 경우, ③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는 부작위로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④ 증거에 의하지 않고 주요사실을 인정하거나, 확신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확정된 경우

- ‘부당한 법적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 ①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한 경우, ② 국가공안기관의 불법연행·불법감금, 고문과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강요된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경우, ③ 국가공안기관의 불법행위·사건조작에 형사사법기관이 동조한 경우, ④ 사실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나 왜곡이 없으나 법관이 부당하게 법적용한 경우, ⑤ 유신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한 경우
- ‘재량권의 남용’에 의한 법왜곡 행위유형 : ①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② 권력에 부역할 목적으로 수사한 경우, ③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 경우, ④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경우, ⑤ 수사기소를 방해한 경우, ⑥ 조작·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⑦ 책임원칙에 위배하여 법관이 형량평가를 지나치게 남용한 경우, ⑧ 기소유예의 한계를 초월한 경우, ⑨ 특정 전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준 경우(이른바 전관예우), ⑩ 소속기관 대상 사건에 대하여 기관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준 경우(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 그 밖에 고려할 수 있는 법왜곡 행위유형(‘사법의 공정성’ 침해 관련) : ① 형사사건화를 조장하는 행위, ②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③ 사건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④ 학설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 ⑤ 여론을 조작하여 법을 적용하는 행위

○ 법왜곡에 대한 현행법적 대응과 한계

- 불법체포·감금죄의 적용 가능성 : 법관 처벌 선례 없음
- 직권남용죄의 적용 가능성 : 문제된 사안의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고, 직권남용죄 기수시기를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의 태도도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법관·검사 처벌 선례는 사실상 없음
- 직무유기죄의 적용 가능성 : 수사불이행 이유로 검사 처벌 선례 없음
- 법관에 대한 탄핵 및 징계 가능성 : 사법농단 사건 이후로 법관 징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는 만큼 징계의 실효성도 담보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법왜곡 대응법제

- 독일형법상 법왜곡죄
 - ① 연원 : 법왜곡죄의 연원은 종교법 또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나치에 부역한 법관에 대해서는 무력하여 법관특권규정이라고 비판받음
 - ② 행위주체 : 법왜곡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는 절차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판단하며, 본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활동’인지 여부가 핵심. 검사 등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의 공무원’ 역시 법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주체에 해당
 - ③ 처벌범위 : 단순한 실정법규의 침해만으로는 법왜곡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질서 전체나 법치국가적 사법실무의 핵심적 원칙에 위반한 경우’, 즉 불법성이 중대한 경우로 처벌범위 제한

④ 통계 : 지난 15년 간(2002년-2017년) 재판건수는 총 73건(주로 구 동독 시절의 사법불법 관련)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은 높지만(73건 중 56건) 자유형 실행 선고를 받은 경우는 5%에 불과(56건 중 단 3건)

- 법외범죄 등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규율하는 입법례 :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 기타 입법례 : 미국의 경우는 징계로써,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는 직권남용죄나 권리행사침해죄 등으로써 대응

□ 정책제언

○ 법외범죄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향

- 법외범죄는 연혁적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산물로 볼 수 없으며, 권력에 부역한 사법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다만 부당한 과거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외범죄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만큼, 인사권 등 다양한 원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법외범죄적 사법일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법외범죄 도입 시 유의사항

- 독일형법식의 법외범죄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및 법원 판례를 통한 입법흡결의 보충기능 등에 유의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경찰관의 대상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 권력결탁형 사법일탈 방지방안

-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개헌 : 법외범죄 신설을 위한 법률개정보다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사법개혁 필요. 단, 사법통제가 아니라 ‘법관의 실질적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향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만일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한 통제나 대법원장 등 인사권자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법관 스스로에 의한 통제여야 함
- 법관 징계사유의 실질화 : ‘품위 손상’ 등의 모호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제2조)를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변호사법상의 변호사결격사유(제5조)를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필요
- 대법원장 등의 징계 관여 최소화 : 보직 법관인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관여할 여지 최소화 필요
- 직권남용죄 규정의 실질화 : 직권남용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제한적으로 신설하거나, 독일형법상 형사소추죄를 참조하여 형사소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신설 등의 방안으로써 직권남용죄 규정 실질화 필요

○ 그 밖의 사법일탈 방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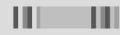
- 성과지향적 승진제도 및 계급정년 제도의 재고 : 공직의 본분을 망각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성과지향적 승진제도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의 계급정년 제도의 폐지 필요
- 전관예우의 철폐 : 전관예우의 철폐를 위하여 법조인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로서— 의도적으로 전관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 필요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형사사법 분야에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법왜곡 등 일탈행위 방지 방안 도출
- 형사사법 분야 법왜곡행위와 사법일탈 방지를 위한 국회 입법활동 지원

□ 주요 키워드

※ 사법개혁, 법왜곡, 사법농단, 직권남용, 전관예우



1세션

● ● 자료집

1.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_ 33
(박성훈 연구위원)
2.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Ⅱ)
-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_ 39
(김영중 부연구위원)
3.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_ 45
(권수진 부연구위원)
4.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_ 51
(김정연 부연구위원)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Ⅲ)

연구책임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사회학 박사, ysjeon@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박성훈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ngokr0102@kic.re.kr)
조영오 부연구위원(형사정책학 박사, jo-05@kic.re.kr)
정진경 파견공무원(보호사무관, nicejkc@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소년원생이 출원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재통합 뿐만 아니라 재범예방에도 관련되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국제적으로도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소년사법의 궁극적 목표를 재통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 최저 표준규칙에서도 재통합을 위해서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이렇듯 국제적인 협약이나 규칙에 비추어 보면, 시설에서 출원하는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을 돕는 정책들은 이들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소년원생의 특성 및 필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소년원생의 특성 및 변화과정에 대해 파악해 보고,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는 3년 동안(2017-2019) 수행되는 계속 연구과제로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소년원 생활실태, 출원후 생활실태, 사회적 지지망 등을 종단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음. 이를 토대로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사회정착의 개념 및 시설 출원생의 재범/사회재통합과 관련되는 선행연구 검토
 - 기존 논의와 실무상 개념 등을 토대로 사회정착의 개념 정리
 - 시설 출원생의 재범 및 사회재통합과 관련되는 선행연구 검토
 - 각국의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을 위한 자원 및 연계현황 분석

○ 패널종단조사

- 소년원 출원생 및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패널종단조사 실시

〈표 1〉 연구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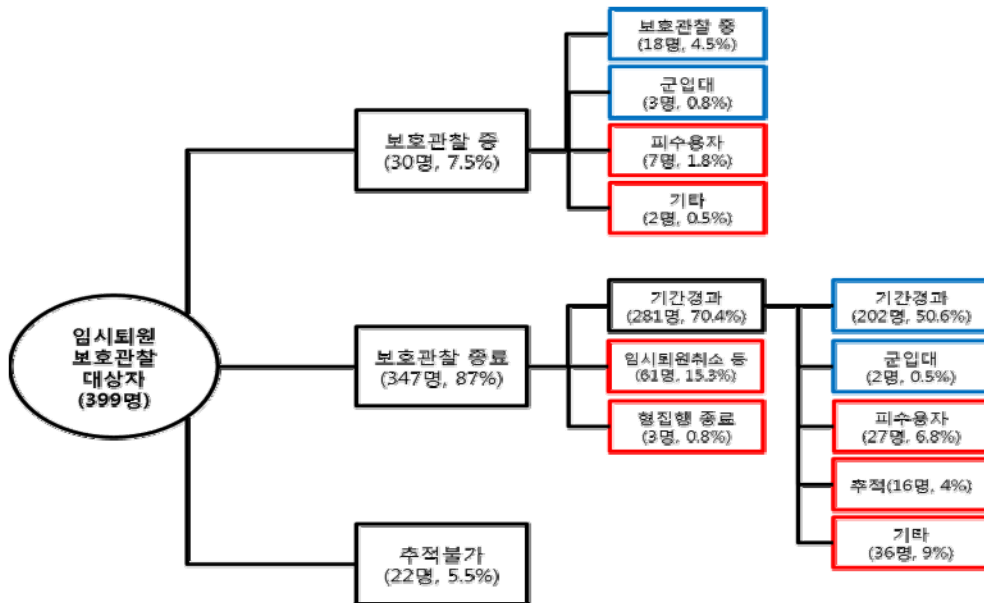
조사 설계 및 조사 참여자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자(비교집단)	
	1차 조사 - 2018년 5월 18일 ~ 31일(9개 소년원) - 참여자: 533명		해당사항 없음	
	임시퇴원자 2차 조사 - 2018년 7월 ~ 12월 - 참여자: 200명		1차 조사 - 2018년 7월 9일 ~ 8월 3일 (19개 보호관찰소) - 참여자: 463명	
	만기퇴원자 2차 조사 - 2018년 10월, 2019년 3월 - 참여자: 32명			
	3차 조사(임시퇴원자만 실시) - 2018년 12월 ~ 2019년 4월 - 참여자: 170명		2차 조사 - 2019년 2월 ~ 3월 - 참여자: 263명	
	4차 조사(임시퇴원자만 실시) - 2019년 6월 ~ 7월 - 참여자: 78명		3차 조사 - 2019년 6월 ~ 7월 - 참여자: 217명	
조사내용 및 자료수집	구분	내 용		출 처
	사회정책 요인	인지·태도	- 법준수, 긍정적 정체성, 책임 인정	- 설문조사 및 보호 관찰 자료
		행동	- 직업준비,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 - 도박, 사이버 일탈, 폭력행위 - 서면경고, 재범, 처분변경	
	사회정책 보호 및 위험 요인	개인특성	- 성별, 나이, 교육수준 - 범죄유혹, 자기통제, 스트레스,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알콜의존, 부적 감정 억제	- 설문조사
		가족 특성	- 거주지, 주보호자, 부모애착, 가정 학대, 가족과 함께 함	
		친구 특성	- 비행친구, 친사회적 친구	
		그 외 특성	- 부정적 낙인, 지역치안수준, 사회적지지, 담당직원과의 애착	

○ 심층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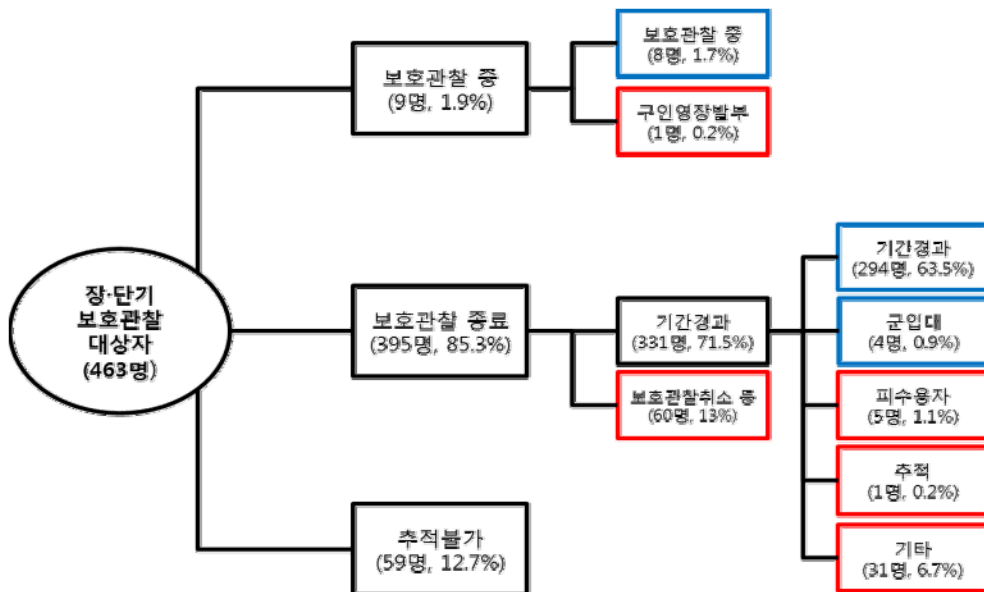
- 종단적 심층면접조사(2017-2019년)를 통한 소년원 출원생 사례연구 수행. 이를 통하여 소년원 출원이후의 변화양상 및 관련요인 파악
-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자, 담당 보호관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심층면접조사 수행. 이를 통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과 관련될 수 있는 소년원 입원이전과 입원기간, 출원 이후 특성 파악.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정착 현황



[그림 1] 임시퇴원자 사회정착 현황



[그림 2] 장·단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현황

○ 임시퇴원자와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양상 비교

- 인지/태도 요인의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법준수가 임시퇴원자의 법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임시퇴원자의 긍정적 정체성이 보호관찰대상자의 긍정적 정체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 사회정착 요인 중 행동 요인의 경우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아 긍정적인 특성을 보인 반면, 도박, 사이버일탈, 폭력행위의 경우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아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음. 행동 요인 중 재범횟수의 경우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첫 번째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대상자보다 2.3배 정도 짧았음. 서면경고와 관련하여 임시퇴원자의 경우 서면경고를 받은 소년의 비율이 보호관찰대상자보다 높았고, 서면경고의 횟수도 더 많았으며, 첫 서면경고까지의 기간도 짧았음.

○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시퇴원자)

- 법준수의 경우 범죄유혹, 일탈적 일상활동, 종교심, 비행친구 접촉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자기통제와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법준수가 증가하였음. 긍정적 정체성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심, 부적 감정억제, 친사회적 친구접촉,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부적 낙인이 감소할수록 긍정적 정체성이 증가하였음. 책임 인정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음. 직업에 대한 관심의 경우 종교심, 부적 감정억제, 친사회적 친구 접촉, 지역치안수준,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수록 직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음.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원과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와 알콜중독이 감소할수록 자격증/검정고시 준비 및 취득도 증가하였음.
- 도박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탈적 일상활동, 부모 애착, 비행친구 및 친사회적 친구 접촉이 증가할수록, 직원과의 애착이 감소할수록 도박경험은 증가하였음. 사이버일탈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유혹, 알콜중독, 비행친구접촉이 증가할수록 사이버일탈이 증가하였음. 폭력행위의 경우 범죄유혹, 알콜중독, 비행 친구 및 친사회적 친구 접촉이 증가할수록, 부적감정 억제와 직원애착이 감소할수록 폭력행위가 증가하였음. 서면경고의 경우 알콜중독이 감소하고 가정에서의 학대가 증가할수록 서면경고 여부가 증가하였음. 재범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유혹, 학대, 지역치안수준이 증가할수록 재범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처분변경의 경우 어느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연결망분석

- 임시퇴원자를 대상으로 소년원 이전과 출원 이후의 연결망을 비교분석한 결과, ① 연결망의 형태나 속성에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음. 즉, 관계유형의 경우 대부분 친구-선후배-애인을 중심으로 한 교우관계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반면, 가족관계의 비중은 그보다 낮았음. ② 연결망의 특성이 사회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결망 형태보다는 연결망 속성이 사회정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교사중심의 관계,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법준수 태도라든지 과오에 대한 책임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남성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같은 동네중심의 연결망을 가질수록, 연결망의 유대정도가 낮을수록, 비행유혹의 정도가 높은 연결망을 가진 소년일수록 사이버일탈, 폭력, 보호관찰위반, 재범 등 출원 이후 부정적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망 특성에 따른 사회정착의 차이를 보였음.

□ 정책제언

○ 법제도적 개선방안

- 출원 이전부터 출원 이후까지 연결되는 사회정착 지원제도 마련
- 만기퇴원생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체계 마련
- 기관간 연계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규정 마련
-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확대
-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 본부 차원의 자원 확보와 전담직원 배치 등

○ 시설내·사회내 사회정착 지원 방안

- 소년원에서의 소년원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직업훈련 다양화 및 사회내 자원 연계, 긍정적 정체성·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 강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소년원 출원 전 지역사회 지원기관 방문기회 및 귀주 예정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소년원-보호관찰소 정보공유 및 연계활성화, 사회정착지원(희망도우미)제도를 통한 사회정착지원 등
- 보호관찰소에서의 체계적인 자원연계 시스템 구축, 감독/감시와 지지/자원연계의 균형, 개별 맞춤형 지도감독, 출원직후 코칭프로그램 활용, 보호자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 등

○ 사회내에서의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 방안

- 소년원 출원생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센터 및 자립생활관 운영
- 출원생에 대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화(중장기적 개선방안)

○ 소년원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착 지원 방안 마련

- 여자청소년, 정신질환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 “혼합-불안정” 유형 소년원생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필요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소년원생의 출원 이후 변화과정 및 관련요인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요소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소년원생(혹은 임시퇴원생) 사회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구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 고위험 청소년의 사회재통합을 돕는 효과적인 방안(rehabilitative intervention)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 ■ ■

○ 향후 비행청소년 대상 패널종단조사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

□ **주요 키워드**

※ 소년범죄자, 사회정착, 종단연구, 재통합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

-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책임자: 강태경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taegong@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최영신 선임연구위원(교육학 박사, yschoi@kic.re.kr)

김영중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kyj2019@kic.re.kr)

고재익 파견공무원(교정관, kji2002@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평가 필요)** 형사사법기관(경찰·검찰·법무부 및 형사법원)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조직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각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에 대한 종합평가 연구 부족)** 특히, 형사사법기관 중 행정기관의 수용자 인권보장 수준은 한 법공동체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단, 교정처우의 세부 영역별 평가 연구는 다수 존재)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행형법’)의 개정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필요

○ 연구목적

- **(행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교도소 및 구치소(군 구금시설 포함)의 행형 과정에서 불거지는 인권 쟁점들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수용자 인권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행형 분야 국제인권규범 및 관련 국내 법규 분석
- 행형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2019) 및 법원 판결 분석
- 법무부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 결과 및 법무부장관 청원 분석
- 행형 분야 학술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분석
- 행형 관련 5대 일간지 기사(2001~2019) 분석
- 행형기관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 수형자 심층면접
- 교정공무원 및 군 교도관·교도병 심층면접
- 교정공무원(864명) 대상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

○ 실태조사

- 국군교도소 및 6개 부대 영창 방문조사(시설 및 운영실태 점검)

□ 주요 연구내용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의 틀 — 제도적·물적·인적 역량

-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행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수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각자의 권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행형기관의 제도적·물적·인적 자원의 결합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역량)** 행형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행형에서 인권시비가 발생하는 직무 수행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정비 수준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물적’ 역량)** 수용자의 관리 및 처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시설·설비 그리고 물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구조적 자원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적’ 역량)** 교정공무원이 법집행에 필요한 법규 및 판례·결정례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지식), 그러한 지식을 잘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기술), 그리고 수용자들의 요구와 특수한 상황을 헤아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태도)에 관한 것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평가 결과

- **(평가대상 및 방법)** 교정관계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해당 규범의 핵심요소들이 국내법규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 **(평가결과)** ①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영역에서는 의료 관련 규정의 정비, 수형자 처우 영역에서는 교도작업의 안전과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의 마련이 필요, ②소년수용자에 관해서는 수용 질서, 수형자 처우, 교정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 ③여성수용자에 관해서는 남성수용자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 정비 필요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평가 결과

- **(평가대상 및 방법)** 교정시설 내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요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 현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 교정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 검토(법무부 소속 구금시설 실태조사(2010~2018) 중 물적 요소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활용)
- **(평가결과)** ①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급식, 물품지급 등의 영역과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반면에 ②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서는 의료인력 부족과 정신질환수용자에 대한 심리치 기반 부족 등의 약점이 발견됨, 또한 ③과밀수용 해소 역량과 관련하여 수용공간 증축 및 리모델링 영역에서는 행형기관이 물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이전·신축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등과 같은 외부 주체와의 관계 조정에 필요한 외부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④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정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평가됨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평가 결과

- **(평가대상 및 방법)** 전국 19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864명(52개소 인권·청원 업무 담당자 포함)을 대상으로 수용자 인권보장과 관련된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 조사
- **(평가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은 ①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 ②수용자의 인권보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최소한의 처우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 ③직무 수행 중 수용자에 의한 피고소·피고발 등의 가능성과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려, ④직무 수행 중 수용자들로부터 진정·청원 및 고소·고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가장 빈번,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인한 번거로움을 경험하거나 억울함을 느낌, ⑤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이나 청원 등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강함, ⑥진정·청원 등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혐의 없는 사건이나 무고한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줄기를 바램, ⑦국가인권위원회의 최신 결정례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었지만, 해당 결정례가 교정 현실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15%~30%). ⑧현행 직무 관련 인권교육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그러나 법규에 대한 보수적 해석, 접견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취약점 발견), ⑨현재의 교정처우 여건에서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밀수용의 개선’이나 ‘낙후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과 같은 교정기관의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

○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결과

- **(평가대상 및 방법)** 군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군 교도소 및 각급부대(6개 부대) 영창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실태 조사, 군 교도관 및 교도병 대상 심층면담
- **(평가결과)** ①(군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행형에 필요한 법규의 미비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고,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및 처우의 표준화’, ‘교정관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군행형법」 개정’, ‘군 행형 담당자의 권한·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②(군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군 행형시설은 총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정량화된 평가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설별로 물리적 환경이 매우 다르기에 현대화와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 ③(군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군 행형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매우 낮아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

□ 정책제언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

- 평가에서 ‘미흡’ 또는 ‘대개 양호’로 나온 항목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정비, 장애수형자나 성소수자수형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규와 지침 등의 마련
- 인권기본법 제정, 수용자 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수용자 지원 시민단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하여 제도적 역량 강화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물적 역량’ 강화 방안

- 시설의 이전·신축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제도적 역량을 통한 물적 역량 강화
- 전문 의료지원 시설을 포함한 교정 복합시설 건설
- 과밀수용 및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행형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 방안

- 신입 교정공무원의 직무교육 확대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 연구에 기반을 둔 인권보호 훈련 매뉴얼 개발
-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 군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군 행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강화 방안

- **(제도적 역량 강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에 교정과를 두어 군 교정시설 관할 부서를 일원화, 군 교도소 및 군 구치소 내 수용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교도관 및 교도병 편제를 개편하여 교정군무원 직책 신설(전문성 강화), 「군형집행법」을 최근 개정된 「형집행법」 수준으로 개선 등

- **(물적 역량 강화)** 각급부대의 평시 영창 운영을 중지하고 군 미결수용자 수용을 위한 군 구치소를 권역별로 신축, 2022년 신축 예정인 국군교도소에 운동공간 등 갖출 수 있도록 신축 예산 증액, 군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청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개선, 냉·난방 대책 마련, 의료설비 및 의료기구를 전면 보강 등
- **(인적 역량 강화)** 군 교도관(향후 ‘교정군무원’)의 직무교육 강화(법무연수원 위탁 등), 계호·호송·교정 행정 등을 담당할 전문 교도병을 전문특기병으로 모집(직무교육 통해 전문성 강화) 등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 결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행형법 제5조의2)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권 친화적 행형제도 설계 전략 제시
 - **(수용자 인권쟁점은 부정적인 여론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에서)** 수용자의 인권 신장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흔들림 없는 교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틀 제공

□ 주요 키워드

※ 행형기관, 수용자, 교정공무원, 인권보장역량(제도적·물적·인적 역량), 처우, 직무환경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권수진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soojin@kic.re.kr)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 논의 배경

-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신부의 태아, 수용자가 낳은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음. 이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수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호와 양육 환경에 남게 된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음.
- 이 연구는 이들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교정처우의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용자, 만 12세 이하 자녀를 사회에 남겨 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단행본, 논문, 정책 자료, 기사 검토
- 관련 사례 및 판례 검토

○ 관련 현황 검토

- 국내·외 법규 검토
- 교정통계연보, 범죄백서 등 공개 통계자료 검토
- 법무부 교정본부, 경찰청에 요청한 관련 통계 및 정책 내부자료 검토

○ 조사연구

-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

- 세 이하 자녀를 사회에 남겨 둔 남녀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관계 직원 심층면담

○ 비교법연구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분석
- 일본 교정시설(여자교도소 등 4곳) 방문, 시설 참관, 자문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분석

○ 워크숍 및 자문회의

-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관련 연구자, 민간단체(두루, 세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담당자 초청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분석

□ 주요 연구의 내용

○ 관련 통계 현황

-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교정시설	수원 구치소	인천 구치소	화성 직업훈련소	의정부 교도소	부산 구치소	대구 구치소	상주 교도소	전주 교도소	합계
인원	1	2	1	1	1	2	1	1	10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30일 기준

-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18개월 이하 유아 양육 현황

(단위 : 명)

교정시설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합계
인원	4	1	10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30일 기준

- 사회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수용자 현황

-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기, 사형	전체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485 (9.1%)	1,891 (35.4%)	1,250 (23.4%)	1,116 (20.9%)	444 (8.3%)	84 (1.6%)	79 (1.5%)	5,349 (100%)
전체 수형자	6,082 (16.8%)	13,236 (36.6%)	6,740 (18.6%)	5,029 (13.9%)	3,071 (8.5%)	594 (1.6%)	1,415 (3.9%)	36,167 (100%)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9년 5월 21일 기준

• 연령별 미성년 자녀 현황

(단위 : 명)

자녀 연령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합계
인원	2,748	4,408	2,254	2,693	12,103

출처 : 법무부 교정정보 시스템(보라미시스템), 2019년 6월 30일 기준

• 미성년 자녀 보호관계 현황

(단위 : 명)

보호관계	부모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혼자생활	지인	기타
인원	8,135	1,062	259	253	84	107	2,204

보호관계에 대한 무응답, 모름은 기타에 포함

출처 : 법무부 교정정보 시스템(보라미시스템), 2019년 6월 30일 기준

○ 관련 국내·외 법제도

- 국내 규정

-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임신부인 수용자의 처우(제52조), 유아의 양육(제53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접견(제41조)
- 형집행법 시행령 : 접견(제58조) 및 접견의 예외(제59조), 출산의 범위(제78조), 유아의 양육(제79조), 유아의 인도(제80조)
- 형집행법 시행규칙
: 임신부 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제42조), 접견장소(제88조, 제99조)
- 형집행법 개정(2019년 10월 시행)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교도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함.
: 접견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제2항 및 제3항).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가족접견실(제24조 이하), 복장(제9조) 등
: 가족관계회복 지원(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접견실, 가족사랑캠프 등)
- 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운영(2017년부터 2021년 설치 완료)

- 국제 규약

- 유엔(UN)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 유엔(UN)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
- 2018년 유럽평의회(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권고안

- 유엔(UN)아동권리협약

: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됨(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제9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 권고 (2019년 3월)

○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조사

- 인구학적 특성

- 수용자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의 부재 내지는 안정성이 결여된 양육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았음.

- 양육환경 특성

- 수용자 자녀의 약 50%는 부모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음.
- 수용자 자녀들은 한쪽 부모가 양육자인 경우가 많고, 조손가정이 늘어가는 경향이 뚜렷하고, 시설에 있거나 자녀끼리 방치된 어린 자녀들이 적지 않음.
- 수용자 가정의 상당수가 가난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극빈가구가 약 20%임.
-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대다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살았고, 일부는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음.
-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70% 이상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수용된 부모의 대부분은 향후에도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현황

- 미국

- 임신부 수용자 데이터 구축
-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 금지 등 교정시설 내 임신부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
- 임신부 수용자 전용 특별 공간 설치, 운영
- 임신부 도우미 둘라(Doula) 제도 : 임신, 출산 전후 여성 수용자들을 지원, 모성 및 돌봄 교육
- 각 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최장 36개월까지 유아 양육
- 여성 수용자와 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독립된 별채 설치, 운영
- 수용자 자녀 양육 관련 경찰, 보건복지부, 법원, 교정본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지원

- 영국

- 민간단체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 등을 통해 임신부 수용자와 수용자의 아기 지원
- 만 18개월 이하 유아 양육
- 교정시설에 엄마와 아기 유닛(Other and Baby Unit)을 설치, 운영
-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문자 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도움의 전화 운영

- 독일

- 연방 및 각 주의 행형법 : 임신부 수용자 및 엄마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민 여성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여야 함.
- 여자 교정시설에 어머니-자녀-수용시설(Mutter-Kind-Heim) 설치, 운영
- 연방행형법상 취학연령 도달하기 전까지 유아 양육, 일반적으로는 만 3세 이하 유아 양육 (프랑크푸르트 주 : 만 3세 이하, 함부르크 주 : 만 5세 이하)
- 여자 교정시설에 보육교사 채용하여 아이 보육 담당(어머니 수용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와의 외출, 유치원 통원, 외부병원 진료 등)
- 카리타스협회는 수용자 가족을 위한 온라인 상담과 수용자 아이들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 일본
 - 총 11개 여성 전문 교정시설(여자형무소 6개, 형무지소 4개, 사회복귀센터 1개) 운영
 - 만 12개월 이하(6개월 연장 가능) 유아 양육
 - 교정시설 내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 등과 관련하여 의료처우 실시
 - 과밀수용이 문제가 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용자의 자녀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에 위탁
- 대만
 - 총 3개의 여자교도소 운영
 - 만 3세 이하(6개월 연장 가능) 유아 양육
 - 여자교도소에 모자단지 조성, 유아 수용거실, 보육실, 야외 놀이터 등의 별도 시설 설치
 - 수용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의 수만큼 배치되어 도우미 여성 수용자와 함께 수용자의 유아 양육 담당
 - 특히, 수용자 자녀 중 2세 이상 유아 외부 유아원 통학 가능
 - 유아 보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가 유아원에 있는 동안 수용자 작업 및 직업훈련 가능
 -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황 및 지원 필요 여부 등 파악, 사회국에 가정방문을 요청하거나 작업기금으로 취학보조금, 생필품 등 지원

□ 정책제언

○ 임신부 수용자 수용 환경 및 처우 개선

- 충분한 영양공급 : 개별식 제공, 임신부용 영양제 제공 및 구입절차 간소화
- 냉난방 및 온수목욕 확대
- 수용거실 환경 개선 : 임신부용 거실 마련
- 임신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지침 마련

○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수용자 및 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

- 지방교정청별 여자교도소의 추가 설치 및 유아 양육 시설 설치

- 유아 수용 거실 환경의 개선 :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 발달단계별 유아 양육을 위한 자비 구매물품의 확대
- 유아 양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의 양육 지원

- 부모의 체포·구속시 자녀 보호,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범죄수사규칙)
- 자녀위탁시설 마련
-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보라미시스템), 수용자 가정 지원, 가정 지원제도 홍보
- 스마트접견 등 개선(시간, 장소 등)
-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 가족 교류 확대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 임신부와 어린 자녀 있는 수용자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 자녀 보호 위한 외출휴가 도입

○ 임신부와 어린 자녀 있는 피고인의 구금 최소화

- 전자장치 부착 조건 불구속재판 확대
- 주말구금, 주중구금, 재택구금 등 대안적 형사제제 도입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임신부 수용자, 유아 양육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 수용자 처우 개선

- 임신부 수용자, 유아 양육 수용자 수용시설 환경 개선
-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생활 중인 유아 양육 환경 및 복지 개선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마련

○ 활용방안

- 임신부 수용자, 유아 양육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임신부 수용자, 유아 양육 수용자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생활 중인 유아 양육환경 및 복지 개선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및 수용환경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관련 교정정책 수립을 위한 비교법 자료로 활용

□ 주요 키워드

※ 수용자 자녀, 양육 유아, 임신부 수용자, 여성 수용자, 여자교도소

»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김정연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jeongyeon@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가석방 요건 규정과 상이한 가석방제도의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유기 자유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를 최소 요건으로 하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9년간 가석방자의 9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가석방자의 92.4%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함)
- 가석방의 형식적 허가요건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신청기준은 가석방업무지침에 의함. 가석방의 요건 규정과 실제 운영상 형집행률 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석방 행정처분의 재량의 폭을 줄여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가석방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와 교정처우 연계 관련사항의 개선 필요성

○ 가석방심사절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 현재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가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수형자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결합되어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구조임
- 가석방심사절차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가 시급함

○ 가석방 요건 및 심사기준의 방향성 모색

- 가석방의 요건 규정과 실제 운영상 형집행률 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률요건보다 가석방의 기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자발적·적극적 사회복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석방제도의 특별예방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현행 가석방 요건 및 심사기준의 적절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가석방 입법례의 요건과 심사를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 교정시설 운영 및 교정처우 관련 사항의 개선방안 마련

- 가석방제도는 수형자의 조기석방을 담보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하여 교화개선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수용시설의 증축 및 활용방안 이외에도 가석방제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이에 가석방제도를 형사정책적 취지에 부합되게 그 기능을 체계화하여 활성화하는 등 확대방안에 요청됨
- 가석방 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을 내실화하고 가석방 이후 사후조치 방안을 강화하여 가석방제도의 운용효과를 높일 필요 있음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단행본, 학술논문, 실무 저작물, 판례, 기사 등

○ 비교법 연구

- 독일, 일본, 영국 등
- 관련 입법례, 운영현황, 사례 등에 관한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제도의 발전 경로와 제로로부터 파생되는 사법현실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다 실질적인 연구성과물 도출

○ 관련 공식통계 및 자료 분석

- 가석방의 허가비율현황
- 가석방자 형의 집행률 현황
- 가석방자 보호관찰 현황
- 가석방자 재복역률 현황

○ 가석방제도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

- 가석방제도 정비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심층면접
- 가석방제도의 법규와 현실 간 인식 및 태도
- 교정공무원과 수형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경험 및 욕구
- 가석방심사 및 허가절차의 공정성 여부

□ 주요 연구내용

□ 가석방제도의 현황 및 개관

○ 가석방 요건 상의 문제점 및 검토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무기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구류를 선고받은 자나 벌금의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가 지적됨.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행상의 양호”나 “개전의 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움.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 재범위험성의 조기에측을 위한 평가 도구로서 마련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가 그 판단자료가 됨. 그러나 그 판단내용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평가 고려가 포함되어 있어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판단자료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고, 수형생활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가 향상되는 구조는 이미 교정성적에 따른 판단이 경비처우급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첩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가석방 적격심사 사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가석방 심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검토

-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심사에서 제외되는 자는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임. 종래에는 경비처우급 중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예비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었으나,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으로 해당 적격심사 대상은 확대되었음. 한편 가석방 적격심사의 유형을 죄명, 죄질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일정한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우등급을 정하는 기관은 분류심사위원회인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이전 단계인 분류심사단계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됨.
- 대부분의 가석방 심사가 서면심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호의지 및 출소 후 생활관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 내지 그 구조에 있어서 상당부분 유사하고,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 성인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의 조사사항이나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중첩적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가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수형자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결합되어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구조임.

○ 가석방 운영현황 상의 문제점 및 검토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을 살펴 볼 때,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은 대부분 80%~90% 이상으로 70% 미만의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거의 허가되지 않는 것임. 가석방 요건과 실제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가석방심사 확정자들의 평균 복역률이 80%를 상회하는 것은 가석방심사 형식요건인 형집행 기간의 1/3 기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정기관 내 교정프로그램의 문제, 수형자 재사회화에 대한 포기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려 등으로 인해 높은 복역률이 유지된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석방제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 수형자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수형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사실은 수형자들은 가석방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나는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였음. 그들은

규율위반과 징벌이 없는 모범적 수행생활, 형 집행률, 재범위험성 등급, 가족 등 보호관계, 기피 작업장에서의 작업 등 그들은 가석방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석방이 ‘깨지지’ 않고 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음. 이러한 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가석방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불만이었음. 특별히 문의하지 않으면 조건이나 자격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임. 수행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직원들은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소수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 때문에 가석방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공지할 필요가 있음. 형 집행률이나 심사자 유형의 구체적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교정당국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임.

- 특정죄명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었음. 성범죄나 보이스 피싱,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은 가석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데, 죄명이 아니라 생활태도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인 공연음란이나 가벼운 성 추행범은 가석방 기회도 얻지 못하는데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을 보며 특정 죄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수행자나 직원 모두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음. 한편 법령개정에 따라 형 집행률이 소급되어 상향조정되거나, 지역별로 기준에 편차가 있거나 여론의 영향으로 특정 죄명이 배제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음. 지역별 편차는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로 인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석방 담당직원들의 인식이고, 그들은 가석방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영향을 너무 받는 것이 문제라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론을 무시한 가석방을 찬성하지는 않았음. 이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들도 여론의 영향이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가석방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이와는 반대로 수행자들은 죄명이나 죄질보다는 자신들의 변화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여론은 그들의 변화가능성이나 재범위험성 보다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한 가석방 결정은 위험성이 큼. 이러한 수행자들의 입장은 가석방이 은혜적 보상이 아니라 수행자의 권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직원들은 생각함. 자신의 죄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쫓값은 교도소에 갇혀서 다 치렀으니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일정 형기가 지나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임.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피해보상이나 회복,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형기만 채우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인가?”라고 묻고 있고 이 둘 사이에 괴리는 상당히 큼.
-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에 대해서는 수행자와 담당 직원 모두 회의적이었음.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환영하였지만 이 제도가 가석방 허가율을 증대시킨 것이 아니라 가석방 신청률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차 판명되면서부터 ‘희망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음. 가석방 담당직원들은 형 집행률이 일정 비율에 이르면 필요적으로 가석방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범죄경력 자료부터 수용생활자료 등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점에서 ‘행정비용의 낭비’라는 비판도 존재함.

-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회의에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마음가짐과 변화정도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가석방 담당직원들은 이러한 출석면담이 공정성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거짓으로 교정이 되었다고 연기를 할 때 그것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음. 특히 제한된 시간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석방 심사 예비회의에서 수형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그러나 현재의 가석방 예비회의가 실질적인 검토라고 보기에는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 출석면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작업은 앞으로 시도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봄.
- 그 외에도 수형자들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이유를 알았으면 좋겠고, 가석방 결정을 통보해 주는 시점에 대해서도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또 가석방 신청 여부 결정이 담당근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폭을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였음. 수형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의 안정이 교정 질서와 평온한 수용생활을 담보한다는 생각으로 전향적인 가석방 관련 실무를 살펴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석방 담당직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가석방 담당직원 이메일 조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필요적 가석방 제도는 일선 교도소별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며 과밀수용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석방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대한 반면 실제 가석방 허가율은 낮아져서 과밀수용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공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재범위험성 등급(레피등급)인데 이것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점수에 의해 결정됨. 교정재범예측지표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레피 등급에 대해 담당직원들은 재범위험성이 가석방 결정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수용생활을 잘하면 등급이 올라가는 방식의 지표체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음.
- 특정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됨에 따라 모범적 생활을 하는 초범 성범죄자는 나가지 못하고 S3, 레피3등급에 범수 4범에 징벌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 수형자가 가석방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특정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외하는 것의 이유는 여론이 그러한 범죄유형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임. 여론이 부정적이면 범죄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범죄 전체에 대해 가석방 불허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범죄의 세부내용에 따라 가석방 여부를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가석방의 확대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은 모두 부정적이었음. 현재 가석방은 가석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나가지 말아야 할 수형자도 나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를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각 유형마다 설정되어 있는 최소 형집행율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석방을 생각하기 보다는 가석방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석방자를 가려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탈락의 이유를 탈락자에게 모두 공지하는 일이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한 해법이 있을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지 말고 수형자들의 안정적 사고와 행동이 주는 순기능을 생각해 볼 때 행정업무를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면담결과를 요약하면, 위원회에서의 외부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법무부의 내부위원들은 죄질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가석방 비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부위원이 의견을 많이 내고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가석방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음. 현재 매달 한 번의 회의에 300-7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수형자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음.

□ 외국의 가석방제도 및 현황

○ 영국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 영국의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교도소 과밀화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가석방이 논의되었음. 영국의 가석방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재소자의 재사회화라는 목표 이외에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교도소 수용인원 감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영국의 경우 가석방취소, 즉 재입소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재입소의 증가로 인해 교도소의 과밀화 및 재소자 처우에 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영국의 가석방의 변화는 효율성의 확보와 일반인의 안전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 영국 가석방위원회의 절차의 특징은 형사사법절차 단계 이외에도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임. 이에 피해자는 가석방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가석방 관련한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며, 가석방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음.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지원인의 도움 등 각종의 지원을 받기도 함. 나아가 피해자는 가석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재심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석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음.
- 영국 가석방절차에서 재소자는 구술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 등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거부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음. 영국의 가석방은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석방 실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는 점임. 영국의 가석방위원회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독립

적인 비정부공공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사법기관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국의 가석방위원회 절차를 보면 자료제출 및 청문의 과정이 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고 법원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형의 집행유예와 가석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석방의 처분을 사법처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현재의 가석방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영국의 가석방위원회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 독일의 가석방제도에서 유기자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에 대한 통상적인 가석방의 최소 복역 연한은 형기의 2/3이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처음으로 유기자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기의 1/2이 경과하여야 함.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자에 대하여는 2개월, 후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최소 복역 기간이 적용됨. 종신형의 경우에는 15년의 복역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됨.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자유형의 경우 형기의 1/3, 무기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 형식적 요건이 충족됨.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유형을 집행 받은 자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처음으로 자유형을 복역하는 자에게 자유박탈의 형벌효과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인한함. 그렇다면 가석방의 심사과정에서 최초 복역자라는 특수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행해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독일에서 가석방 결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긍정적 법준수예측(Positive Legalprognose)’이 핵심적 기준으로 적용됨. 법원의 법준수예측에 있어서 수형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시 위협되는 법익의 중대성,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함. 가석방 허용의 실질적 기준은 규정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우리나라의 가석방 판단에 있어서 행형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것에 대한 수형시설의 부정적 판단이 신청자격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됨. 물론 독일에서도 행형태도는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준거로 기능함. 다만 행형태도의 불성실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독일 판례는 음미해 볼만하다고 생각됨. 또한 가석방자가 출소 후 받게 되는 보호관찰의 역할 역시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포함한 보호요소(protective Faktoren)가 수형자가 출소 후 재사회화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감쇄시키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 가석방 결정이 독일에서는 사법적 처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차이점이 보여짐. 독일에서는 신청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장의 적격심사 후 신청이 있어야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형시설의 소장에 의한 적격심사에서 탈락한다면 가석방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애초에 봉쇄된다는 점에서 수형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제도가 설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만함. 나아가 수형자 자신은 신청자

격이 없다는 점에서 수형시설 소장의 판단이 가석방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신청 대비 허가율이 약 90%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는데, 이는 수형시설의 소장의 1차적 심사권과 수형시설의 적격심사가 가석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수형시설 소장의 적격심사는 1차적, 가석방위원회의 심사는 다시 2차적 필터링 기능을 하게 되어, 가석방 허가의 전체 숫자를 감소시키는 구조인지는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독일의 경우 가석방 결정에서 법원이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간, 부담 및 지시사항의 부과, 보호관찰감독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석방 여부는 행형법에 따라 가석방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호관찰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결정구조에 대하여는 심사사항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를 분리하는 이원화 구조는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가석방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비추어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독일의 경우 가석방의 결정에 있어서 가석방자에게 내려질 보호관찰처분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판단됨. 즉 재범의 위험이 어느 정도 긍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이루어질 지시사항 내지는 보호관찰감독의 실시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감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함. 이러한 판단은 가석방이 이미 선고된 형의 일정 부분이 집행되었고, 복역 기간 중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형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장래에도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기대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보호요소(protective Faktoren)는 향후 가석방자의 재범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가석방결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일본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 일본은 가석방 제도 운영에 있어서 재범방지라는 큰 기조아래에 실효적인 제도운동을 도모하고 있음. 즉 일본 가석방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간 만기출소자 대비 가석방 인원이 줄곧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균형을 고려한 재범방지 대책으로서 가석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일본에서도 최근 2004년 이후 출소자 등에 의한 중대범죄가 속출하였고, 더욱이 형법범으로 검거된 재범자가 2006년에 14만9,164명으로 과거 최다인원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재범자 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석방 제도 및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일본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드물게 정부 중요정책으로서 2012년부터 재범방지를 향한 종합대책(再犯防止に向けた総合対策)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재범방지 대책을 계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에 재범방지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결국 가석방 심사기관을 일본 지방更生보호위원회와 같이 단일화 하고, 법정기간에 대한 재조정과 더불어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와의 연계는 물론, 가석방 출소자의 주거 및 취업 등에

관한 출소자 지원대책을 강화한 종합적인 재범방지 대책이 없이는, 단순히 가석방 제도 개선 만으로는 현재의 가석방률 이상으로 가석방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일본의 가석방제도 운영 및 재범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 가 된다할 것임.

□ 정책제언

○ 가석방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향

- 본 연구는 가석방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가석방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행 가석방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본방향으로 전제되어야 할 정책적 지향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 가석방의 사법처분화 방안에 대한 검토임. 이에 대해서는 가석방은 본래 선고된 형벌의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법관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고, 집행유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석방에 사법적 결정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그러나 현행 법률상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형의 집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가석방은 완화된 구금상태인 사회 내 처우로 변경하는 형 집행방법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가석방이 반드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다만 가석방을 사법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지 않더라도, 현행의 행정처분 절차 내에서 수형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가석방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수형자의 권리보장 및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은 지향되어야 함.
- 둘째, 교도소 과밀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석방제도 활성화에 관한 논의임. 가석방은 교도소 수용능력과 관련된 교정시설의 과밀 상황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로서 중요함. 다만 가석방의 확대실시를 통한 교도소의 과밀화 완화 내지 교정시설의 수용능력 통제는 가석방의 부수적 효과이자 기능일 뿐 주된 기능은 아니라는 점임. 따라서 가석방 활성화 방안은 주된 목적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있어서는 안 되고, 형사정책적 목적 하에서의 가석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셋째,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과 실제 적용되는 형 집행률의 차이와 같이 법령상의 가석방 요건과 실무상의 적용의 간극 해소 문제임. 획일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 규정을 선고형에 따라 가석방 허용 요건을 달리하는 것과 같이 가석방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가석방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의 개정안 : 현행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은 획일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기준을 두고 있음.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있어서는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일정한 범죄 유형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가석방을 제한 받고 있음. 이미 재판과정에서 반영된 죄질이나 범죄유형, 불법과 책임을 가석방 단계에서 반영하기 보다는 선고형에 따라 가석방의 요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행상의 양호”나 “개전의 정”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형법 규정에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2) **가석방 심사 신청권의 도입** : 현행 가석방 적격심사의 신청은 소장의 의무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석방 심사신청 대상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교도관들이 결정하게 됨. 선고형 내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직권으로 가석방 심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수형자에게 가석방 심사 신청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3) **가석방 절차의 불복제도 신설** : 가석방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석방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볼 때, 가석방 적격심사의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배제되는 경우와 가석방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결정 단계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가석방이 되지 않은 경우에 현행법상 수형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영국과 같이 가석방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한까지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석방 불허에 대한 수형자의 이의신청 내지 불복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에서 소장에게만 재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형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률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석방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이의신청 내지 불복절차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가석방 심사기관의 재구성** :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 내지 그 구조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유사함. 나아가 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 성인수형자의 경우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의 조사사항이나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중복적이라는 점에서 절차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됨. 또한 현재 가석방심사체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로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수형자의 경우 필요적 보호관찰이 결합되어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에 대한 심사사항이 중복되어 있는 구조이임. 이와 같은 가석방심사절차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5) **제한사범 일률적 배제 등 심사원칙의 개선** : 자력갱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행제도와 같이 죄명과 죄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사범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가석방심사원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수형자가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제한사범의 일률적 분류를 지양하여야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가석방 제한사범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회방위 및 사회안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사범의 기준 조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안전망을 검토하고 실시해 나가야 할 것임.
- 6) **교정재범예측지표 등 가석방 심사기준의 합리화** : 가석방 심사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재범위험성 등급(레피등급)인데 이것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의 점수에 의해 결정됨. 수형생활을 잘 하는 것과 재범위험성이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점에서 작업이나 자격증, 징벌 없는 생활 등의 수행생활에 대한 반영보다는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피해회복과 보상, 왜곡된 생각의 수정, 범죄성의 감소, 자신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 등 동적이면서 개선가능성을 담보한 요인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방식의 재범위험성 체계를 설계해야 함.

- 7) **사회적응훈련의 내실화** : 장기수형자에 대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출소 전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석방예정자의 사회적응훈련의 시간을 늘리고 그 내용도 사회복귀에 필요한 것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출소 후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8) **보호관찰의 활용 및 사회내처우의 연계 강화** : 외국에서 가석방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 활용 및 사회내처우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음. 따라서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시설내 처우담당자와 사회내처우 담당자간의 충분한 정보교환과 합리적 관계가 필요하고, 가석방자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정시설 수용기간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1)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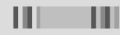
- 가석방 요건 규정과 심사체계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석방심사절차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교정시설 운영 및 교정처우 관련 사항의 정책대안 제시

2) 활용방안

- 가석방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 실효적인 가석방심사절차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 외국의 가석방제도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참고자료 제공

□ 주요 키워드

※ 가석방,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재범예측지표, 보호관찰



2세션

● ● 자료집

1.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_ 65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_ 69
(김민영 부연구위원)
3. 대학 내 폭력 문화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_ 75
(장다혜 연구위원)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_ 79
(윤지영 연구위원)

» 소비자 ‘갑질’ 폭력에 대한 피해 조사 연구 «

-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marathon@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2013년 전후로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됨
-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소비자 갑질피해 영상이 2015년 언론에 공개되면서 소비자 갑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 현상이면서 용어이기 때문에, 소비자 갑질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 중임
-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소비자 갑질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연구가 부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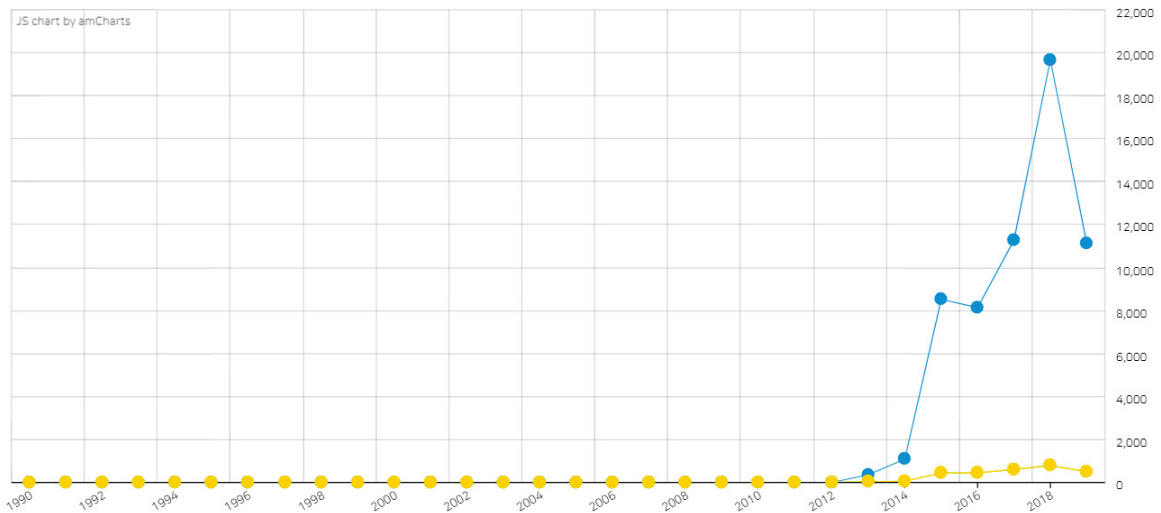
□ 연구방법

-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을 검토
- 본 연구는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소비자 갑질 폭력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을 사용
- 2019년 9월 18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N = 1,010$)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를 인터넷으로 실시
- 소비자 갑질피해 경험이 있는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N = 300$)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부스터 샘플링 설문조사(Booster Sampling Survey)를 추가로 실시
-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동일 직종 각 2명씩 전체 12개 면접그룹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대상인 '소비자 갑질'에 관련된 국내 언론 기사 수 [[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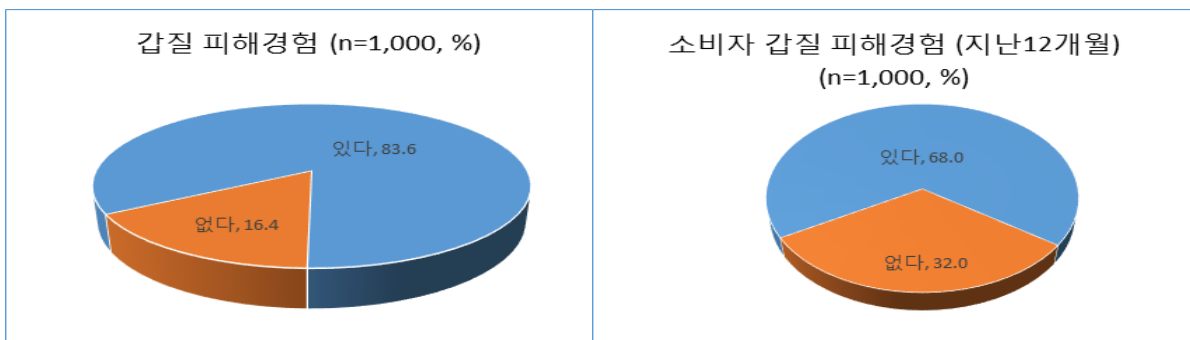
-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언론에서 다루는 기사의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림 1-1] 키워드 '소비자 갑질'의 기사 속 단어 빈도 그래프 (1990-2018년)

○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종사기간 중 소비자 갑질 피해경험 [[그림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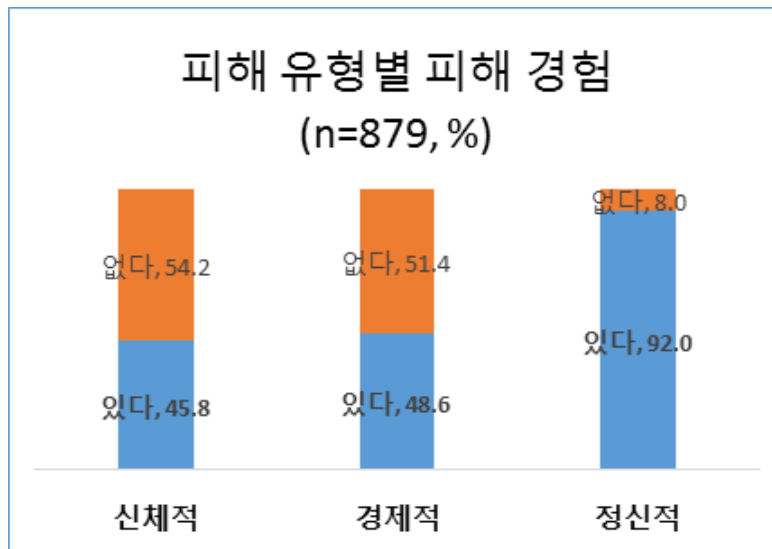
-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 중의 약 84%가 과거 종사기간 중 소비자 갑질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2 개월 중 68%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소비자 갑질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5-1] 갑질 피해경험과 소비자 갑질 피해경험

○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그림 5-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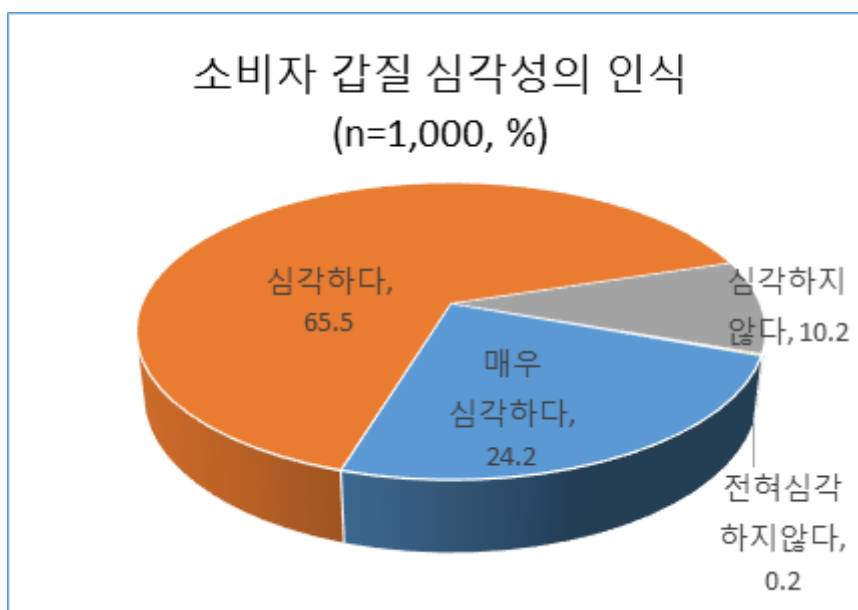
- 소비자 갑질 피해자들(N = 879)의 피해경험별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자들 중 92%가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피해(45.8%)와 경제적 피해(48.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 소비자 갑질 피해 경험자들의 유형별 피해

○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의 소비자 갑질 피해의 심각성 인식 [[그림 5-16] 참조]

- 응답자 약 89.6%가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 갑질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10.4%의 응답자는 소비자 갑질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그림 5-16] 소비자 갑질 심각성의 인식

☐ 정책제언

- 소비자 갑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대상 갑질예방교육이 필요함
- 소비자 갑질피해를 경험한 근로자들이 이런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함
- 소비자 갑질 대응매뉴얼의 제도화를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의 윤리성 확보가 중요함
- 소비자 갑질로 인한 피해 치료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활성화가 시급함
- 갑질을 묵인하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소비자 갑질로 발생하는 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판매 및 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노동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소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국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 대응 매뉴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소비자 갑질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 주요 키워드

※ 소비자, 갑질, 폭력문화, 피해조사, 감정노동, 서비스직종사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연구책임자: 김민영 부연구위원(행정학 박사, mykim9@kic.re.kr)
내부공동연구진: 한민경 부연구위원(사회학 박사, m_han@kic.re.kr)
박희정 전문원(통계학 석사, visionchi@kic.re.kr)

□ 조사목적

○ 조사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조사구): 17개 시도와 동부/읍면부로 층화하여 조사구 추출
 - 계통추출(조사구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19.5.30.~2019.7.21.
- 조사원료: 6,704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주요 분석결과

1.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됨.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남.
-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피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큼.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2012-2018)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범죄	범죄피해율(%)	(0.77)	(0.37)	(0.39)	(0.5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768	372	388	566
재산범죄	범죄피해율(%)	(3.83)	(3.29)	(3.17)	(3.11)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3,832	3,290	3,168	3,112

주: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2.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됨.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소위 ‘기관사칭형’ 비율이 증가함.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함.

〈표 2〉 상위 4개 보이스피싱 수법(2008년 vs. 2018년)

2008년	전화국·통신회사 사칭	금융기관 사칭	국세청 사칭	경품당첨
	32.74%	25.55%	17.93%	10.21%
2018년	금융기관 사칭	수사·감독기관 사칭	우체국·택배회사 사칭	국세청 사칭
	36.08%	29.05%	18.37%	9.57%

3.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남.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 재산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일정 시각이 경과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 여부 및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나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폭력범죄피해와 차이를 보임.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침. 반면, 2018년의 경우 손괴 피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47.56%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5.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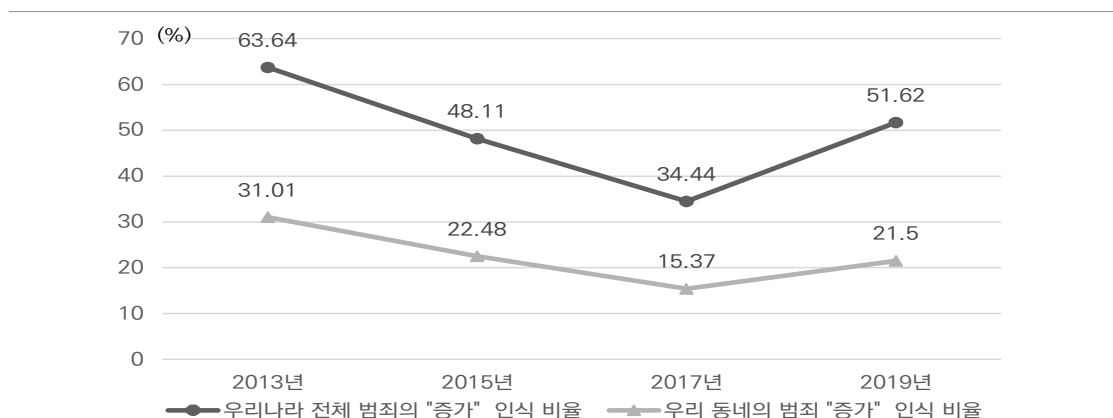
○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함.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검거·처벌에 못지않게 손실(피해) 회복이 중요한 신고 이유로 고려되고 있는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6.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

○ 우리나라와 동네 범죄발생인식의 격차와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 확인

- 특히 우리나라 및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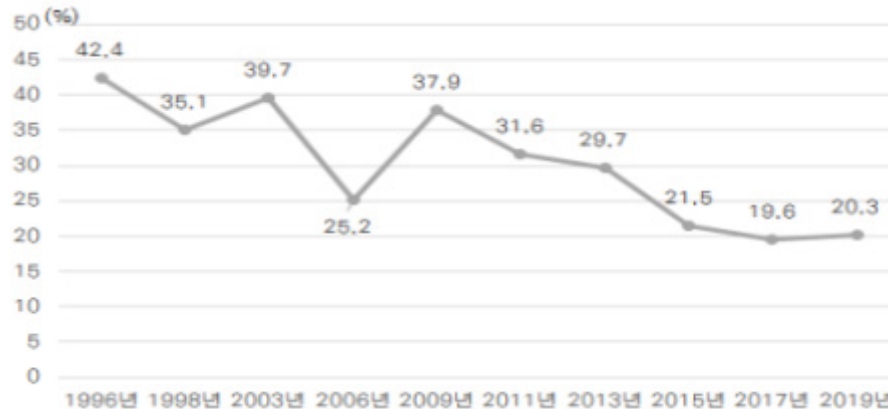
주: 작년 한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약간 증가할 것' 혹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그림 1] 우리나라와 동네에 대한 범죄발생인식

○ 밤길 범죄두려움의 지속적 감소

-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2017년 19.6%에서 2019년에는 20.3%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성·연령 등과 같은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결과에서는 2017년 20.7%에서 2019년

19.8%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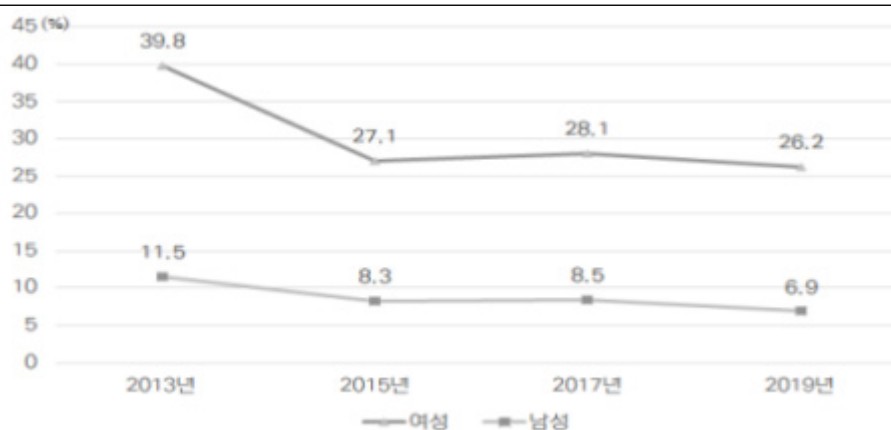


주: 1.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6년까지의 조사는 제주도 제외 전국 약2,000명의 표본 대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적 정확성을 확보한 조사결과가 제공되고 있음

[그림 2] 밤길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음

-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3년 대비 2015년에 조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의 범죄두려움에 비해 약 20%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실제 피해경험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라는 인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됨



주: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그림 3]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 정책제언

○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현재 가구 내 만14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은 학생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조사표가 별도로 필요하기에, 향후 조사대상 연령 상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 피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시계열적 연속성과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특히 상습범죄피해의 사례 수가 적어 공표하지 못하였는바(2017년도 제5차 조사에서도 동일), 상습범죄피해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조사표의 일부 문항 개선 등이 필요함
- 이외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조사결과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학술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자료공개 확대라는 상충적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우리나라 국민의 범죄피해 경험을 파악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8년 경험한 범죄피해를 파악하고 범죄피해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등의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키워드

-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두려움, 범죄발생인식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II) -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연구책임자: 윤지영 연구위원(법학 박사, gg7797@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전현욱 연구위원(형법학 박사, sinawe@kic.re.kr)

김진묵 파견공무원(부이사관, eyekim3117@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연례회의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다루어지면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2016년 3월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함
-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하고, 핵심기술의 개발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전략과제로 선정함
-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 등 생산 방식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발생 양상이나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컴퓨터와 인터넷의 상용화 초기에 등장했던 신종범죄 및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첨단기술로 인해 변화될 범죄 양상이나 형사사법적인 대응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오늘날 우리는 또 한 번의 네트워크 혁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사물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수집·전달·공유하는가 하면, 네트워크 및 정보처리 과정에 암호화라는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였는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은 연결망의 확대와 암호화라는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5월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위너크라이(WannaCry)'는 철도, 의료, 통신 등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해커들은 암호 해독의 대가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였음
- 이렇듯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의 보안 취약성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바, 이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 방안」 2년차 과제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인해 대두되는 형사법적 쟁점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고찰

-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혁신을 이끌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룬 국내외 보고서와 단행본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함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연혁을 개괄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사물인터넷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

○ 국내외 전문가 활용 및 세미나 개최

-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와의 면담 및 유관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 현황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관련 법규 정비 동향을 검토함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이 분야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되는 형사법적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유관기관에 방문해서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함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법 학계 및 실무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 후 현행법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의 변화

-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상용화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연혁
-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형사법적 과제

○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사물인터넷 관련 법적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 블록체인

-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 네트워크 혁신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 형사실체법적 대응 방안

- 형사절차법적 대응 방안
-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정책제언

○ 형사실체법적 대응 방안

-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형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사물인터넷을 조작해서 과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킨 경우도 현행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불을 놓아’를 ‘불을 내어’라는 용어로 변경하거나 전자기기나 통신기기 등을 조작·통제하거나 이를 통하여 불을 낸 경우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함
-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이나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민법상 채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거래소에서 시세에 따른 환금성을 가질 수 있는바, 형법상으로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이득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탈취행위는 컴퓨터등을 이용한 권한 없는 자금의 이체 등과 같은 구조로 보아 절도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 거래나 거래소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을 현행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으로 포섭하기에는 난점이 있음
- 암호화폐의 거래나 거래소의 특성상 비교적 소수의 담합만으로도 거래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시장교란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담합행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과정에서 다수의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암호화폐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근거법령을 마련하면서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사절차법적 대응 방안

-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을 직접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색 내지는 네트워크 수사기법(NIT)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다크넷에 대한 수사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분을 가공해서 증명할 것이 요구되기도 하는바, 형사소송법상 비밀수사관 제도의 도입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이 형태의 물리적 영장제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향후 전자적 방식으로 영장의 발부와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정비가 요청됨
-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압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바, 계정생성과 이체의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그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이에 대한 관리 절차를 두어야 하고, 이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처리 규정과 함께 이체

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서 문서화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암호화폐의 압수에 필요한 계정정보 등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확보가 어려우므로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개인기록(PC, 휴대전화, 메모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거기서 얻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암호화폐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 사물인터넷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요청됨
- 사물인터넷이나 블록체인을 형사사법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사물인터넷의 경우 이미 도입된 폴리스캠 등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상에 연결시키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 등을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함
-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불비로 인한 수사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이 요구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형사정책 수립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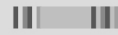
-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 발생 양상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적 국가전략 및 정책 마련에 기여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을 반영한 형사사법 분야의 정책 자료 제공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본격적 활용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권리 침해 및 범죄 악용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검토
- 네트워크 혁신 시대의 형사법적·형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주요 키워드

※ 4차 산업혁명, 사이버범죄,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3세션

● ● 자료집

1.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_ 85
(박학모 연구위원)
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_ 89
(윤정숙 연구위원)
3.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_ 99
(김유근 연구위원)
4.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_ 105
(황지태 연구위원)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학모 연구위원

MEMO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윤정숙 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yoonjsk@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인천의 한 목사가 8년간 중고등학생 신도 20여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음. 특히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선물을 사주거나 고민을 상담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 아동대상의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착취·유인하기에 유리한 직업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층(예: 종교지도자, 교사, 스포츠코치 등)에서 빈번히 있어왔고,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목표로 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음
-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길들이는 그루밍(grooming)은 행위의 부적절성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해 성추행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며 피해자 측에서는 신뢰관계로 인지한 채 유인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그루밍(grooming)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법들을 분석하여 보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외 그루밍 관련 학술논문 검토
- 그루밍의 개념 및 측정관련 이슈
- 그루밍의 단계에 관련한 선행연구
- 경험적 연구를 위한 그루밍의 조작적 정의 확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그루밍 관련 기초적 특성 파악을 위한 수사재판기록 조사

-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을 통한 그루밍 과정 탐색
- 그루밍 성범죄자의 특성
-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 그루밍 수법 및 성범죄 연결과정 분석

〈표 1〉 수사재판기록 사례 수

성범죄 유형		사례 빈도(%)		사례 수(건)	
일반 성범죄		50.0		54	
그루밍 성범죄	오프라인 그루밍	50.0	39.8	54	42
	온라인 그루밍		11.1		12

○ 해외사례 연구 및 관련 문헌 연구

- 그루밍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 현황 및 제도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문제점 도출 및 효율적인 제도화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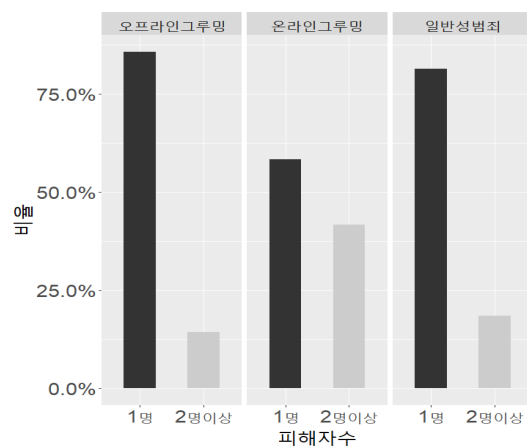
1. 피해자수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1.6명으로 평균적으로 사건 당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

〈표 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단위: 명)

피해자의 수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피해자수 평균	1.1	1.6	1.3
피해자수 표준편차	.43	.79	.72



[그림 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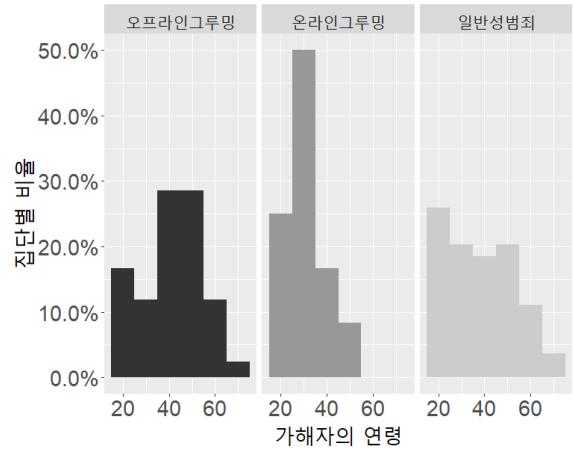
2. 가해자 연령

-온라인 그루밍을 보면 약 30세를 중심으로 빈도가 몰려있는 형태이며, 온라인 그루밍 중 대다수(83.3%)의 가해자가 40세 이하

〈표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연령

(단위: 세)

가해자의 연령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연령평균	41.7	31.2	38.1
연령표준편차	12.9	8.7	14.4



[그림 2]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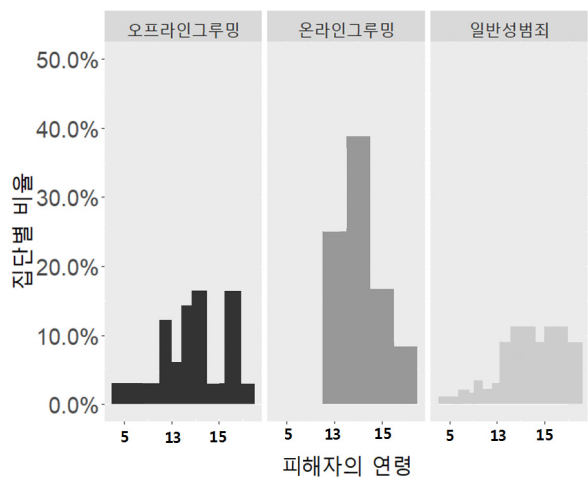
3.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차이

- 온라인 그루밍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간의 차이가 적었음

〈표 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

(단위: 세)

연령차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연령차 평균	27.8	16.5	24.6
연령차 표준편차	14.0	8.3	14.4



[그림 3]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4.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 일반 성범죄의 경우 비면식 관계가 62.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온라인 관계가 84.2%로 가장 많음.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에서는 친족 외 면식관계가 가장 많았고(40.8%), 다음으로는 친족관계가 36.7%로 그 뒤를 이음.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친족을 포함한 면식 관계가 만연하며, 일반 성범죄는 비면식 관계에 의한 범행이 많음

〈표 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가해자 피해자관계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친족관계 ¹⁾	36.7	-	15.2
친족 외 면식관계 ²⁾	40.8	5.3	15.2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	6.1	84.2	4.5
비면식 관계 (1회성 관계)	10.2	-	62.1
기타	6.1	10.5	3.0

5. 성폭력 지속기간

- 오프라인 성폭력이 지속기간이 가장 김. 성폭력 지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경우 친족관계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 친족 관계에서의 그루밍 성범죄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표 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성폭력 지속기간 ³⁾				
분류	1일	2일 이상		
	비율(%)	비율 합계(%)	세부 항목	비율(%)
오프라인 그루밍	11.9	78.6	이틀~일주일	2.4
			1달 이상 3달 미만	9.5
			3달 이상 1년 미만	0.0
			1년 이상 2년 미만	16.7
			2년 이상 3년 미만	7.1
			3년 이상 5년 미만	16.7
			5년 이상	11.9
온라인 그루밍	33.3	58.3	이틀~일주일	33.3
			1달 이상 3달 미만	0.0
			3달 이상 1년 미만	16.7
			1년 이상 2년 미만	8.3
			2년 이상 3년 미만	0.0
			3년 이상 5년 미만	0.0
			5년 이상	0.0
일반 성범죄	50.0	20.4	이틀~일주일	5.8
			1달 이상 3달 미만	3.8
			3달 이상 1년 미만	0.0
			1년 이상 2년 미만	3.8
			2년 이상 3년 미만	1.9
			3년 이상 5년 미만	1.9
			5년 이상	3.8

1) '친자녀(손주)',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형제/친척' 관계가 포함됨

2) '친구/이웃의 아이', '학교/학원/보육원생',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포함됨

3) 성폭력 지속기간 '없음', '알수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6. 가해자의 혼인 상태

-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 41명 중 결혼(재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해자는 20명(47.6%). 이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중 1명(8.3%)만이 기혼자이고, 일반 성범죄자 중 15명(27.8%)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확인

〈표 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혼인상태

혼인상태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미혼	21.4	9	83.3	10	51.9	28
결혼(재혼)	45.2	19	8.3	1	22.2	12
동거	2.4	1	-	-	5.6	3
이혼(별거)	28.6	12	8.3	1	18.5	10

7.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의 기타 유형의 비율은 35.7%. 이는 오프라인 그루밍 피해자(86.1%)와 일반 성범죄 피해자(91.5%)의 대다수가 친족관계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 기타 유형은 가출을 한 후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또래끼리 모여 사는 거주 형태를 포함하며, 친족 관계는 물론 친족 관계 외의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함.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처가 없어 잘 곳을 구하거나 돈이 필요해 채팅 앱, 조건 만남 사이트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보임

〈표 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동거인 유형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부모	41.9	18	50.0	7	61.7	29
편부모	44.2	19	14.2	2	29.8	14
부모 외 보호자 (조부모 등) ⁴⁾	7.0	3	-	-	2.1	1
기타(가출 등) ⁵⁾	7.0	3	35.7	5	6.4	3

4) 조부모, 친척, 부모의 친구 등 친족관계 외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를 말함

5) 가출, 자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상태를 말함

○ 그루밍 성범죄의 세부적 유형

1. 연구방법 설정

- 잠재 계층 분석에서는 자료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 계층 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함. 본 분석에서는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부터 5개인 경우까지 잠재 계층 모형을 생성한 뒤, 모형 적합도 지수(Model fit)와 각각의 모형에서 얻은 문항응답패턴을 비교하여 자료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름. 각 잠재 계층모형에 따른 모형 적합도는 <표 9>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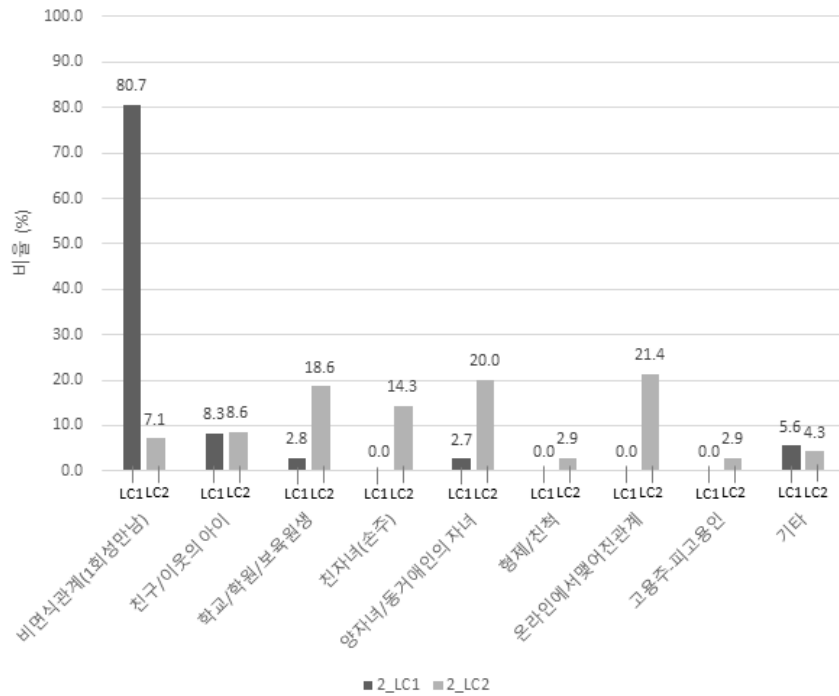
<표 9> 잠재 계층모형 모형 적합도

Class	LL	BIC	aBIC	AIC	Parameters	VLMR	BLRT	Entropy
2	-816.36	1899.6	1719.49	1746.72	57	.490	.000	.995
3	-765.72	1934.10	1662.36	1703.44	86	.637	.000	.972
4	-731.38	2001.21	1637.84	1692.76	115	.959	.000	.974
5	-711.78	2097.78	1642.78	1711.55	144	.761	.200	.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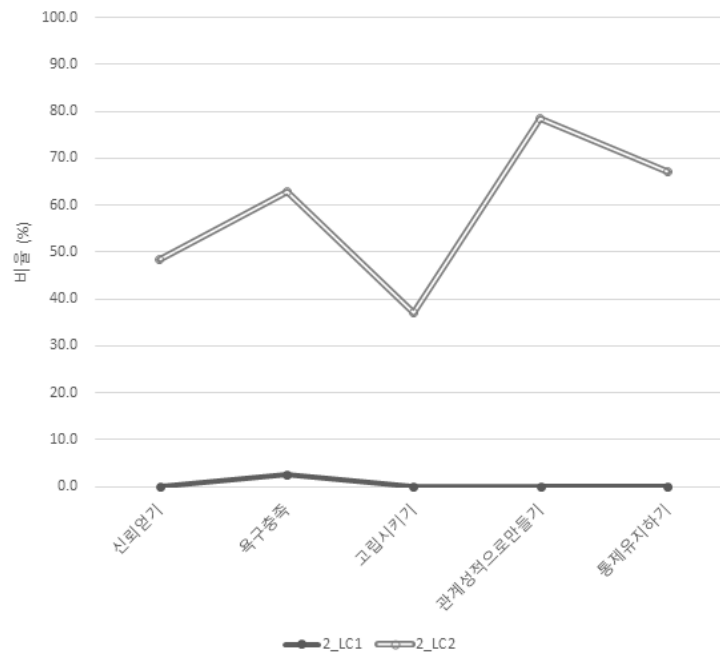
- 모형 적합도 확인 결과, Entropy와 Information Criteria 중 BIC는 잠재 계층의 수가 2개인 잠재 계층모형에서 가장 적합하였으며 Information Criteria 중 adjusted BIC·AIC의 경우 잠재 계층의 수가 4개인 잠재 계층모형에서 가장 적합. 모형 적합도는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적이거나 우월한 지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2_LC1, 2_LC2)과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4_LC1, 4_LC2, 4_LC3, 4_LC4)의 응답패턴을 분석하여 적절한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

2. 그루밍사건과 비그루밍사건 비교

-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_LC1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적다는 점을 확인. 2_LC1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루밍 단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대부분 비면식 관계.
- 반면, 2_LC2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 2_LC2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루밍 단계의 대부분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과반수는 면식 관계, 일부는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 이러한 문항 응답 패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2_LC1은 일반 성범죄 유형, 2_LC2는 그루밍 성범죄 유형의 특징을 반영하는 계층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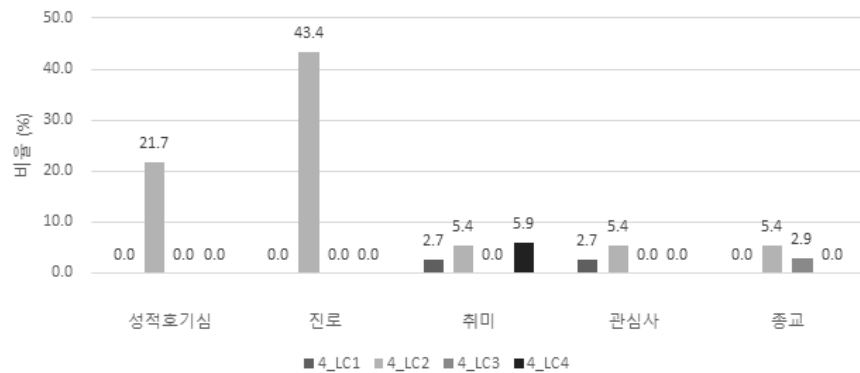
[그림 5]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3. 그루밍의 세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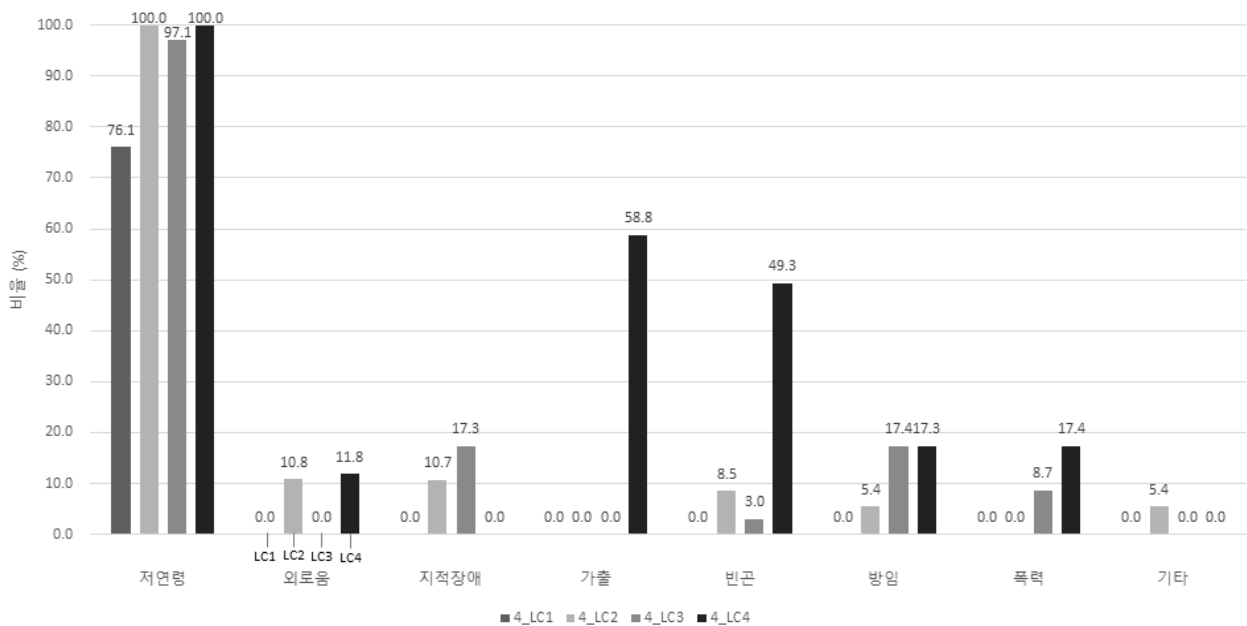
-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4_LC1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신뢰여부가 적었고, 대부분 비면식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 파악을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에

서의 2_LC1과 유사한 패턴으로, 일반 성범죄 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음. 반면, 4_LC2, 4_LC3, 4_LC4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다수였고, 4_LC1에 비해 비면식 관계인 경우가 적었으며,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시행한 경우가 4_LC1보다 많음. 따라서 4_LC2, 4_LC3, 4_LC4는 2_LC2와 마찬가지로 그루밍 성범죄 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음

- 이에 본 분석에서는 4_LC1을 일반 성범죄, 4_LC2를 전형적 그루밍 유형, 4_LC3을 유사 그루밍 유형, 4_LC4를 온라인 그루밍 유형으로 명명
- 2개 잠재 계층 모형과 달리 4개 잠재 계층 모형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이 나뉘었는데,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3개 계층(4_LC2, 4_LC3, 4_LC4)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먼저 4_LC2(전형적 그루밍)에 속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6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여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을 보이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학교/학원/보육원 등 피해자와 사제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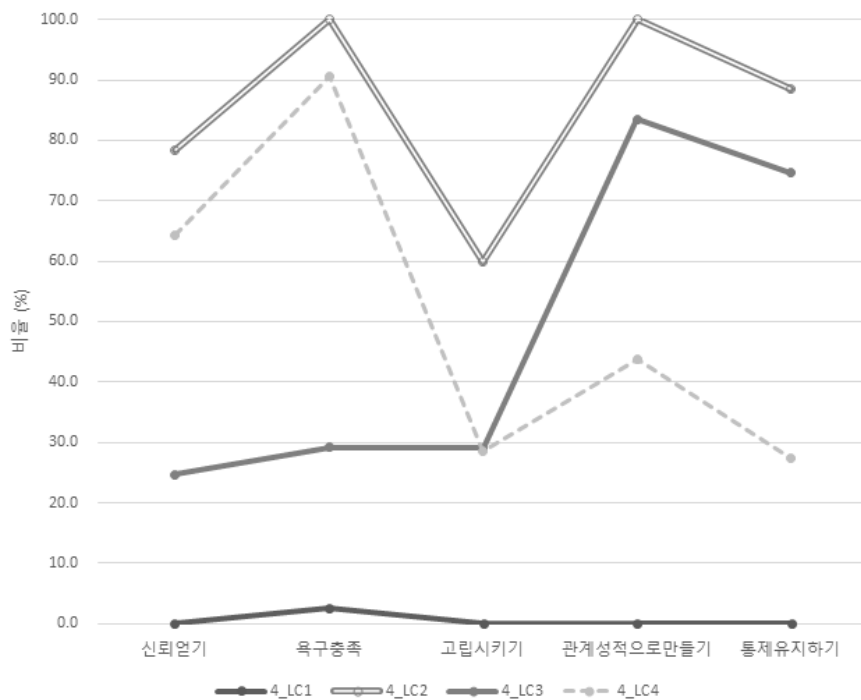


[그림 8]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육구 파악



[그림 9]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 또한, 4_LC2(전형적 그루밍)의 가해자는 성적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적장애, 외로움 등의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었음. 다음으로 4_LC3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폭력·방임 혹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었음. 4_LC3(유사 그루밍)에 속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욕구파악을 하는 경향성은 거의 없었으며 유사하게 신뢰 얻거나 욕구 충족 단계도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4_LC2, 4_LC4)에 비해 적게 시행하였음. 대신 4_LC3(유사 그루밍)의 가해자는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였음.
- 마지막으로 4_LC4(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출·빈곤·폭력·방임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음. 4_LC4에 속하는 가해자는 욕구 파악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신뢰 얻기, 욕구 충족 등의 단계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였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는 경향성은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4_LC2, 4_LC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 하지만 4_LC2, 4_LC3, 4_LC4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특징을 보이며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 4_LC1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그루밍 과정이 나타남



[그림 10]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 정책제언

- 해외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성적 그루밍에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비범죄화하기 보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짧은 일회성의 과정만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형사사법당국은 자각하여야할 것임
- 본 연구에서 파악한 그루밍 사건들은 지속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오랜 기간의 성적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그루밍’이라는 과정을 ‘범죄화’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것이 분명함. 성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신뢰관계를 오용하여 아동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힘써야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그루밍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양형선고 및 가해자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등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적 협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성적 그루밍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식 마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처벌법 개정안 마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마련
- 성적 그루밍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마련
 - 학교/학원 등의 교육기관 종사자 교육
 - 부모교육
 - 시민교육

□ 주요 키워드

※ 아동·청소년 성범죄, 그루밍, 온라인 성범죄, 친족성범죄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I)

－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유근 연구위원(법학박사, kimyk11@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탁희성 선임연구위원(형사법 박사heesung@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설득력은 공판절차에서 사실인정(*facts-finding*)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은 소송당사자의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좌우하게 된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대륙법계 형사소송절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문제가 비단 일반 형사사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군사 재판절차 그리고 통고처분 등 일반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동일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은 공판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증거수집단계인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왜 대륙법계 형사소송구조에서 경찰과 검사의 수사강제주의와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하고 특별히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까지도 수집하도록 하는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대륙법계 형사소송절차가 수사법관제도로부터 검찰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더라도(단순히 수사권력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법관의 임무만은 아니며 그 이전에 이미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행정부(*Exekutive*)와 사법부(*Judikative*)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Rechtspflege*, 사법부의 사법(司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기소단계에서 법관과 동일한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의 넘는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었을 때에(그리고 그러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비로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증거법 개정연구
- 기타 법률에 분산된 형사절차규정의 개정연구

□ 주요 연구내용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의 독립성

- (1)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비단 법관이나 배심원의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초부터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의 국가의 거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게 부과된 객관의무 등으로부터 귀결되는 의무로서 이미 수사단계에서의 검사의 의무에 속한다. 즉 검찰제도가 법관에 준하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현재 형사소송법이 제2편 “제1심” 하에 “수사”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제도가 탄생하기 전의 예심판사제도나 현행 대륙법계의 수사(예심)판사제도에서는 몰라도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조화되기 어렵다.
- (3) 증거재판주의 하에서 어떤 증거를 법관의 자유심증의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 하에 “증거”의 절에 규정되어 있으나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의 주재자가 법관인 형사소송구조에서와는 달리) 증거의 허용성여부(증거능력)의 문제는 이미 수사의 방법론의 문제로서(“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행동규범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로써 증거의 절에 규정된 “공판”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배제나 강요된 자백의 “증거능력”의 배제의 의미가 수사와의 연계 하에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법관·배심원의 심증형성의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4)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행위(「형법」 제126조)는 단순히 직무상 기밀누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법관·배심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규칙의 개선방안

법관·배심원의 자유로운 심증형성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증거재판주의) 재판에 현출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관·배심원의 심증형성의 객관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증거의 현출 자체가 자칫 법관·배심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 (1) 그런데 재판에 현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증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그 방법은 직권탐지주의와 당사자주의 형사소송구조, 직접주의, 구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기본원칙들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더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2) 예컨대 증거개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법원중심적인 형사소송구조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직권탐지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규칙 제135조의2 단서),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 특히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고 역시 할 수 없는 것(법 제403조 제1항)도 다분히 법원중심적인 것이다.
- (3) 그리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등), 제316조(전문의 진술) 등은 전문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재판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직접주의의 예외인지 아니면 전문법칙의 예외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일단 재판에 현출된 이들 증거들은 사후에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자칫 법관·배심원에게 선입견과 예단을 심어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들 증거들이 재판에 현출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4) 피의자·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입회권은 탄핵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보장 외에) 실체적 진실의 왜곡의 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공판단계에서는 교호신문을 통한 법관·배심원의 자유심증의 규제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입회없는 상황 하에서의 피의자·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재판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 (5)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들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한 경우를 우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에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전문법칙과 별개의 원칙에 의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전문법칙과 다른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전문진술과 전문서류 모두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체계의 정합성 및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진술증거에 대해 먼저 규정하고 전문법칙의 전형적 예외에 관하여 규정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문을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6) 공동연구진들 간에 가장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수사권조정논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일각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의 차이가 흡사 검사에게 이른바 보다 강한 수사권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서재판이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재판실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흡사 "자백"조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과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됨으로써 (설령 나중에 피고인이 공판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판에 현출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주게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인정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수사기관은 비진술증거의 확보방안으로서 수사의 효율성의 제고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유일한 증거일 수도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후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법관은 형사소송법상 구도변론주의(「형사소송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인증보다는 서증을 선호함으로써 결국 소송경제의 가치를 우선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실무의 요구를 반영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준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자백조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공동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결론을 미루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서술한 공동연구자의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제2장 제10절 “3. 개정안”, “나.”, 제12절 “5. 개정안”).

- (7) 진술의 임의성은 그 일관성과 함께 진술증거의 추진력(협의의 증명력, *probative value*)과 신용력(*credibility*)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법관·배심원의 자유심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증인들 간 혹은 피고인과 증인 간에 진술이 상반되거나 혹은 진술증거만이 재판에 제시되거나 혹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 더욱 더 진술증거의 임의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문조서(동조 제4항), 그 밖의 진술서등(제313조 제1항), 진술을 요하는 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진술(제314조) 그리고 전문의 진술(제316조)에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때 진술의 임의성을 정한 제317조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의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진술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나 진술의 임의성을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과연 진술의 임의성을 정한 제317조가 이들 규정들 뒤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3. 기타 증거규칙들의 적정성의 문제

형사소송법 외에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각 특별법들에 산재함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의 영역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과의 정합성이 문제된다.

- (1) 영상녹화물과 관련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의 기능을 적법절차 및 인

권보호로 제한하는 한, 그에 부수하여 작성된 영상녹화물의 활용 역시 적법절차 및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이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수단 또는 특신상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진술의 임의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 (2) 디엔에이 증거와 관련해서도 감정결과와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류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반증가능한 추정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그리고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식적 진정성립요건이 존재해야 한다면 디지털 형식에 맞는 형식적 진정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4) 기타 증거확보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는 감청과 함정수사를 들 수 있는데 ① 감청과 관련해서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사후통제의 결여가 독수과실의 원칙의 의미를 희석시킬 우려가 있으며, ② 함정수사와 관련해서는 함정수사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간과될 수 없다.

4. 법관·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직권탐지주의 형사소송구조에서 법관과 배심원은 공소사실이 실제적 진실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규명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의 불완전성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죄에 대한 확신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관·배심원이 예단을 갖지 않도록 심증형성과정에 절차적인 전제조건을 규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① 허용되지 않는 증거에 의하여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애초부터 법원에 현출되는 것이 허용되는 증거를 정하고(제2장과 제3장 참조), ②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인정의 최소한의 하한을 정하는 한편(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③ 이때에도 유죄일 확률과 무죄일 확률의 산술적인 통계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었을 때 비로소 무죄일 수 없다는 단정적인 가능성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과 유죄의 심증의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자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거증책임의 원칙을 제시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심증주의는 역사적인 유래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현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법관의 “자유”보다는 “제한”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과 배심원의 심증의 “자유”가 재량을 가장한 자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법원·배심원의 심증이 이른바 블랙박스가 되지 않도록 그 심증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상세한 판결이유의 실시 의무 그리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검증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책제언

- 수사와 관련한 독립된 편제가 필요함.
- 법원중심적인 공판절차의 개선 필요
- 증거법 분야에서 법원 및 수사기관 중심적인 절차 개선 필요
 - 예컨대 흡사 자백조서로 활용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폐지 또는 제한의 필요성
- 수사절차에서의 현대과학기술의 오류가능성을 보정할 수 있는 수단 확보 필요
- 진술증거는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피해자의 행위정황에 대한 신중한 심사(예컨대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등)나 물적 증거에 의한 담보가 필요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형사소송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가능한 포괄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키워드

※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 증거법, 전문증거,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II)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황지태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brothering@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ib2000@kic.re.kr)

임정호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limjh@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조비리에 관한 2년차 연구 중 두 번째 연구로,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임
- 전관비리 혹은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임. 법조비리 사건 폭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 브로커 문제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전관비리의 문제이기도 하였음. 최근에 이르러서도 전관예우와 관련한 사건과 보도 및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전관비리의 실태파악이고, 다른 하나는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궤적 분석이며, 나머지 하나는 현시점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임
- 본 연구는 여러 선행 조사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 실태조사의 방법

-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 소송의뢰인들(변호사 선임경험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일부 심층면접 조사 병행)
- 전관비리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물론,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정보, 의뢰인들의 전관 선호 정도, 전관예우 방지책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문헌연구의 방법

- 선행 조사연구자료 분석
-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의 변천사 검토
- 가장 최근의 국회에서의 입법 동향을 분석
-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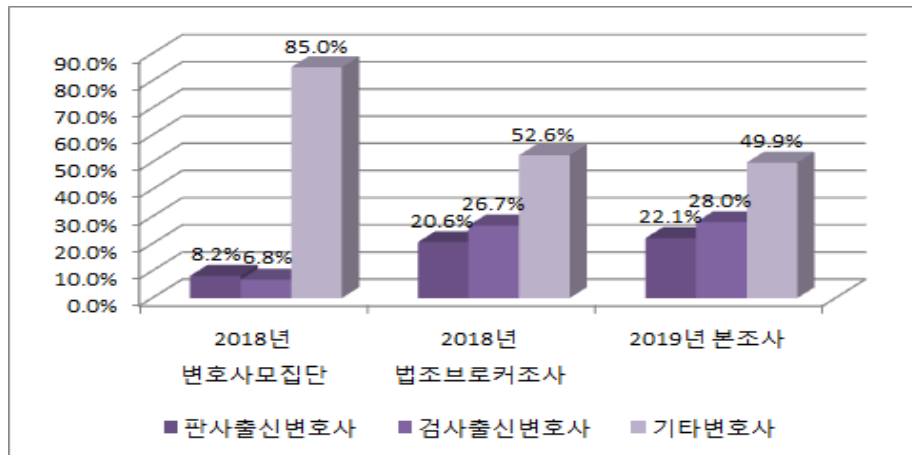
□ 주요 연구내용

1.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 1)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특히 전관비리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의 양은 많지 않지만, 그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할 수 있음. 전관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재판, 경찰수사,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발생단계 및 특혜의 존재 검증, 수임건수 및 수임료 조사 등의 조사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론(설문조사, 심층면접, 판결문 분석, 보석이나 구속 관련 자료 분석 등)도 다양하기 때문임. 부족한 연구양이긴 하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한 연구들은 존재해도 그것의 존재를 간접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할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음
- 2)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고 중요한 조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연구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증조사 연구의 양이 부족하여, 전관예우 현상의 존재를 여러 영역에서 좀 더 충분히 확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선행 조사 연구는 방법론적 수월성으로 인해 판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검사가 개입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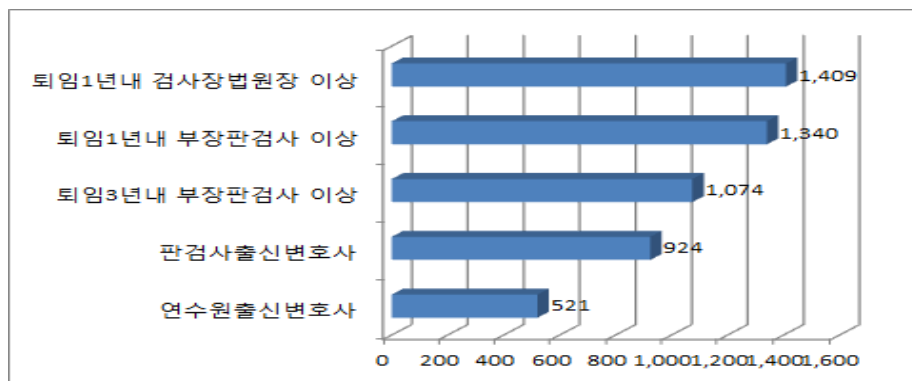
2.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 1) 의뢰인들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 :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에서 의뢰인들이 선임했던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47.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0.1%로 나타남. 2018년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출신 변호사는 15%에 불과함. 모집단에서 15%에 지나지 않는 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의뢰인 표본에서는 약 50%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뢰인들이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매우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기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됨.



[그림 1] 변호사 모집단과 표본조사에서의 판검사출신 변호사 비중 차이

- 2) 의뢰인들이 보고한 전관변호사의 평균 수임료 : 평균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만 되어도 연수원출신 변호사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으며, 퇴임 1년 이내의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의 경우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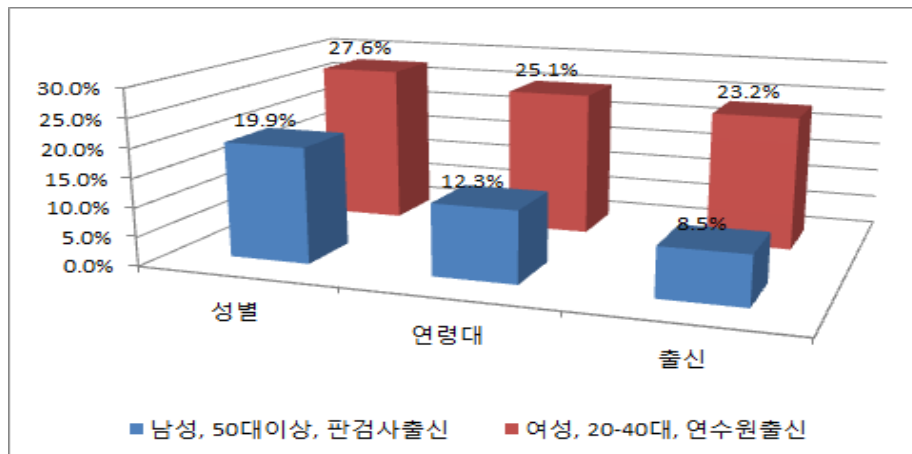
[그림 2] 전관변호사의 조건에 따른 기본 수임료 차이

- 3) 의뢰인 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관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비해 평균적인 수준에서 ① 수임건수가 많고, ② 기본 수임료가 비싸며, ③ 추가수임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과 기타 변호사들의 평균 수입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3.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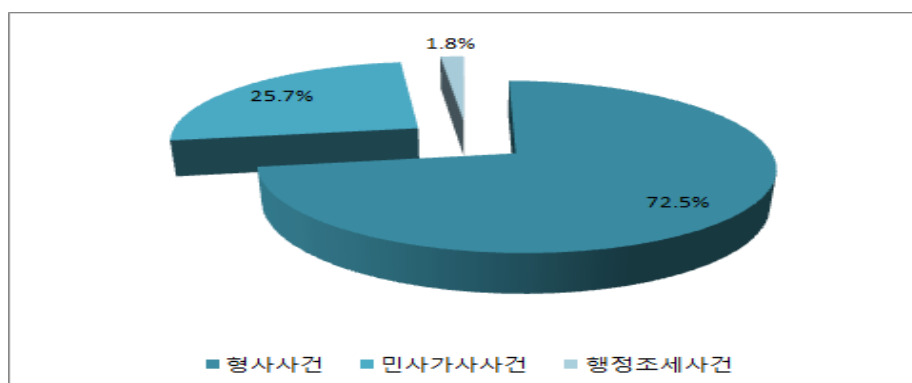
- 1)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사례 경험률 : 최근 10년 내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21.8%, 5년 내 20.6%, 1년 이내에 경험했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5.6%였음. 변호사 시장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 젊은 변호사, 비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경험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관예우 관

행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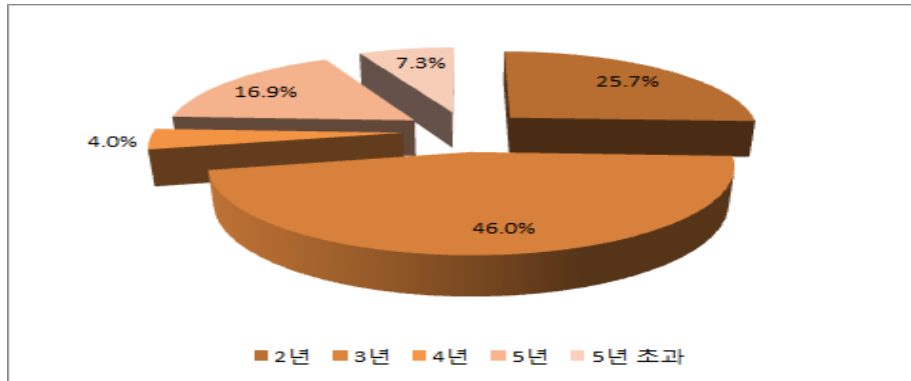
[그림 3] 현직 변호사들의 성별 · 연령별 · 출신별 전관예우 경험률 비교

- 2) 전관예우 관행의 형사사건 비중 :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경험은 주로 형사사건(72.5%)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남. 또한 형사사건 중에서는 재판 단계(1,2,3심 합쳐서 34.2%)보다는 검찰 수사 단계(51.9%) 등 재판 전 단계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다고 함. 조사 및 연구의 방법론적 수월성 때문에 선행조사연구들에서 전관예우 현상은 많은 경우에 판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에서 연구되어 오곤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검사출신 변호사의 영역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나, 이 결과는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관행과 검사출신 전관변호사의 질적 · 양적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4] 현직 변호사들이 응답한 가장 최근 전관예우 경험 사건의 구성비

- 3) 현행 변호사법 수입제한 1년 규정 연장에 관한 의견 : 설문 참여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에 수입제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그림 5] 현행 변호사법 수입제한기간을 대체할 적절한 기간에 대한 의견

4.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사 요약

- 1)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년 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전관비리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은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음.. 1990년대 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에 따른 사법시장 규모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임
- 2)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전관예우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임
- 3)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전관비리 근절대책은 주로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은 법무부(대검찰청)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할만 함

5. 최근 입법동향 정밀분석 결과 요약 : 최근 법안들의 경향성

- 1) 변호사법 개정안의 경우 수입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로 수입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늘리거나 당해 제한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물론 그 외 수입행위에 있어서 대상적 제한이나 방법적 제한과 관련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음
- 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주로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제한이 전관예우 방지대책에만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3) 최고위급 법관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유도하는 법안도 일부 발의된 바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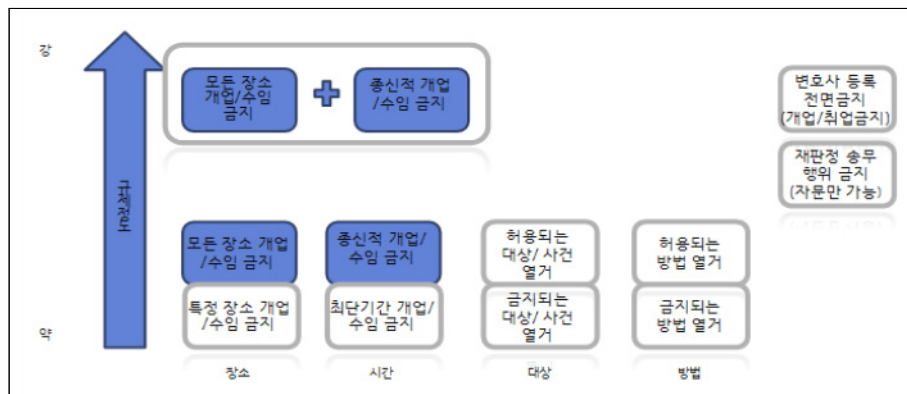
- 4) 전관예우 방지대책에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대책도 일부 발의된 바 있음. 이 역시 시간적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대상적 제한 내지 방법적 제한과 함께 보다 입체적으로 구조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6.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요약

- 1)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사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기 어려움
- 2)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정년보장과 급여보장을 통해서 이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책제언

- 1) 변호사법의 개정 방향의 분류 도식



[그림 6]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규제정도에 따른 전관예우 방지 방법 분류

- 2) 변호사법상의 장기적 차원의 근절 대책 : 평생법관제나 평생검사제 등을 전제로 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장 실현하기에는 한계와 장애가 많음
- 3) 변호사법사상 중·단기적 차원의 대책
 - ① 시간적·장소적·대상적 제한의 특징과 처벌강화
 - ② [방법적 제한1]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
 - ③ [방법적 제한2] 수임자료제출 위반행위자 및 법무법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 ④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의무 위반 관련 변호사 자격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
 - ⑤ 법조윤리협회의 역할 추가 필요성

4)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 ① 취업제한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의 장기화 필요성
- ② 변호사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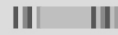
5) 법률 제·개정 외의 정책 제언: 통계적 정책검증 수단 확보 :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정책 역시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고, 정책의 수정 및 정책의 효과성 검증 역시도 실증자료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판결과 관련한 자료, 기소/불기소와 관련된 자료 등 법원과 검찰이 소유한 대규모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전관효과의 존재와 그 변화 추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으며, 이 때 분석이 용이해지려면, 변호사에 관한 정보(전관여부, 전관 퇴임시기와 퇴임시 직위 등에 관한 정보)가 형사사법포털(KICS)에 통계적으로 입력되어야 함. 그러한 입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현상의 추이 파악을 통한 정책 검증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전관예우 혹은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재환기
-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에의 기여
- 실증적 자료 제공 등을 통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 기여
- 관련된 후속 연구 및 후속 대책에 대한 자극 효과

☐ 주요 키워드

※ 법조비리, 전관예우, 전관비리, 전관특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법조윤리협의회, 수임료, 전화변론, 선임계미제출



4세션

●● 자료집

1.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_ 115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2.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_ 121
(이승현 선임연구위원)
3.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Ⅳ)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_ 127
(김지선 선임연구위원)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
연구(Ⅰ)_ 135
(최민영 연구위원)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yohong@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11명의 살인범죄자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총 9,047명 중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가 1,816명으로 전체의 2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살인범죄자의 1/5 정도가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임.
-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기수범 350명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76명을 제외한 276명 가운데 동거친족을 살해한 범죄자는 95명으로 전체의 34.7%나 됨. 즉 가족 내 살인의 경우 동거친족에 의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음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살해, 부모살해, 형제자매 살해 및 배우자 또는 동거자 살해, 가족 이외 동거 친족에 의한 살해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각 범죄 유형별 특성과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정책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연구방법

○ 공식범죄통계분석

- 대검찰청 발간 『범죄분석』이용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의 실태 및 추이분석
-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분석

○ 기록조사

- 교도소 방문을 통한 신분장, 신분카드, 분류심사표 등 조사
- 수사재판기록(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청구전조사서 포함) 분석

○ 설문조사

- 범죄자 대상 구조화된 설문 조사

○ 심층면접조사

- 수행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 외국의 관련정책 비교 분석

- 미국, 캐나다 중심의 가족살인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 일본,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가족살인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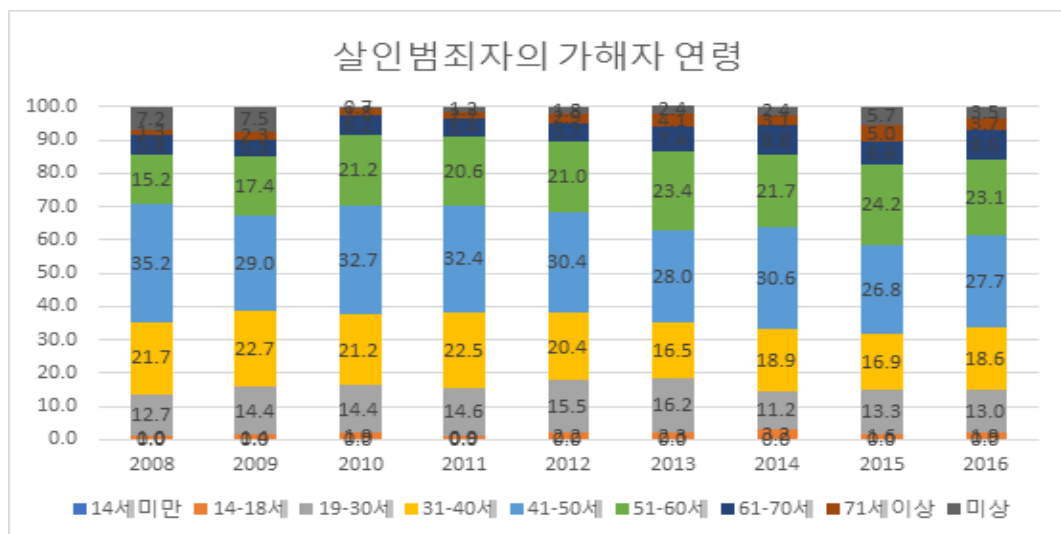
□ 주요 연구내용

○ 한국의 살인범죄발생현황

- 전체범죄발생건수 및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 살인범죄의 가해자 연령은 41~50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51~60세, 31~40세 순.

〈표 1〉 전체범죄와 살인의 발생 건수 및 발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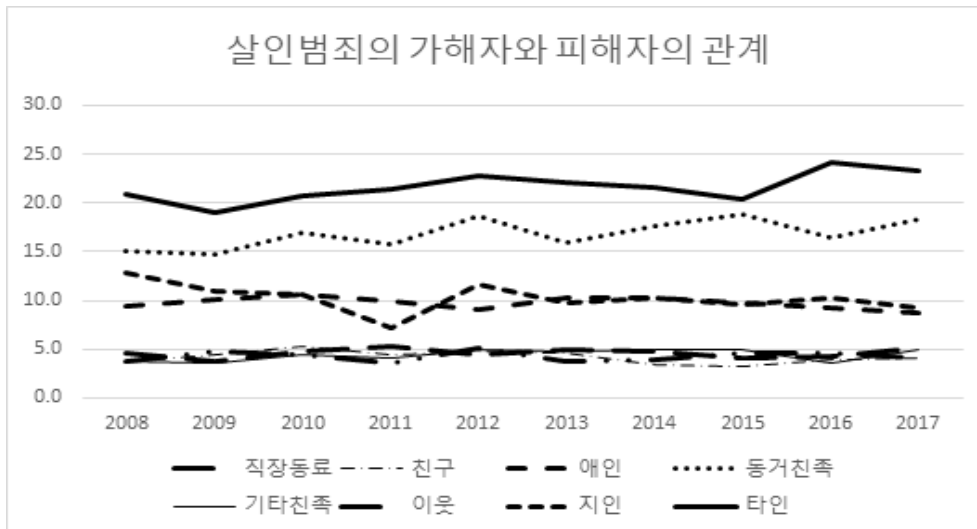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범죄	발생건수	2,189,452	2,168,185	1,917,300	1,902,720	1,944,906
	발생비	4,419.5	4,356	3,750	3,750	3,817
살인범죄	발생건수	1,120	1,390	1,262	1,221	1,029
	발생비	2.3	3.0	2.0	2.0	2.0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범죄	발생건수	2,006,682	1,933,835	2,020,731	2,008,290	1,824,876
	발생비	3,921	3,768	3,921.5	3,884.8	3,524.4
살인범죄	발생건수	966	938	958	948	858
	발생비	2.0	2.0	1.9	1.8	1.7



[그림 1] 살인범죄자의 가해자 연령

○ 살인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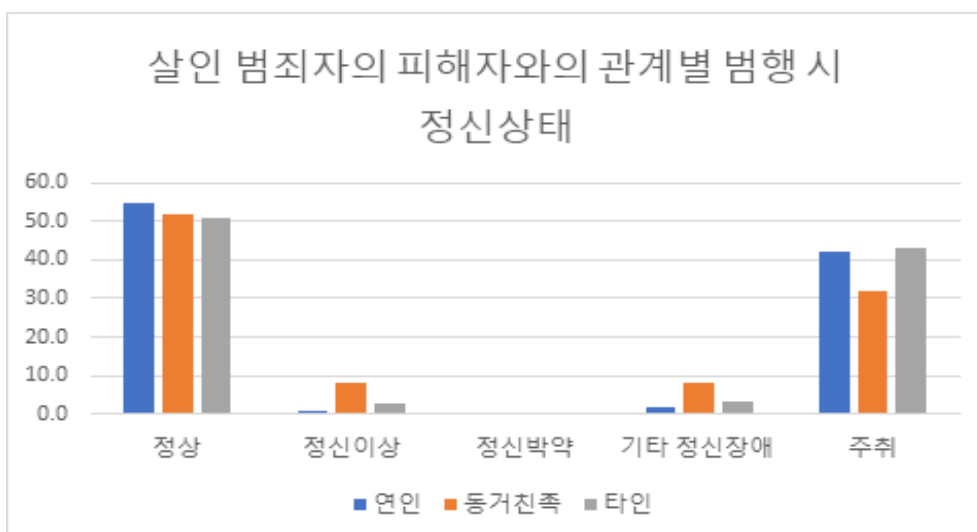
- 가해자가 낯선 사람의 경우는 평균 21.6%: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 의한
- 친족에 의한 범죄의 비율이 21.2%로 매우 높았고, 동거친족만으로 한정해도 살인범죄가해자의 16.9%나 됨
- 또한 애인 9.7%, 지인 10.2%, 친구나 직장동료 8.4%정도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음



[그림 2] 살인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살인범죄자의 정신상태

- 범행시 정신이상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연인이나 타인보다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더 높음



[그림 3] 살인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별 범행 시 정신상태

○ 가족 간 살인범죄자의 재범위험성

- 재범위험성이 중간이상인 비율은 배우자보다는 (조)부모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더 높음

〈표 3〉 KORAS-G 재범위험성 등급

단위 : 명(%)

		(전)배우자	(조)부모	자녀	계
KORAS-G 재범위험성 등급 $\chi^2=11.151^*$	낮음	26 34.2%	4 8.9%	5 18.5%	35 23.6%
	중간	36 47.4%	27 60.0%	14 51.9%	77 52.0%
	높음	14 18.4%	14 31.1%	8 29.6%	36 24.3%
	합계	76 100.0%	45 100.0%	27 100.0%	148 100.0%

〈표 4〉 PCL-R 재범위험성 등급

단위 : 명(%)

		(전)배우자	(조)부모	자녀	계
PCL-R 재범위험성 등급 $\chi^2=4.494$	낮음	21 32.3%	6 17.1%	5 21.7%	32 26.0%
	중간	41 63.1%	28 80.0%	18 78.3%	87 70.7%
	높음	3 4.6%	1 2.9%	0 0.0%	4 3.3%
	합계	65 100.0%	35 100.0%	23 100.0%	123 100.0%

○ 가족 간 살인범죄자의 범행의 계획성

-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의 비율은 타인이나 연인에 비해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더 낮음
-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의 비율은 배우자 또는 (조)부모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더 높음

〈표 2〉 살인 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별 범행동기(2005년-2014년)

(단위 : 명(%))

관계	계	이유						사행심	보복				가정 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기타
		생활비 마련	유혹비 마련	도박비 마련	허영 사치심	차부	이유 기타		신고 고소	수사 협조	증언	보복 기타							
연인	1,058 (100.0)	1 (0.1)	2 (0.2)	1 (0.1)	0 (0.0)	8 (0.8)	32 (3.0)	3 (0.3)	30 (2.8)	14 (1.3)	0 (0.0)	2 (0.2)	189 (17.9)	23 (2.2)	2 (0.2)	478 (45.2)	59 (5.6)	3 (0.3)	211 (19.9)
동거 친족	1,756 (100.0)	5 (0.3)	3 (0.2)	4 (0.2)	1 (0.1)	4 (0.2)	35 (2.0)	0 (0.0)	7 (0.4)	173 (9.9)	0 (0.0)	0 (0.0)	543 (30.9)	31 (1.8)	2 (0.1)	639 (36.4)	77 (4.4)	8 (0.5)	224 (12.8)
타인	2,141 (100.0)	20 (0.9)	11 (0.5)	1 (0.0)	0 (0.0)	15 (0.7)	81 (3.8)	4 (0.2)	75 (3.5)	8 (0.4)	2 (0.1)	3 (0.1)	245 (11.4)	18 (0.8)	4 (0.2)	1,003 (46.8)	112 (5.2)	13 (0.6)	526 (24.6)
계	4,955 (100.0)	26 (0.5)	16 (0.3)	6 (0.1)	1 (0.0)	27 (0.5)	148 (3.0)	7 (0.1)	112 (2.3)	195 (3.9)	2 (0.0)	5 (0.1)	977 (19.7)	72 (1.5)	8 (0.2)	2,120 (42.8)	248 (5.0)	24 (0.5)	961 (19.4)

〈표 5〉 범행의 계획성

단위 : 명(%)

	가해자-피해자 관계						계
	(전)배우자	(조)부모	자녀	낯선 사람	(전)애인	직장동료/친 구선후배	
우발적	42 49.4%	23 48.9%	16 76.2%	26 29.2%	49 58.3%	39 55.7%	195 49.2%
우발적+계획적	17 20.0%	8 17.0%	1 4.8%	27 30.3%	18 21.4%	17 24.3%	88 22.2%
계획적	26 30.6%	16 34.0%	4 19.0%	36 40.4%	17 20.2%	14 20.0%	113 28.5%
계	85 100.0%	47 100.0%	21 100.0%	89 100.0%	84 100.0%	70 100.0%	396 100.0%

$\chi^2=28.320a$

□ 정책제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가칭 가족살인분석위원회 설립
- 가정폭력 위험성 선별조사표 제작 및 활용
- 가족살인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성별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전략 수립
-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예방대책
- 개인 및 사회제도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 환경적·사회적인 방지체제를 도입
- 국가공식 범죄통계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화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살인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예방전략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
 - 가족살인범죄에 대한 가해자유형별 범죄특성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이해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살인범죄에 대한 적절한 예방정책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요 키워드

※ 살인범죄, 가족살인, 배우자 살해, 존속살해, 자녀살해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 연구

-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승현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 saldana@kic.re.kr)

공동연구자: 박경규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pkgyu@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65년 동안 37번의 개정작업을 거쳐 왔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는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요소의 도입,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한 국민의 형사사법에의 참여기회 확대 등 형사소송 체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편장체계는 일본법을 계수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와 거의 흡사함.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관련 준용규정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칙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거나 특별법으로 개별적으로 규율되어 있거나, 수사기법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절차 흐름에 따라 수사절차부터 사건처리 흐름 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형사절차의 당사자인 피의자 등 국민이 형사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가나 학자 등 법률전문가들도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형사절차 흐름에 따라 형사소송법 편장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현행 편장체계 구조를 파악하고 외국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구조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형사소송법 편장 영역 중 규정의 공백이 많은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보다 형사절차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형사소송법 관련 제정 자료 및 개정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 독일,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의 형사소송 관련법의 역사 및 체계 비교분석
-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형태 및 문제점

- 현행 형사소송법은 총칙에서 재판 이후 절차가 규정되고 이후 수사절차 규정의 대부분이 재판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형사절차 흐름에 맞지 않음.
- 제1편 총칙에서 공판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2편 제1심에서 수사절차가 일부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마치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부수적인 절차 또는 예비절차로 이해되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수사절차 중 국민의 기본권이나 절차상 당연히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거나 개별 형사특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형사절차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난 65년간 형사절차에서 수사기법의 변화나 새로운 수사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관련규정에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움.

○ 외국의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특징

- 미국과 영국은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수사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편장체계와 다른바 대륙법계 국가 중심으로 편장체계를 비교검토함.
- 일본은 우리와 편장체계가 매우 유사하나, 제1조에 목적조항을 두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대폭 보완하였음.
- 독일 형사소송법이 일본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독일은 제1편 제3장 이하에서 압수, 통신감시, 데이터뱅크의 검색, 기술수단의 투입 등과 관련하여 수사상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제5편에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제2편 수사 및 검문에서 예비수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사절차 흐름순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2004년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을 통해 수사실무와 차이가 있는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판 전 절차로서 수사절차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스위스는 경찰의 수사절차와 검찰의 수사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고, 당사자로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제3편에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수사절차 관련 편장체계의 개편 기준

- 총칙에 있는 내용 중 수사과 재판에 공통되게 기술된 사항만을 총칙에 남겨두고,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편 재판절차로 이동하도록 하고, 제2편을 수사절차, 제3편 공소, 제4편을

재판절차로 구분함.

- 수사와 재판을 불명확하게 하는 준용규정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상 강제처분을 먼저 규정하고 이후 재판절차상 강제처분을 후치하는 형태로 편장체계를 정비함. 또한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규정에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행위 주체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는 형태로 정비함.
-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하위법령이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같이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나 수사절차상 꼭 안내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안에 규정을 편입하도록 정비함.
- 형사소송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 외에 당사자도 권리나 지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총칙에서 규정하도록 함.

○ 단기적 편장체계 개편방안

-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전제로 한 위치 변경을 하는 방법, 형사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규정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하위규정을 일부 편입하는 방법, 비경제적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단기적 체계 개편을 고려할 수 있음.
- 수사절차 흐름순 개편을 위해 제200조 피의자 출석요구 다음에 제241조부터 제245조까지 규정을 기술하고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규정을 이후 후술하도록 함.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제도 규정도 편입함.
- 준용규정 개편을 위해 제200조의2 다음 체포영장 방식, 체포영장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재기술하고, 제221조 출석요구 규정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
- 하위법령 규정의 편입을 위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규정(제9조의2), 영상녹화 규정(제13조의8,9), 「범죄수사규칙」의 지명수배 관련 규정, 「형사소송규칙」의 체포영장 기재사항 구체화 규정(제96조의2)을 형사소송법에 편입함.
-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사에서의 구속 규정을 신설하고,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개편하며, 체포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의 위치 변경과 준용규정을 최소화함.

○ 장기적 편장체계 개편방안

-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위법령이나 특별법상 규정을 편입하는 것만으로 개편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편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형사절차 흐름에 부합하는 편장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외국의 법률 명칭과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까지 두루 기술된 현 체계를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의 명칭을 “형사절차법”으로 변경해야 함. 제1조에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형사소송법을 참고로 하여 총칙에서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기술하도록 체계를 개편함. 총칙에서 당사자의 권리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형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제1편 총칙에서는 외국 형사절차 편제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당사자의 권리가

기술되어야 하고, 제2편에서는 수사절차, 제3편에서는 재판절차로 체계를 바꾸어 형사절차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가 구성되도록 함. 제2편에서 수사절차의 흐름에 따라 수사의 기본원칙-사건의 수리-수사단서-임의수사-체포·구속-기타 신체침해-수색·압수·검증 순으로 기술되어야 함. 대인적 강제처분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 규정은 수사의 기본원칙 이후로 위치를 변경시켜야 함. 임의수사 관련 규정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기술방식을 참고하여 수사실무 진행순서에 따라 기술되어야 함. 수사단계에서 체포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한 다음 구속절차를 기술하고, 이후 재판단계에서의 구속 규정을 두되 수사의 구속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 강제체결, DNA 검사 등 기타 신체침해를 수반하는 강제수사는 대물적 방법이긴 하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는 대인적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압수와 수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두 개념을 수사절차 순서에 따라 수색과 압수로 분리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시켜야 함

〈표 1〉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개편안

현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편안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 및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1편 총칙	제1장 목적, 이념 제2장 효력범위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제4장 당사자의 권리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제2편 제1심	제2편 수사 (신설)	수사의 기본원칙 사건의 수리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 구속 체포·구속의 구제 기타 신체침해 수색 압수 검증
		제3편 공소	

현행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편안	
		제4편 공판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제9장 소환 및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 총칙에서 이동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5편 상소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제5편 재판의 집행		제6편 특별 소송 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의 개편방향 제시
 - 국내에 형사소송법 편장체계와 관련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고 개편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수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시
 -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절차에 대한 인식과 규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수사 관련 개정방안 마련에 기여함.

□ 주요 키워드

※ 형사소송법, 편장체계, 수사절차, 피의자 등 당사자, 형사절차.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Ⅳ)

-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사회학 박사, jisun227@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라광현 부연구위원(범죄학 박사, khra@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8년 현재 체류외국인은 약 237만 명으로 인구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이 부상하고 있어 향후 체류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한편, 국내 체류외국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외국인 밀집지역은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이들의 정주화 현상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가시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은 이주민에게 정보교환의 장 및 정착서비스 제공, 각 민족별 문화적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전체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 제공,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순기능을 갖지만,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이주민의 생활환경 축소, 주류사회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정주 국가에서 적응과정에 방해요소로 작용, 저소득층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주거만족도 저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형성, 슬럼화 진행에 따른 동네 이미지 추락 등으로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갈등 형성 등의 역기능적 측면도 갖고 있음
-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단기 체류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이에 따라 범죄, 무질서, 위생,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평등과 빈곤의 재생산, 인종갈등 등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역기능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욱 주목받음. 이에 따라 유럽 정부는 외국인(소수 민족) 밀집지역을 가장 중요한 다문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
- 2006년 이후 급속한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온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 속에 외국인 밀집지역은 더 고도화되고 확산되었으며,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과 같은 영화의 영향으로 현재 일반 사람들에게 외국인 밀집지역 특히,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역은 우범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각인됨.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심리적·문화적으로 계토화 시키고 있고,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사회경제적 계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다문화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연구목적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및 추세,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수준,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피해실태 및 특성,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주민의 체감안전도 수준 및 범죄예방 활동,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내·외국인 주민의 안전정책 수요, 주요 이민국가의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정책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안전 관련 현황과 이슈들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의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이주민 증가 및 집중거주와 범죄발생, 범죄피해, 범죄의 두려움 간의 관계, 국내외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과 안전정책의 현황 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검토

○ 공식 통계자료 분석

-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관련 공식통계 및 법무부 「외국인·출입국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등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조사모집단 : 외국인 밀집지역(‘외국인 주민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외국인 주민 수가 5천 명 이상인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 표본추출 및 표본배분 : 외국인 주민 비율과 주민수를 고려하여 20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표집 지역에서 내국인 주민 40명, 외국인 주민 60명 조사함. 내국인 주민의 경우,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할당추출을 적용하였고, 각 집계구에서 평균 13~14 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 60개 집계구를 추출. 외국인 주민의 경우 읍면동별 체류자격 분포 및 시군구 국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하였고, 눈덩이 표집방법 활용

○ 포커스 그룹 면접 및 개별 면접

-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맥락적 이해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자율방범대원 등을 대상으로 밀집지역 안전 관련 이슈,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제안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FGI와 개별 면접조사 병행
- 경찰청 외사안전구역을 관할하는 19개 경찰서의 외사계장, 생활안전국 소속의 CPTED 사업 담당자 및 CPO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친 자문회의 진행

○ 현장조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공간환경을 중심으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

사를 위해 선정된 20개의 외국인 밀집지역 중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5대 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한 5개의 지역을 추출하였고, 환경범죄학,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체크리스트 활용

□ 주요 연구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 시·군·구 단위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시흥시, 김포시, 안산 단원구, 구로구는 거주지 분리지수가 0.5를 상회함. 읍·면·동 단위에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를 넘거나 외국인 주민 수가 5,000명을 넘는 지역이 22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안산시 원곡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각각 77.7%와 50.4%로 내국인 주민 보다 외국인 주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았음
- 외국인 근로자(E-9)는 공단 배후지역, 유학생은 대학가 주변,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갖는 한국계 중국인은 서울, 경기 등과 같은 대도시의 저렴 주택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 15세 이상 외국인의 68%가 취업 중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71.5%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일자리와 본국보다 더 좋은 임금조건을 위해 타국으로 온 성취지향적이고 자발적인 이민자임을 알 수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국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므로 이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 주민 미성년 자녀의 비율(11.4%)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이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수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존재함. 선행연구는 더욱 나은 삶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이민을 선택했던 이민 1세대보다는 이민 2세대가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방식으로 긴장을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범죄예방 대책의 하나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영구 정주가 예상되는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준 영구 정주가 예상되는 재외동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10년 가까이 장기체류가 가능해져,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민의 정주화 경향이 나타남. 한국계 중국인 재외동포의 정주화는 삶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이전에 개인 이주로부터 발생했던 다양한 범죄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임
- 2017년 현재 876,665명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세는 중국동포의 증가가 견인하고 있고, 이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포용정책의 결과임. 그러나 한국계 중국인은 여전히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에서는 사할린 동포와 비교해볼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또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에 사는 내국인, 특히, 젊은 여성은 각종 범죄 보도와 대중영화의 영향으로 한국계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함. 스스로 동포의 나라라고 느끼는 한국에서 동포로부터의 차별, 배제, 무시로 인해 재외동포의 불만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외국인 밀집지역의 상당수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지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은 동족 간의 유대감을 넘어선 혈연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쇄이주 경향을 보이며, 다국적이 혼합된 외국인 밀집지역과는 달리 하나의 민족이 집중된 특성을 가짐. 이는 한국계 중국인의 이탈과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음. 그러나 내국인 주민은 한 지역에 동일 민족이 수적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자신의 음식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 지역에 있는 내국인을 마치 이방인으로 느끼게 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성 수준 평가

- 외국인 밀집지역은 공통적으로 전출과 전입이 잦고, 가족해체율과 1인가구 비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아 지역주민 간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집합효율성의 형성이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었고, 외국인 밀집지역 중 고밀집 대도시 저렴주택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사회구조적 조건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임
-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내·외국인 주민 간 사회적 관계는 소원했고, 비대칭적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외국인 주민은 ‘문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 ‘쓰레기 처리, 소음과 같은 기초질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고밀집 대도시 저렴 주택지에서 더 많이 발생함.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서 같은 국가 출신 친구, 동료, 친척 등과의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였고,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과 사회적 유대가 잘 형성된 사람이 한국인 이웃과도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주민이 국내에서 맺고 있는 자국민과의 사회적 유대가 이들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 주민 모두 외국인 비밀집지역의 주민에 비해 이웃 관계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내국인 주민의 집합효율성 인식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졌고, 한국계 중국인 집중거주도 부적인 영향을 미침. 외국인 밀집지역에 사는 내국인 주민의 집단위협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고, 지역의 외국인 주민의 80%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인 밀집지역과 도시에 있는 밀집지역에 사는 내국인 주민의 집단위협인식이 더 높았음. 외국인 주민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차별 경험을 갖고 있었음
-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의 기초질서위반율이 높은 편이었고,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인식수준이 비밀집지역에 비해 훨씬 더 높았음.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 기초질서위반율이 높고, 주민이 동네를 물리적·사회적으로 더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함. CPTED적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에 비해 방범 환경이 개선된 편이었으나, CPTED 사업 이후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많았음

○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실태

- 전체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검거지수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살인범죄의 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았음. 외사안전구역이 포함된 경찰관서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지수는 전국의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지수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외국인 주민 비율과 외국인 검거인원지수와 관계는 뒤집힌 U자 패턴을 보임
- 외국인 주민 수와 외국인 주민 비율은 5대 범죄발생율과 관계가 없었으나,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5대 범죄발생율은 감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5대 범죄발생율은 증가함. 또한, 성폭력 발생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함
- 자기보고조사 결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보다 범법행위를 한 비율이 더 높았고, 한국계 중국인 집중거주지가 다국적 혼합지역보다 외국인 주민의 범법행위 비율이 더 높았음. 가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주민의 48.8%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범죄피해실태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피해자율은 4.95%였고, 내국인 주민의 피해율이 외국인 주민보다 더 높음. 그러나 손괴 피해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 주민 피해율이 내국인 주민 피해율보다 높음. 한국계 중국인 집중거주지역의 피해율이 다국적 혼합지역보다 더 높음
- 재산범죄 신고율이 폭력범죄보다 더 높고, 내국인 주민의 신고율이 외국인 주민보다 더 높음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50.6%가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3.3%에 불과함. 구체적 범죄유형별로 동네에서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을 때 범죄위험 인식은 더 낮아져 6% 미만의 주민만이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함. 동네의 야간보행 안전도로 측정한 일반적 두려움에 대해서도 주민 100명 중 14명 정도가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은 2.57점이었고, 구체적인 범죄유형별로 두려움을 질문했을 때 범죄두려움 수준이 더 낮아져 7개 범죄 유형 중 평균이 2.2점을 넘는 경우가 없었음.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범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범죄위험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크지 않았음
- 내국인 주민은 외국인 주민에 비해 거주하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동네에서 밤늦게 혼자 골목길을 걷는 것에 대해 더 두려워함. 또한, 사기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내국인 주민의 범죄피해 가능성 점수가 외국인 주민보다 더 높았음. 그나 이는 외국인 주민과의 상대적 비교 결과일 뿐이고, 거주하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내국인 주민 비율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으며, 동네에서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7%를 넘는 항목이 없어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범죄위험에 대한 걱정, 우려, 불안감은 높지 않았음
-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일반적 두려움(동네에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전국 내국인 주민보다는 높았으나,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 두려움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두

려움이 더 낮았음, 내·외국인 주민 모두 자국민 보다는 외국인에 의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 함.

- 범죄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외국인 비율 증가와 집중에 관련된 지역특성 변수가 외국인 밀집지역 내국인 주민의 동네 안전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투입한 변수 중 내국인 주민의 동네 안전도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민의 기초질서위반율임

○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안전정책 현황과 평가

- 경찰, 정부 및 지자체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사회 수준까지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경찰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 및 외국인 관련 사안의 공동 주무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업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이주여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을 넘어서 외국인 일반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 주민은 경찰, 정부·지자체의 안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주민은 ‘불법체류자 단속 확대’, ‘고위험 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등과 같은 통제정책을 요구하고, 외국인 주민은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및 포용 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통합정책을 요구해 인식 차이가 컸음

□ 정책제언

○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지원 법률 제정을 통한 예산지원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외국인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 주민 전담 파출소 또는 출장소 설치,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특별 행정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 기구 및 행정인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사업과의 연계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거나 사회통합의 목표를 도시 정책에 투영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체적 주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지 재생사업에 외국인 밀집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비율 포함

○ 외국인 밀집지역의 사회통합능력 제고

- 지방자치단체는 내·외국인 주민이 상호협력 교류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예) 서울시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내국인 주민과 외

국인 주민이 같이 활동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경우 일정한 예산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 대상 상호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이때 이전에 다문화 교육대상이 아니었던 내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마련,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해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은 상호문화 조정자 혹은 이주민 출신 조정가가 참여하는 조정제도 운영

○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서 무질서 및 범죄예방 방안

- CPTED 사업 이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주체별 CPTED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범죄예방기본법(가칭) 등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 기본계획하에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실시
-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필수 이수 대상자를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F-4)로 확대해 기초질서교육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문화센터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실시하는 경찰의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 외국인 밀집지역 내 여가 및 휴식공간의 제공
- 이주배경 청소년,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방안 모색
- 외사담당 경찰인력 충원 확대 및 사업 예산 확충
-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보호지원제도 홍보 강화
- 외국인 범죄통계의 공개범위 및 관련 통계수집 항목 확대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별로 범죄 실태와 범죄취약성 요인의 차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안전정책 마련에 기여
-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위험성 평가를 위한 도구 제공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및 피해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갖는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 정서 완화

□ 주요 키워드

※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내국인의 범죄두려움, 이주민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연구책임자: 최민영 연구위원(법학 박사, minyoungchoi@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김재현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jkim@kic.re.kr)

허황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pistolhh@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그동안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령 연구는 법령의 단순번역에만 중점을 두어 수행되어 왔음. 물론, 형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에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은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확립되어 왔으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일부 협소한 쟁점만을 파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고와 관점의 확장을 도모하는 비교법 연구의 원래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았음
- 따라서 형사법령의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범주에서 형사법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큼.
- 또한, 최근 국경 없는 범죄나 다국적 기업·해외법인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범죄나 범죄피해, 또는 외국인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가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공조국의 형사법령과 관련절차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외국범죄자에 대한 수사 등이 쉽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형사법령을 비교 연구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함.
 - 이론적 관점 :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함.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함.
 - 실천적 관점 :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해외형사법령정보 시스템의 구축 :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우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칙,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전체 시스템 및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하고 있음.
- 2019년도에는 대상국가의 형법총론을 주요 쟁점별로 비교 연구하였음. 우선, 각 국가의 형법을 개관하고, 법원 및 적용범위를 짧게 소개한 후, 죄형법정주의 등의 기본원칙을 논하고, 각 국가의 범죄개념과 범죄성립요건을 비교분석하여 논의하였음. 각 세부 내용마다 주요 법조문, 학설과 주요논의, 관련 판례 등이 소개됨.
- 2019년도에 수행된 구체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연구진의 구성 : 우선, 대상 국가별로 해당 국가에서 연구경험이 있거나 관련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연구진을 섭외하여 전문성을 갖추었음.
 - 통일적인 큰 목차의 확정: 비교연구의 목차에 부합하게 우선, 국가별로 큰 목차는 통일시키고, 그 안에서 세부목차는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통일된 큰 목차는 1) 법원 및 적용범위, 2) 죄형법정주의, 3) 범죄개념 및 범죄체계론, 4)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 5)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 6) 형사책임 배제사유, 7) 법인의 형사책임으로 구분됨. 이 중, 형사책임배제사유는 영미와 대륙법계 목차가 각각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로 구분되어 서술되었음.
 - 상이한 세부목차의 공통점 : 세부목차는 국가별로 상이함. 그러나 국가별 전체목차를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에는 인과관계와 작위·부작위가,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에는 고의·과실 및 사실의 착오가, 정당화사유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등이, 면책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는 형사미성년자, 정신장애, 명정,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등이 공통된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음.
 - 쟁점별 유사사안 판례 소개 : 비교법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현실문제 해결이라는 기능적 법 비교에 있음. 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총론 내 주요쟁점 10개 - 소급효, 형법의 적용범위, 법인의 형사책임, 작위 및 부작위, 인과관계, 위법성조각사유 상당성 판별기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정신장애, 명정, 고의 및 과실 - 를 선별하여 최근 10개 판례를 연구진에게 제시하고, 각 대상국가에서도 유사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표판례를 사실관계, 판결요지, 판결해설의 순으로 짧게 소개하고자 하였음. 연구 결과, 각 국가에서도 대략 우리와 유사한 문제 사안이 존재하였고, 국가별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유사판례를 소개하였음.
 - 유사성과 차이점 도출 : 각 국가의 논의를 기초로, 결론에서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음. 우선, 영미 국가에서는 1) 범죄체계와 입증책임, 2)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3) 항변사유로서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 분

석을 기술하였고, 다음으로 대륙법 세 국가에서는 1) 범죄체계, 2) 구성요건, 3) 위법성조각사유, 4) 책임조각사유를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을 기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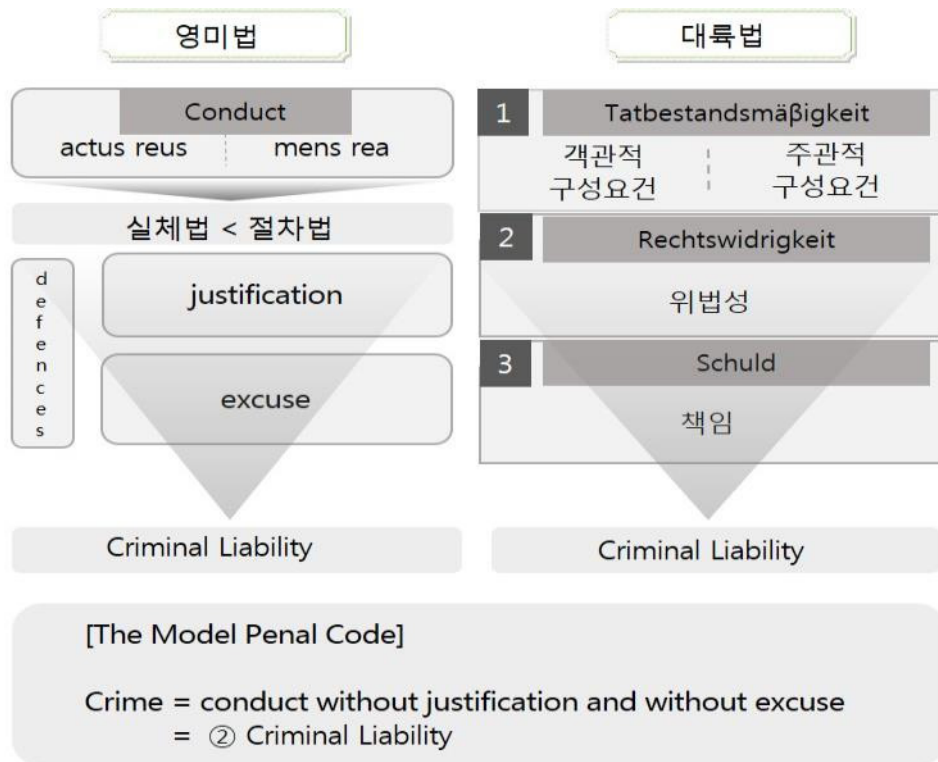
- 차후년도 연구의 전망 :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범죄개념과 범죄체계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 이후, 우리 입법과 사법,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착안점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 입법안과 판단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올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비교의 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여 기초 틀을 세우는 작업에 집중하였음. 그 결과, 각 국가의 유사성과 차이점 도출까지 비교분석을 할 수 있었음. 차후년도에는 총론의 나머지 내용으로, 미수와 공범을 추가하면서 올해 연구를 기반으로 좀 더 심층적인 비교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요 연구내용

- 서론: 비교형법 연구의 의의와 목적
- 대상국가의 형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개관
- 대상국가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논의
- 대상국가의 범죄론의 기초 논의: 범죄체계 및 범죄구성요소 및 형사책임구조
- 대상국가별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 서술
- 대상국가별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 서술
- 대상국가별 정당화사유 혹은 위법성조각사유 서술
- 대상국가별 면책사유 혹은 책임조각사유 서술
- 결론: 소결 및 유사성과 차이점 분석 및 추정

□ 정책제언

○ 형사책임의 구조



[그림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형사책임 구조

- 지금까지 살펴본 5개 국가의 형사책임 구조는 외연상 다른 구조를 취함. 영국과 미국은 우리처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3단계 범죄체계를 따르지 않고, 행위와 항변사유로 뚜렷이 양분됨. 프랑스도 역시 행위와 책임(객관적 책임조각사유와 주관적 책임조각사유)으로 양분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함. 이에 반해, 독일과 일본은 우리와 같이 3단계 범죄체계론을 따름.
-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차이가 실제 비교법적 분석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5개 국가의 형사책임 구조는 병존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측면을 말하는 actus reus와 행위의 주관적 측면을 말하는 mens rea로 구성되고, 항변사유는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로 구분됨. 프랑스 역시 범죄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성되고, 책임조각사유는 객관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화사유와 주관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비귀책성 사유로 구분됨. 이 때 행위의 객관적 요소는 독일과 일본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행위의 주관적 요소는 독일과 일본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정당화사유는 독일과 일본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면책사유와 비귀책성 사유는 독일과 일본의 책임조각사유와 견주어 비교가 가능하였음.
- 물론, 영국과 미국의 항변사유 중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처럼 뚜렷한 경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차이는 있었음. 이것은 영미법계의 형사책임이 대륙법계의 형사책임과 달리, 행위와 항변으로 이원화되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로 영미에서 항변사유는 실체법적 측면에서보다는 절차법적 측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세부적인 범죄성립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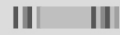
- 우선, 5개 국가의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즉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 국가 모두 세부내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요소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행위의 객관적 요소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인과관계 성립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행위의 주관적 요소에서는 고의와 과실, 착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다만, 고의와 과실의 개념 구분에 있어 영미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에는 없는 “무모함”이란 개념이 존재함. 그리고 행위의 주관적 요소가 없어도 성립되는 “엄격책임범죄”가 있음. 프랑스에서도 행위의 주관적 요소 없이 성립하는 위경죄상 과실이 있음. 하지만, 프랑스의 위경죄상 과실은 고의와 과실의 분류에서 고의, 과실과 대등하게 논의되는 개념인 반면, 영미의 엄격책임범죄는 고의와 과실의 분류에서가 아니라 독자적 쟁점으로 논의됨.
-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사유 혹은 정당화사유에 있어서 5개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의 사유가 있음. 각 정당화사유의 요건과 효과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세부요건과 효과는 차이를 보임.
- 마지막으로, 책임조각사유 혹은 면책사유에 있어서 5개 국가 모두 정신장애, 형사미성년,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등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정당화사유와 같이 각 면책사유의 세부요건과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지금까지 여러 국가의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이 이렇게 큰 틀과 체계 아래 비교되어 분석된 적은 없었음. 장기적으로는 본 연구가 비교형법 연구의 저변을 넓히리라 예상함.
- 내년 연구까지 이어서 수행하면, 문제가 되는 형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개정안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 예상함
- 관련 쟁점별로 여러 국가의 논의를 비교분석하여 논의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혁 및 사법판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함

□ 주요 키워드

※ 비교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성립요건, 형사책임



5세션

● ● 자료집

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_ 143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2.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_ 151
(박형민 연구위원)
3.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Ⅰ)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_ 155
(유진 부연구위원)
4.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_ 161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 «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구책임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 misuk@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서주연 부연구위원(법학 석사, jyseo@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재판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사법참여를 늦출 수 없다고 본 데서 출발함. 이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압도적 의견으로 2007년 6월 1일자로 입법을 통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시행되기에 이름.
- 국민참여재판 운용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일부 비판처럼 고비용·저효율의 제도인지, 법제도와 실무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의 재판제도로써 제대로 뿌리박고 있는지, 여전히 이질적인 제도로써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제도인지 등 제대로 된 인식조사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함.
- 2000년대 초반의 사법개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여겨온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하여 이대로 계속 두면서 제도의 명분을 유지할 것인지, 이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인식에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일반국민과 피고인 그리고 배심원과 법률전문가의 인식변화와 문제 지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선행 연구논문 및 실증연구자료 활용

- 2004년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기록한 회의자료, 공청회자료, 2018년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자료집 등을 본 연구수행에서 선

행연구로서 활용함.

- 실증연구자료로는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1) 국민참여재판 도입과정에서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2) 2008년의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토대로 한 연구, 3) 2011년의 시행 3년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중심의 연구는 아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공정성과 사법신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연구로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신의기 외, 2012),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2015) 등을 활용함.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결과로서 피고인 신청을 제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방안(한상훈 외, 2017), 절차관여자 시각에서 본 국민참여재판 연구(한상훈 외, 2012),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무죄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동희, 2012) 등을 활용함.
- 국민참여재판의 운영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로는 2019년 6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08년~2018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 및 2018년도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식통계를 분석함.

○ 실증연구: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개정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참관 및 재판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총 26건의 판사 대상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8개 지방법원으로부터 총 38건의 판사 대상 설문지가 회수되었음.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의 협조 하에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및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2건의 검사 대상 설문지가 취합되었음.
- 전국 각급 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인 및 5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선전담변호인 71명, 국선변호인 43명, 사선변호인 124명, 기타 법률구조공단 변호인 1명, 총 239명이 응답하였음.
- 위 국민참여재판 참관 시 판사 대상 설문조사와 더불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배심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개 지방법원 19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총 138건의 배심원 대상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통계 분석 시 총 122건이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
- 법무부 교정본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총 1,046건의 수용자 대상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11건), 경험자용과 비경험자용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경우(19건)를 제외하고 국민참여재판 경험자 52건 및 비경험자 964건, 총 1,016건이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음.
- 배심원 후보자 선정 대상이 되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용역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47명이 응답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함.
-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담당판사 3명, 검사 3명, 국선전담변호인 2명 및 사선변호인 2명, 그리고 배심원 1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연구방향과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데 참조자료로

활용함.

○ 실증연구: 판결문 분석

-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판결문 정보제공제도, 인터넷 상 법률 관련 사이트와 기사 검색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수집하여 제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사건 총 158건 및 이 중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된 사건 총 21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을 비교분석하여 각각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무엇인가를 알아봄.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개혁위원회(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논의의결을 거쳐 2007년 6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안(의안번호 제1910825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서 최종형태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개정에 이르지 못함.
-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위 정부안을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의 관할법원, 대상사건, 실시요건, 배제결정, 배심원 수, 법정구조, 배심원 평결의 효력, 배심원 평의 및 평결방식, 검사의 항소 제한 등 다양한 내용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제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장안(의안번호 제1814358호)을 통해 대상사건을 형사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결정할 수 있도록 배제결정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참여재판 운영현황 및 판결문 분석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08년~2018년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현황, 피고인의 신청주의 현황, 대상사건 관련 운용현황, 이유부기피와 무이유부기피 현황, 법원의 배제 현황, 피고인의 철회 현황, 공판준비기일 현황, 배심원 관련 현황, 공판진행 현황, 배심원 평의·평결 현황, 양형 및 항소 현황 등을 분석함.
-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 판결문 156건에 대해 죄명, 자백 여부, 배심원 평결 및 판결, 판결이유 등을 분석하여 특히 무죄평결 및 판결의 요인을 범죄의 성립요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인정 여부, 피해 정도, 증거의 충실 여부,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분류하여 살펴봄.
- 위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변경된 사건 중에 입수된 항소심 판결문 21건에 대해 전체 사건 개요를 정리한 후 제1심 무죄사건에서의 배심원 평결(다수결 또는 만장일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여부, 항소이유 분포 등을 쟁점으로 항소심 변경 사건 현황을 제시함.

- 위 국민참여재판 제1심 무죄사건과 유죄사건 134건에 대해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을 비교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배심원 평결의 만장일치 여부와 평결과 판결의 일치 여부, 평결과 판결의 일치/불일치 판례에서의 죄명 비교, 유죄사건에 있어 배심원 양형판단과 판사의 양형판단의 일치 여부를 분석함.

○ 조사분석: 집단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비교

-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한 신뢰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법률전문가): 형사재판과 법관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순서는 판사, 배심원, 검사, 변호사, 피고인, 일반국민 순임. 배심원이 재판 참여 전 일반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재판 참여 후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집단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과 문항 신뢰도

	일반국민	배심원	경험 피고인	비경험 피고인	판사	검사	변호사
평균 (표준편차)	2.28 (.82)	3.65 (.97)	2.51 (.83)	2.42 (.91)	4.32 (.66)	3.30 (.68)	2.98 (.86)
문항 신뢰도	.88	.92	.74	.87	.90	.86	.88

- 국민참여재판 인지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재판 참여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으며, 배심원의 경우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단위: 명, %)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적은 있으나 알지 못한다	대강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
일반국민	53(5.1)	449(43.1)	464(44.5)	76(7.3)	1042(100.0)
배심원	21(17.2)	93(76.2)		7(5.7)	122(100.0)
경험 피고인	4(7.7)	11(21.2)	18(34.6)	19(36.5)	52(100.0)
비경험 피고인	171(18.1)	217(23.0)	459(48.6)	98(10.4)	945(100.0)

무응답(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 19

- 배심원 평결에 대한 예측과 실제 평가(일반국민, 배심원): 1) 일반국민은 배심원간 의견일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배심원 경험과 비교한 결과 배심원간 의견 일치도가 약간 높은 것을 나타남. 2) 일반국민은 배심원들에 비해 판사의 의견이 배심원 평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 3)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 시 ‘자신들의 토론이 충분하다’, ‘의견을 밝혔다’고 응답함.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일반국민의 79.2%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배심원은 65.2%만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4)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주는 법률외적 요인들

로 일반국민은 배심원, 피고인에 비해 법률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더 높게 받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실제 배심원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여론이라고 응답함. 5) 증거의 유무죄 판단 영향요인에 대한 추측은 일반국민의 경우 배심원이 '특정인의 의견',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 '감정이나 선입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배심원은 그러한 요인들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 타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추천(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일반국민이나 배심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보다 더 많음.

〈표 3〉 국민참여재판 타인추천여부(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단위: 명, %)

구분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소계 (추천하고 싶지 않다)	약간 추천하고 싶다	꼭 추천하고 싶다	소계 (추천하고 싶다)	전체
일반국민	15 (1.4)	190 (18.2)	205 (19.6)	729 (70.0)	108 (10.4)	837 (80.4)	1042 (100.0)
배심원	2 (1.6)	14 (11.5)	16 (13.1)	52 (42.6)	54 (44.3)	106 (86.9)	122 (100.0)
경험 피고인	28 (54.9)			23 (45.1)			51 (100.0)
비경험 피고인	514 (54.6)			427 (45.4)			941 (100.0)

무응답: 참여재판 경험 피고인 1, 참여재판 비경험 피고인 23

-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일반국민, 피고인): 일반국민의 경우 피고인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것 같아서', '판사보다 배심원들이 더 공정할 것 같아서', '무죄임을 밝히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등 세 가지 사유가 신청 사유로 가장 많았음.

〈표 4〉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일반국민, 피고인)

(단위: 명, %)

문항	일반국민	경험 피고인
배심원들로부터 재판받는 것이 무죄임을 밝히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	336(32.2)	16(30.2)
좀 더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134(12.9)	5(9.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230(22.1)	7(13.2)
변호인의 권유로	77(7.4)	2(3.8)
판사보다 배심원들이 더 공정할 것 같아서	493(47.3)	16(30.2)
같은 재소자들의 권유로	30(2.9)	2(3.8)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줄 것 같아서	564(54.1)	17(32.0)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93(8.9)	5(9.4)
기타	1(0.7)	-

○ 조사분석: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변화(선행연구들과의 비교)

- 본 연구의 위 각 집단 조사분석 및 집단간 인식비교와 더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변화를 비교·분석함. 연구목적과 조사여건의 변화로 완전히 동일한 질문과 응답의 설문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표 5〉 국민참여재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조사대상

	최인섭 외 2007	박미숙 외 2009	탁희성 외 2011	KBS 2015	본 연구 2019
일반인	0 (1500명)	X	0 (1300명)	0 (1541명)	0 (1042명)
배심원	X	X	0 (148명)	X	0 (122명)
판사	0 (39명)	0 (7명)	0 (48명)		0 (64명)
검사	0 (51명)	0 (40명)	0 (67명)		0 (52명)
변호사	0 (49명)	0 (7명)	0 (61명)		0 (241명)
법학교수	0 (57명)	X	X		X
피고인	X	X	0 (365명)		0 (1016명)

○ 종합정리: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 조사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에 대한 신뢰 구축, 피고인의 인권보장, 국민의 법의식 향상 등) 실현 가능성,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통한 사법신뢰도 향상,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사법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 증진, 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만족, 국선변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로는 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 감소, 법률전문가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지속 등이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제언

○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합치성 문제, 배심원의 전문성 여부나 자질 문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 등을 인식·검토하여 확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참여재판과 헌법적합성 우려와 과제: 위험 시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한편으로 2009년과 2014년 국민참여재판 근거규정을 도입하자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인 개헌 논

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 시비와 평가: 제도 시행 전에 우려했던 문제는 배심원의 공정성, 사건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 배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이었으나, 2012년 실증조사, 2018년 사법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조사 등 결과, 법관의 대다수가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고 판결과 평결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조서재판으로부터의 탈피, 배심원의 재판 경험 및 법률전문가의 재판 기술 향상,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증가, 국민의 정서와 상식 반영 등 그 의의가 비교적 달성되고 있음.

○ 입법방안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최종형태의 입법 모델을 위한 제도의 기본방향은 정착화를 지나 내실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는 국민의 수를 늘려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제도적 성과를 공유하고, 아래와 같은 입법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무운용방안을 발전시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함.
-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도입: 애초 대상사건의 범위 제한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이유에서 출발하였던 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의 실시건수 확보가 필요한 점, 대부분의 국가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한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실시규정을 두어 제도의 형해화를 막을 필요가 있음.
- 배제사유의 임의적 운용과 낮은 실시율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피고인 신청주의와 법원의 배제율은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형사합의부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되 중대한 특정사건을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하고 배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항소의 제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지나친 항소는 제도의 활성화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적정 배심원 수 확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유형, 예컨대 고의 살인 등의 죄를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할 경우에는 중대사건에 대한 국민의 일반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 내에서 5인제는 폐지하고 중대사건의 경우 9인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배심원 평의 및 평결의 방식: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높은 일치율, 배심원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의 소요비용 및 효율적 운영도모 측면에서 권고적 효력이 아닌 보다 확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바람직하며, 평결의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단순다수결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안 제시

- 국민참여재판이 사법개혁의 핵심목표로서 “국민의 사법참여와 신뢰 그리고 공정한 형사재판제도 확립”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도평가
- 국민참여재판법률 및 실무운용, 법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 키워드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배심재판, 시민사법참여, 배심원 평결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연구책임자: 박형민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clamovox@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중요한 영역임
-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임
- 이 연구에서는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함.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 통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범죄의 시작요인, 지속요인, 중단요인, 재시작요인 등을 파악
- 이를 통해 경력 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고, 범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교도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 면접대상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를 모집.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중 총 전과 10범 또는 동종전과 7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경우 면접 실시.
- 연구목적의 면접에 동의한 총 1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 연구참여자 1인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짐

○ 문헌연구

-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함
-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범죄자의 범죄경력 등 각각의 이슈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범죄경력 연구 및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범죄경력 요인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
〈사례 1〉	- 고아라는 상황 - 범죄동료들과 공동생활	결혼과 출산	- 범죄동료들의 유혹 - 사업실패 - 범죄적 성공경험	범죄동료들과의 관계
〈사례 2〉	우연한 행운			- 취직이 어려움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3〉	경제 곤란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 이혼 - 사업 실패 - 유산 상속 실패 - 건강 악화	- 누적된 전과 - 취직이 어려움
〈사례 4〉	- 친구의 권유 - 부모의 방치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경제 곤란	- 범죄 동료들과 공동생활 - 가정 불화
〈사례 5〉	가난	노동 참여	- 지인과의 교제 - 유흥비 마련	- 교도소에서 범죄 학습 - 사회 부적응
〈사례 6〉	- 친구 부탁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건강 악화 - 실업			- 지역사회 부적응 - 음주
〈사례 7〉	가난	- 노점 운영 - 결혼 - 충분한 수입	이혼	- 장기간 구금 - 취직이 어려움
〈사례 8〉	- 지인 부탁 - 범죄 동료의 권유	- 결혼 - 노동 참여	- 기소중지 사건 재개 - 노동 참여 - 범죄적 성공경험	- 범죄적 자아상 - 누적된 전과 - 범죄에 익숙해짐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9〉	친구의 부탁			가난
〈사례 10〉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시작 요인

(1) 경제 곤란

- 범죄의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
- 사례들 중에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

(2) 범죄적 친구

-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로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다수 존재
-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음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음

(3) 기타 요인

-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
- 큰 돈을 얻게 된 범죄를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지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존재

○ 중단 요인

(1) 결혼(출산)

-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 자녀의 ‘출산’
-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음

(2)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

-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통해 이룬 가족을 부양하기위한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도 중단의 주요한 요인
-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음

○ 재시작 요인

(1) 범죄적 성공경험

- 이 요인은 재시작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용
-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함
-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됨

(2) 범죄 동료들의 유혹

-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

(3) 경제 곤란

- 중요한 시작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곤란이 재시작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
- 사업실패,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상황을 절도나 사기라는 범죄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4) 이혼

-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 요인으로 작용
-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짐

(5) 지속 요인 : 범죄경력

- 범죄를 지속하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복된 범죄로 인해 쌓여진 범죄경력이며, 다수의 범죄경력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
- 다수의 범죄경력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범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함
- 다수의 범죄경력 중 일부는 범죄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지속을 통해 다시금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복
- 다수의 범죄경력은 범죄자가 범죄적 행위에 익숙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함
- 다수의 범죄경력은 결국 범죄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경제적 문제상황을 범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함

□ 정책제언

○ 출소자들의 직업알선

- 경력범죄자들이 범죄를 시작하거나, 재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곤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
- 합법적인 방법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교정기관의 가족관계 유지 프로그램 적극 도입

- 경력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요인은 가족의 형성이나, 교도소 수감 전후로 가족관계가 깨어져 범죄를 중단할 사회적 유대가 사라짐
- 교도소 프로그램에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수감중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경력범죄자들의 재사회화에 기여

- 반복된 범죄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경력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 재범 방지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주요 키워드

※ 범죄경력, 고령범죄자, 범죄 중단, 범죄 지속, 범죄 재시작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Ⅰ)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연구책임자: 유진 부연구위원(과학기술학 박사, syjin5@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강석구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 law39@kic.re.kr)
박경규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pkgyu@kic.re.kr)
고재익 파견공무원(교정관, kji2002@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2000년 이후 진행된 과거사 정리는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 정권기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심을 비롯한 피해 구제를 진척시키는 성과를 낳았음
- 지금까지의 과거사 정리는 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한국전쟁기를 전후로 한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정권기의 고문·가혹행위를 비롯한 사법적 불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사회치안 영역에서 이루어진 보안처분류 제재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상대적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의 과거사 정리와 국가폭력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사회치안 영역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피해회복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폭력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사회치안 영역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실태를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작동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폭력의 발생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총 3년차로 계획된 본 연구의 1차 연도인 올해는 1960년대에 진행된 부랑인과 폭력배 등 일제단속,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추진된 국토개발 관련 노역동원을 중심으로 살펴봄

□ 연구방법

○ 국토건설사업 등을 위한 노역동원 관련 법령 검토

- 국토건설단설치법, 폭력행위자 등 단속에 관한 특별법, 갱생건설단 및 갱생건설소년단 규정 등 1960년대 국토건설사업을 위한 노역동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노역동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제에 대해 논의함

○ 문헌조사

- ①정부가 사후에 공식발간한 자료인 한국경찰사, 소년보호육십년사, 대한민국교정사, 교도작업 총람 등과 ②1960년대 정부가 공식발간한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 법무행정, 보건사회통계연보, 비행소년통계, 그리고 법무부 교정국이 발간한 정기간행물인 교정지 등, ③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부생산 문건을 통해 관련 정책의 배경 및 추진과정을 추적함. 그 외에 ④신문기사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정부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정책추진과정의 실태를 파악함

○ 구술자료 분석

- 국토건설단, 갱생건설단 동원대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구술면담을 진행하고 자활정착사업 참가자의 구술면담 자료를 분석함

□ 주요 연구내용

○ 1960년대 국토개발과 관련된 노역동원 개관

- 국토건설단 사업은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시작된 폭력배 일제단속을 통해 검거된 자들을 대상으로 노역동원이 이루어진 1961~1962년 국토건설단, 1962년 병역미필자 등을 동원한 국토건설단, 1968~1969년 폭력행위자등 집중단속에 의해 검거된 자들을 동원한 국토건설단으로 크게 3차례에 걸쳐 실시됨
- 갱생건설단·갱생건설소년단 사업은 교도소 수형자와 소년원생을 동원하여 1967~1970년에 걸쳐 실시됨
- 서산개척단으로 대표되는 자활정착사업은 고아·부랑인·한센인 등을 동원하여 1960년대에 걸쳐 23개 사업장에서 실시됨

○ 국토건설단 사업과 노역동원

- 1960년 민주당 정부는 공공토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유희노동력과 도시 실업자를 흡수하여 절량농가와 실업자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건설사업을 계획하였음. 1961년 3월부터 시행된 국토건설사업은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정권을 이양받은 군사정부에서 이어서 실시하였음. 그러나 자발적 동원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민주당 정부의 기획과 달리 군사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실시된 폭력배 등 일제단속으로 검거된 자들을 사업에 투입하는 방침을 세움
- 이에 따라 1961년 5월 24일부터 사회악 일소정책에 의해 단속된 폭력배 등을 사업장에 투입하였고, 이후 1962년까지 최소 3,137명 이상의 폭력배·치기배 등이 강원도 삼척탄광지대 도로확장공사 등에 투입됨

〈표 1〉 폭력사범 단속과 처리 현황(1961.5.16.~1962.5.30.)

(단위: 명)

단속인원	지검송치	이첩	즉심	국토건설 사업장 취역	훈방
18,993	5,076	278	5,568	3,137	4,934

- 이러한 국토건설사업 노역동원의 법적 근거는 1961년 12월 13일에야 폭력행위자등 단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마련되었음. 그러나 이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61~1962년에 강제취역된 대다수의 단원들은 동법에 따른 적법한 심사절차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음
- 1968~1969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토건설사업이 전개되었음. 정부는 1968년 ‘폭력행위자등 특별단속처리요강’을 마련하여 검거된 폭력배, 폭력우범자, 치기배(소매치기·날치기·들치기) 가운데 취업선서를 한 자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고 일정기간 국토건설사업에 취역시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제단속을 실시함. 1968년과 1969년에 5차례에 걸친 폭력행위자등 특별단속기간에 검거된 총인원수는 84,829명이었고, 이 가운데 국토건설단에 취역한 인원은 총 4,892명임

〈표 2〉 1968년 폭력행위자 등 사업지구별 취역 통계(1968.6.20.~1968.10.25.)

(단위: 명)

구분	취역자	해제인원				사고자
		광복절	개천절	작업완료	계	계
계	2,392	234	700	1,290	2,224	168
제주취역장	503	37	141	254	432	71
소양강취역장	1,000	106	301	557	964	36
광주취역장	325	43	92	172	307	18
나주취역장	564	48	166	307	521	43

〈표 3〉 1969년 폭력행위자 등 사업지구별 취역 통계(1969.4.16.~1969.10.2.)

(단위: 명)

구분	취역자	해제인원			사고자
		광복절	작업완료	계	
계	2,500	717	1,604	2,321	179
한라산지구	300	-	292	292	8
지리산지구	400	133	227	360	40
소양강·홍천·인제지구	1,000	324	597	921	79
태백산지구	800	260	488	748	52

- 이 당시 폭력행위자 등 특별단속 기간에 각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책임단속량이 할당되어 무리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국토건설사업 취역을 강요하는 등의 물의를 빚었고, 나아가 이러한 단속과 취역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강제취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과 보안처분을 도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뒤늦게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위험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법률 제·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갱생건설단·갱생건설소년단 사업과 노역동원

- 교도소 수형자와 소년원생을 국토건설사업에 동원한 갱생건설단·갱생건설소년단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개시되고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된 대국토건설계획이 수립된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창설됨
- 이에 따라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총 연인원 410,204명의 전국 교도소 수형자들이 동원되어 경부고속도로, 수인고속도로 등 도로건설과 교도소 신축이전 공사, 간척사업과 공장부지 정지작업 등에 투입되었음. 갱생건설소년단의 경우 총 연인원 89,389명의 소년원생이 서울시내 도로포장공사와 남산터널공사, 청계천 복개공사, 춘천지역 관광도로 공사와 화전민 정착지 개간공사를 비롯하여 대구, 광주, 충주 지역의 자갈채취 작업, 사방공사, 농토정지, 도로공사 등에 투입됨
- 갱생건설단과 갱생건설소년단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규모와 동원인원이 점차 축소되면서 1970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교도소 수형자들을 동원한 갱생건설단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교도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갱생건설소년단 사업은 당시 소년원법에 규정된 직업보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도급작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1985년 10월 15일 갱생건설단 및 갱생건설소년단 규정의 폐지이유가 되기도 하였음

○ 자활정착사업과 노역동원

- 자활정착사업은 5·16군사정부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음. 정부는 부랑인, 고아, 한센병 완치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농촌으로 이동시켜 농지 개간과 간척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자활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음
- 1960년대에 운영된 23개의 자활정착사업장은 강원, 경북, 전남 등 개간 가능한 임야, 황무지, 간척지가 많은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1960년대에 걸쳐 최소 13,366명이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편입대상은 걸인, 부랑청소년과 부랑인, 고아, 념마주이가 가장 많았으며, 한센인, 갱생원 수용자, 수재민도 포함되어 있었음

〈표 4〉 1960년대 전국 자활정착사업 지역 및 인원 현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사업장(개)	1	2	2	3	1	4	3	1	5	1	23
인원(명)	1,206	154	4,150 이상	1,970	726	1,313	400	미확인	3,297	150	13,366 이상

〈표 5〉 1960년대 전국 자활정착사업 동원 대상

대상	걸인, 부랑청소년, 부랑인, 고아, 념마주이	무의무탁자	서울시립 갱생원 원생	한센인	수재민	미기재	계
사업장(개)	11	2	1	7	1	1	23

- 자활정착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관할하였으며 대상자 동원과 사업장 현지 운영은 반관반민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대상자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활용한 단속과 강제동원이 이루어짐.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 단체의 원조물자 횡령, 착복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장은 위계적인 병영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철저한 감시에 의한 인신구속 상태에서 단원들을 통제하였음. 또한 농지조성을 목표로 한 자활정착사업장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졌으며, 개간, 간척사업의 과정에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익사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고 식량사정 또한 좋지 않아 영양상태가 부실하였음. 자활정착사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원조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후 사업에 동원된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역시 문제가 되었음.

○ 국토개발 관련 노역동원 과거사 정리의 방향

- 1961년 5·16 직후에 발생한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공식사과를 권고하였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은 신청자의 사례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1968~1969년도에 실시된 국토건설사업과 관련된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자활정착사업 가운데 서산개척단 참가자들은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음. 향후 과거사정리법 개정 등 포괄적 과거사정리가 재개되어 국토건설사업·자활정착사업 등 강제노역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사회치안 영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수집·정리된 자료는 해당 시기 국토개발을 위한 노역동원 실태를 밝히고 부랑인·형사피의자/단순우범자 등에 대한 노역동원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의 발생구조와 배경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과거사 정리 작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토건설사업과 자활정착사업의 전국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과 쟁점을 구체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주요 키워드

※ 과거사 정리, 국가폭력, 노역동원, 국토건설사업, 자활정착사업

»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

연구책임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행정학 박사, krpark@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윤정숙 연구위원(심리학 박사, yoonjsk@kic.re.kr)
안성훈 연구위원(공법학 박사, an2mail@kic.re.kr)
박준희 전문연구원(행정학 석사, elin31@kic.re.kr)
이형근 파견공무원(경정, hgr22@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 본 법안은 통과 후 6개월의 준비기간 후, 3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의 2원화된 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그 시범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그 기획 의도가 있었음. 그러나 법안 통과가 불확실함에 따라, 경찰제도 사전평가로서의 의의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함

○ 연구의 목적

- 자치경찰제 도입·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
-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을 충족하면서도 그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경찰제도의 안착

□ 연구방법

-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및 국내 문헌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개관
- OECD국가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자치수준과 경찰제도 분석 후,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
- 자치경찰제 성과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그리고 평가지표 분석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서울, 세종,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현장조사
-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쟁점별 입법평가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중기연구로, 연구진 구성에 있어 법학 등 규범적 연구자 외에 경찰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등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진을 강화함

□ 주요 연구내용

○ 경찰활동 모델

- Stead(1977)의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 경찰체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2원화된 '통합적 체제(integrated system)'임을
- Bayley(1985)의 연구에 따르면 현 우리 경찰은 집권적-단일적 체제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분권적-조정된 복수적 체제로 나아가려는 양상임
- Ponsaers(2001)의 모델에 의하면 현재 우리 경찰의 모습은 법적 경찰활동 모델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델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 Mawby(2003)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과거 중동부유럽 모델에서 시작하여 유럽대륙 모델로서의 성격을 거쳐 향후 동아시아 모델로 변화하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자치경찰 국내연구 동향

- 국내 자치경찰 관련 최근 10년간의 선행연구분석은 과거 많은 연구가 규범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최근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논의가 세분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이전에 비해 자치경찰 관련 많은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확연히 두드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여 접근하거나 실증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가능성이 높음

○ OECD 내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들의 분석 지표상 특징

-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표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와 경제규모 등의 국가규모 측면에서 1인당 GDP 수준은 자치경찰제 시행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및 GDP(각 로그지수화한 값)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더 높게 나타났음. 광역지역정부의 수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지방정부의 수에 있어서는 수가 많다고 해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볼 수 없음
- 분권수준에 있어서는 일반정부 수입 대비 지방정부 수입의 비중, 즉 세입분권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 해당하였고, 지방세 비중 및 재정자주도 역시 높았음. 다만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지출 측면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이 일반정부 및 GDP 기준 모두에서 높았으며, 과세자주권 및 종합적 분권지수(RAI)도 뚜렷이 높게 나타났음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경우 치안예산의 비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당 경찰비율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남. 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국가경찰과 함께 주 또는 지방단위에서 자치경찰을 함께 운영하는 측면도 있음
- 다만 자치경찰제 실시여부는 경찰신뢰도면에서는 양자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율 및 수감율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

서 오히려 범죄율이나 수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자치경찰제 사례분석

- 프랑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경찰도 마찬가지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자치경찰은 프랑스 혁명기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했으나, 이후 역사적 과정에서 점차 힘을 잃었다가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발전의 양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 최근 자치경찰서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자치경찰관에게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불심검문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헌법위반으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영국 : 1960년 이후 지역경찰의 비효율,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영국경찰의 위기의 시대가 시작되자 경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경찰법(Police Act 1964)」, 「1994년 경찰 및 치안법원법(Police and Magistrates' Courts Act 1994)」, 「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2002)」등을 통해 지역경찰을 관료화 시키고 지역경찰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 최근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통해 지역경찰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선출직인 지역치안위원장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지역치안평의회를 통하여 지역치안 위원장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음
- 일본 : 2차 대전 후 1947년 구경찰법의 제정으로 시정촌(인구 5,000명 이상)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다가 신경찰법 제정에 따라 1954년 현재와 같은 도도부현 경찰체제 시행. 최근 일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경찰직원의 비위나 부패범죄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 활동의 실질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의 광역화와 국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범위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 자치경찰 성과평가 모형

- 국가경찰 지표 중에서 자치경찰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경찰 지표 중에서 몇몇 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자치경찰 전반적인 업무 및 자치경찰제의 목적 관련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자치경찰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경찰의 목적, 자치경찰의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목적과 사무에서 개선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방안
- 객관적 계량 지표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여 평가가 가능하지만, 주관적 사항인 주민의 인식 부문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는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해당하는 지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

- 시범실시가 확정된 서울, 세종, 제주 등 3개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0일부

터 약 한 달간 1:1 대면조사로 이루어짐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4%이며, 24%가 자기 지역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찬반에서는 4점 만점 3.15, 전국 도입여부에서는 3.13으로 찬성이 많음. 주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전반적으로 4점 만점 2.5-3.0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범인 검거 여부, 경찰과 주민간의 소통, 업무 처리의 신속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3.09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 치안과 관련하여 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 3가지로는 자치경찰의 전문성과 신속성 및 확실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 일반 현황 : 2016.7.28에 자치경찰단의 조직을 개편(경찰정책관 신설), 2019. 7월 기준 현원 151명. '1관 3과 1지역대 1센터' 구축.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분류는 법률, 업무협약, 지역특화 등 3개 사무로 분류
- 자치경찰 인력 현황 : 국가경찰 중 파견 인력 총 260명(제주청 13, 동부서 83, 서부서 83, 서귀포서 81)
- 자치경찰 활동 실적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증가(2017년 대비, 57.8%), 기초질서 위반 소폭감소. 행정법에 대한 단속실적 감소세, 자치경찰의 기능이 본질적인 경찰업무로 전환되고 있음 <표 1> 자치경찰 사안별 단속현황

〈표 1〉 자치경찰 사안별 단속현황

구 분	총 계	교통법규위반	기초질서위반	행정법	형사범
2018	8,269	5,340	1,598	495	836
2017	5,670	3,496	1,458	620	96
2016	5,402	2,040	2,325	965	72

-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활동의 경우 2016년 이후 꾸준히 큰 폭의 증가세, 무사증의 경우 2018년에 전년 대비 2.7배가 증가, 불법체류는 2017년에 증가 후 2018년 소폭 감소

〈표 2〉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활동 현황

구분 연도	검 문(명)			검 거 (건)			
	계	중 국	기 타	계	무사증	불법체류	기 타
2018	634,449	168,672	465,777	183	96	76	11
2017	620,260	186,412	433,848	124	35	81	8
2016	1,313,469	870,834	442,635	92	23	58	11

- 112신고처리 현황: 54종의 세부항목 중 총 12종의 기초질서 및 안전관련 업무 담당. 국가경찰 86%, 자치경찰이 14% 담당, ‘code 0’~‘code 3’까지 국가경찰이 91.7% 수행, 자치경찰은 8.3% 수행. 112신고의 경우, 주로 주취자 처리, 교통불편, 분실물 처리 등 비중이 높음

〈표 3〉 112신고 처리 현황 비교(19. 1. 31 ~ 7. 31)

구 분	총 계	출 동 신 고					비출동
		소계	code0	code1	code2	code3	code4
국 가	65,212	51,361	317	13,166	35,762	2,116	13,851
	86.0%	91.7%	97.5%	96.4%	90.3%	87.7%	69.8%
자 치	10,621	4,633	8	490	3,838	297	5,988
	14.0%	8.3%	2.5%	3.6%	9.7%	12.3%	30.2%

- 지역경비(혼잡경비)는 주로 교통(자치경찰)에서 처리, 집회시위는 국가경찰에서 분담, 대규모 집회 시(신공항 건설 반대 등, 지역 민감 현안 이슈)에는 자치경찰 동원. 방어 1선 국가경찰 경비,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요구, 실제로는 갈등 요인 내재
- 경찰 업무 중 애매한 영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책임소재 문제 발생. 자치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에게 미루는 성향. 자치경찰의 경우 경직법 제11조의2 조항(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아 소극적 자세

□ 정책제언

○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법률의 개정과 시범실시

- 본 연구에서 서울, 세종, 제주에 국한하여 방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 찬성률은 55.2%(반대 27.5%, 모름 17.3%)로 다른 사법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최대 찬성 87.0에서 최소 62.0% 수준). 특히 본 연구원이 공수처 연구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전국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찬성률이 47.5% 정도만 나오고 있음(반대 35.55%, 모름 17.0%)
- 현재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나 지지도 모두 공수처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시간을 두고 시민의 이해를 충분

히 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철저하게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를 사법개혁의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정책적 결단으로 간주한다면, 우선 그 시범실시를 빠른 시간 내 단행하여, 그 공과를 3년이라는 시범실시 기간 동안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막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정부시절 이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많은 논의가 경험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추상적 탁상공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까지 나타난 시행상 및 법률안의 문제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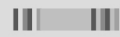
- 연구진이 서울, 경기, 세종 외에 2회에 걸쳐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체제는 희망과 숙제를 모두 던지고 있음
- 최소한 제주자치경찰에서만 국한해 보더라도 첫째 지역경찰의 경우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초동 조치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가경찰의 교통 DB를 공유하여 수배차량 여부 등을 실시간 자치경찰에 제공해야 함. 112신고 코드의 종류에 따라 이원화된 체제로 출동조치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 향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연구 초반 각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정교화 할 계획임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과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안정된 경찰제도 운용
- 경찰제도 운영에 있어 분권과 통합의 조화 모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일련의 형사사법개혁과의 연계성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발전 기여

□ 주요 키워드

※ 자치경찰, 국가경찰, 지방자치, 경찰행정, 형사사법개혁



6세션

● ● 자료집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_ 167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2.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_ 173
(김대근 연구위원)
3.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_ 179
(김한균 연구위원)
4.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_ 183
(박형민 연구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행정학 박사, krpark@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김영중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kyj2019@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비리)를 조사하는 기관(이하 ‘공수처’) 설치 논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990년 초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 1996년 1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 설치 주장, 같은 해 12월 류재건 의원 등 80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최초로 제출함. 정부차원에서는 1999년에 공수처 신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참여연대에서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소권,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및 부패 청산을 주요 수단으로 공수처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안 등을 종합하여 정부안을 발표함.
- 2019년 4월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그 외에도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만 10개에 이룸.
- 이렇듯 최근까지 약 25년 동안 20여개의 법안이 마련되어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공수처 설치의 현재까지 진행 중인 큰 사회적 이슈중 하나임, 공수처 설립에 대한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이 반대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 목적

- 현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검찰개혁의 핵심 국정과제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
- 수사권조정의 경우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간 시각차가 상당부분 좁혀졌으나, 공수처 문제의 경우 정당간 시각차가 아직도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공수처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제도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에 있어 관련 법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긴요함.
- 또한,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제도의 안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와 국회, 정부, 시민 단체, 변협 등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쟁점별로 분석함.

○ 해외 사례연구

- 기존 연구는 홍콩이나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설치된 기구에서 설립의 단초를 찾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기구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하지만 해외의 보다 많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 외에 OECD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 기관 설치여부와 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함.

○ 학제적 연구

- 기존에는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쟁점별 분석과 함께 행정학적 관점 특히 조직이론의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과 설립방향에 대해 분석함.

○ 설문조사

- 국민들이 공수처 설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진행함.

□ 주요 연구내용

○ 특별검사·특별감찰관의 문제점과 공수처 설립 필요성

- 미국에서도 예산과 수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설 기구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성, 일반 사건에 비해 수사가 과도하고 권한의 범위가 광범위해 질 수 있다는 비판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 제도는 조사권만 가진 특별기구로 상설기구라 하여도 부패예방과 부패범죄의 수사에 한계가 있음.

○ 공수처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

- 공수처에 대한 찬성은 62.0%, 반대는 29.3%, 모름은 8.6%(자치경찰제 도입 찬성률은 47.5%, 모름은 17%).
- 남녀 성별로 보면, 찬성율에 차이가 없음. 반대의견은 남성 33.7%, 여성 25.0%. 모름의 비율은 남성 4.2%, 여성 12.9%.
- 지역별 찬성률 : 광주/전라/제주 73.9%, 대구/경북 53.5%.

- 연령별 찬성률 : 30-39세 77.6%, 19-20세와 40-49세 모두 70% 상회함.
- 직업별 찬성률 : 학생층 81.4%, 농/임/어업층 48%.
-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는 계층이 공수처 찬성률이 높게(89.7%) 나타남. 지지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경우 89.2%, 우리 공화당인 경우 12.5%의 찬성률을 보임.
- 경찰에 대한 신뢰율은 공수처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검찰에 대한 신뢰율은 공수처 지지에 유의미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기관에 대한 신뢰율 : 경찰 42%, 검찰 36.3%, 법원 39.6%.

○ 해외 사례

-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진 반부패 기관 운영 :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헝가리, 네덜란드 등
- 기소권만을 가진 반부패 기관 운영 : 오스트리아
- 예방 및 교육기능을 포함한 반부패 기관 운영 : 폴란드, 호주
-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경우 :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경우 : 노르웨이, 아일랜드, 체코 공화국, 벨기에
-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경우 : 스페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 총리 산하에 설치된 경우 : 폴란드, 호주

○ 조직이론 측면에서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

- 공수처 설치하는 조직설계 중 분화의 원리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및 기소 업무를 국민의 뜻대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조직개편 사례임.
-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검찰이 보여준 권한 남용과 내부 비리 등은 도덕적 해이로 설명 가능함. 이는 정보비대칭과 이해관계에 불일치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이의 해결이 필요함.
- 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별 분절적 대응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함. 공수처 설치만으로 권력형 비리의 근절이 일거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같은 반부패 특별기관의 도입은 새로운 행위자를 등장시켜 기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하는 개혁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음.
- 조직개편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국민은 이 새로운 기관에 대해 이후 개혁의 촉진자 또는 토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임.
- 다만, 조직개편은 정치적 환경, 리더십 등에 따라 같은 개편안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정 조직개편안이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반부패 정책의 효과적 수행과 검찰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의 합리적 조직설계와 운용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수단으로서 공수처

- 당초 공수처에 부여된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의 두 목표는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공수처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일차적 의미를 놓치지 않아야 함.

- 공수처의 대상이 권력기관이라는 점이 공수처에 '강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함. 공수처 제도는 단지 부패척결 영역에서 작동하는 형사정책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권력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의 공공성과 도덕성 타락을 감시하며 수호하는 기능도 가짐.
- 권력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를 국민과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 공수처 법안 중 기소·불기소 심사제도를 포함하는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이 단순히 검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련됨을 표현함. 이러한 장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타락한 권력을 소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수처라는 표현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는 상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그 소속 검사들이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작은 검찰청이 되기 위하여 공수처 검사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여야 함.
- 대만은 2000년대 후반 대형 법조비리사건을 계기로 염정서 설치 및 사법개혁 요구가 높아짐. 2011년 출범 후 염정서가 부패 사건의 적발·기소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염정서의 약한 독립성, 조사국의 비협조, 파견검사제도의 문제점, 조직내 일체감의 결여, 검사의 지배로 인한 직원의 소외감 등 문제점도 발생함. 공수처에 대한 검찰척 태도, 공수처의 기소대상범죄의 제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선의의 경쟁과 원활한 협력을 촉진하는 틀을 만들어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이 쌓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관련 법률안 비교·분석

- 비교대상은 백혜련 의원, 권은희 의원, 참여연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안임
- 공수처의 소속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대동소이함. 공수처가 어느 행정부서에 속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권력분립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능의 청렴과 공정성을 위하여 광의의 행정부서로서 공수처를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임. 공수처에 대하여는 대통령, 국회, 법원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고, 이후에도 예산, 징계, 탄핵,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등의 방법으로 공수처의 직무행사가 오남용될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장되어 있음.
-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이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되는 검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임.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퇴임한 후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할 것인지, 어느 기간 동안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점에서 법안별로 차이가 있음.
-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위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 안이 가장 좁은 범위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가장 넓은 수사범위를 허용하고 있음.
-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각 법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그 중 백혜련 의원안은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책제언

○ 공수처 설립방향

-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경쟁과 상호통제 유도 필요. 예를 들어 공수처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
-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두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식은 최선의 대리인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인선작업에 대통령과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공수처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필요. 예를 들어 기소시민위원회, 기소법정주의, 재정신청권 확대 도입 등.
- 공수처장 임명시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 보완 필요. 다만, 거부권 남용에 대한 제한책이 요구됨.
- 공수처장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정년도 70세로 할 것을 제안함.
-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기관의 예산편성과 회계에 있어 독립성 명시. 예컨대 국가재정법상 중앙기관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공수처의 주요 설립목적이 부패방지에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 범죄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뇌물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과도한 수사권 인정, 대규모 조직 신설 문제 등으로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태로 서로간 견제 가능.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현직자로 제한할 경우 수사 중 전격 사임과 수리의 경우 수사권에 허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임 후 2-3년 정도까지는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함.
- 공수처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으므로 공수처에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기능적 권력분립은 공수처 내부에도 실현되어야 함. 공수처 내부 부서는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고 수사보는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과 그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관설립 내실 강화
-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 제공
-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연구 종합화를 통한 논의의 응집

☐ 주요 키워드

※ 공수처, 검찰개혁, 기소독점주의, 반부패, 부패방지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연구책임자: 김대근 연구위원
(법학 박사, cogito75@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배경

- 범죄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신체적 불면, 감정혼란, 업무 수행능력 저하, 분노, 우울 등의 증상을 수반하며, 이는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공동체의 고통.
- 진단 자체의 어려움, 엄격성의 한계 등이 문제되며, 진단 시점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PTSD는 신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인간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하게 되므로 피해를 야기한 범죄인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형사정책적 접근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PTSD를 비롯하여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임상적 방법을 통해 그 증상을 실증화하는 것이 필요.
- 다른 나라의 법과 실무를 참조하여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및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 상해’로 인한 가해자의 처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

□ 연구방법

○ 우리 법제와 실무에서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관한 개념과 지원 방식을 분석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정신적 피해’와 ‘구조 대상으로서의 PTSD’에 대해서 분석.
- 심리학, 정신의학, 공공보건적 관점의 PTSD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 법제와의 간극이 있음을 분석.
- 우리 법제에서 정신적 피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법제도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사절차 내적·외적으로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였는데 이 제도들의 한계와 개선점을 모색.

○ 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사

- 범죄 피해 유형별로 범죄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범죄 피해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 범죄피해자의 기존 심리적 특성을 기술하고, 범죄 피해 유형 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
- 크게 성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로 대별하고, 전자는 강간, 강간미수·강제추행으로 나누고, 후자는 가정폭력, 사회공동체 폭력, 기타로 나누어 해당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고찰.

○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국의 보호 및 지원 제도의 현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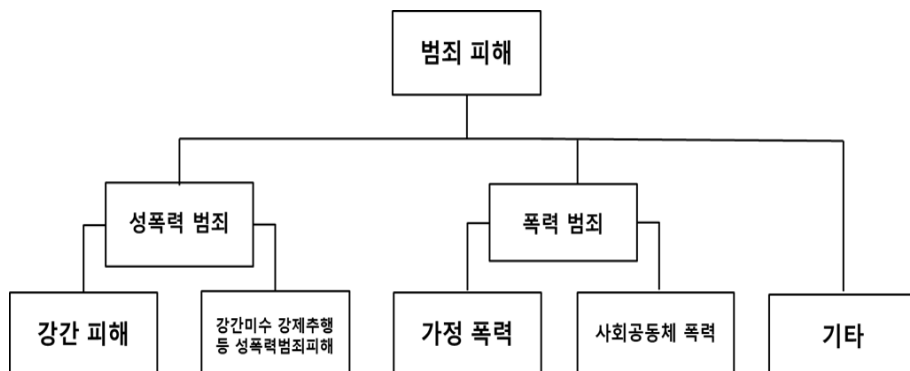
- 정신적 상해, 또는 인접 개념이 포함된 영국, 미국, 호주의 입법례를 고찰.
- 정신적 상해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입법례를 고찰.

□ 주요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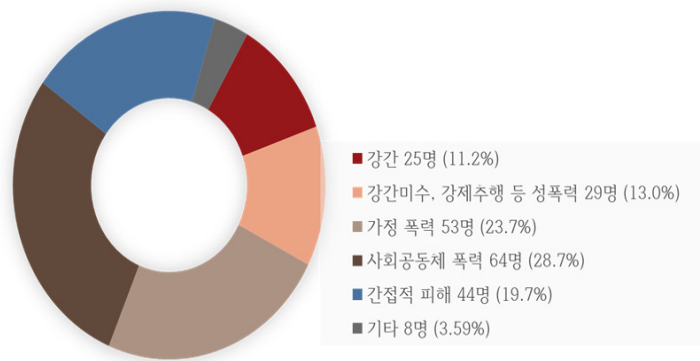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대한 법적 분석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정신적 상해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그 정신적 상해가 범죄피해로 인한 것인지의 판단여부가 임상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피해자의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입원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맹점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함을 선언한 정도에 불과.
- 우리 법원은 범죄로 인한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하였는데, 특히 강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부상은 없으나 PTSD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해를 인정하여 정신적인 상해가 신체적인 상해와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

○ 범죄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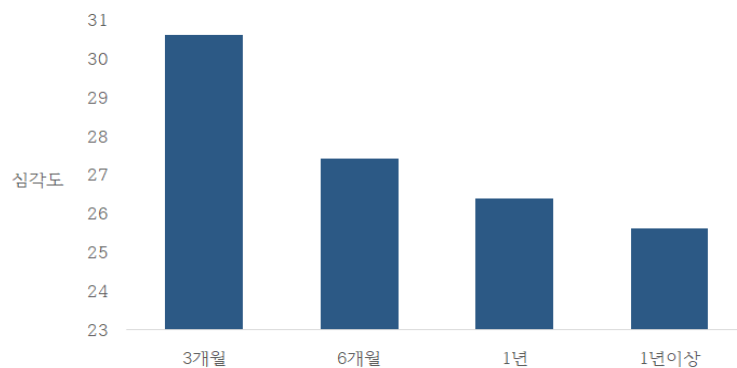
〈그림 1〉 범죄 유형별 피해자 건강조사 분류



〈그림 2〉 전체 조사대상자(223명)의 범죄 피해 유형



〈그림 3〉 조사 당시, 사건 직후 PTSD 진단율



〈그림 4〉 외상 사건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PTSD 심각도

- 범죄 피해 직후의 외상 반응은 시간이 흐른 뒤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PTSD로 발전 될 수 있는데 사건 직후 예방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PTSD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음. 외상 이후 3개월 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PTSD 진단율이 낮음.
- 전체 조사대상자 223명의 약 65.5%가 조사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되었고, 정도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각도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심각도는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 간접적 피해, 강간 피해, 가정폭력, 사회공동체 폭력 순.
- 사건 직후 모든 범죄 유형에서 약 90%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율을 보였으며, 심각도는 강

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사회공동체 폭력, 간접적 피해 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즉, 외상 사건 이후 초기에 심리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에 관한 외국의 법과 실무 사례 분석

- 영국의 경우 정신적 피해의 배상요건은 인식가능한 정도의 질병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러한 질병에는 임상우울증, PTSD, 신경 장애 등이 포함되는데 ‘DSM-IV’와 ‘ICD-10’에 의한 진단에도 단순한 정신적 고통과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범죄의 성립이 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를 파악하고 있지만 신체적 상해와 명확하게 정신적 상해를 구별하여 보상을 지급.
- 미국의 경우 정신적 상해의 법적인 의미는 심리적 고통, 범죄 후 고통,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로 분류되는데, 범죄 피해가 발생한 후 발견되는 각종 심리학적 증상과 사회적 장애등을 반영. 특히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심리적 상해(psychological Injury)’는 심리적 상해의 영역은 자신의 사고, 느낌 및 행동의 손상 또는 기능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손해 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
- 호주의 경우 형법 제2장에서 ‘정신적 손상(mental impairment)’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은 지속 기간이 길든 짧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정신의 근본적인 병리학적 병태를 지칭. 또한 정신적 상해의 증거를 명시적으로 제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신적 상해의 범죄성립을 법문언상으로 명문화 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상은 복지원호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넓은데 특히 절도 또는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
- 일본의 경우 중상질병 급부금은 가료기간 1개월 이상, 입원기간 3일 이상이며 범죄피해에 의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증상의 정도가 3일 이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입원기간이 없어도 대상이 되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급부금 지급의 요건이 신체적 상해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정책제언

○ 트라우마 개념의 모호성과 PTSD 진단의 한계

- 트라우마를 살인과 살인미수, 중상해를 초래하는 폭행사건, 강간 등과 같이 다소 협소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PTSD만을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과잉진단이나 증상 과장 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

○ 후유증상의 사건관련성 척도 고찰

- 기왕증의 유무, 사건 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소의 유무, 증상의 강도가 사건의 심각도에 부합

■ ■ ■ ■

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증상의 사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함.

○ 조기개입 및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

- 조기에 적절한 심리적 개입이 진행된다면, 만성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음.
- 범죄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 뿐 만 아니라 유가족 등에 대한 치료적 지원 확대가 필요.

□ 정책 기대효과

- 법개념으로서 트라우마에 대한 용어 정립
-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산정 기준 마련
-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법상 상해인정 기준 마련하여 가해자의 법적 책임 근거 마련
- 범죄발생 직후부터 수사절차가 완료된 이후 까지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가능한 국가지원프로그램 구축

□ 주요 키워드

※ 범죄피해자, 정신적 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트라우마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연구책임자: 김한균 연구위원(법학 박사, hankyun@kic.re.kr)

내부공동연구자: 윤해성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 sung9987@kic.re.kr)

김경찬 연구위원(형법학 박사, cioletmoi@kic.re.kr)

박은정 파견공무원(부장검사, sujata@kic.re.kr)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과학수사 분야에서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국내외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종합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책의 추진방안을 제시함.
- 국가과학수사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수사기관의 국민인권보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과학수사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 국가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의 체계적 발전과 4차산업혁명시대 수사의 과학화를 비롯한 형사사법개혁에 중요한 정책과제임.
- 과학수사 정책과 포렌식 기법 발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의 기준이 될 지향가치는 국민인권 보장,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보장, 수사효과성 증진, 형사사법개혁 기여.

□ 연구방법

- 제1년차(2018년)에는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를 개관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과제목록을 기반으로
- 제2-5년차(2019-2022년) 중에는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 제6년차(2023년)에는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및 2018-2022년 변화발전 내용 보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의 형태로 완결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체계

연구년차	연구단계	주요과제	목표성과	공동연구체계 및 연구분장	
1 (2018)	제1단계	과학수사 3대분야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정책현안분석 및 개발과제 개관	국가과학수사정책 지향가치 도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과학수사이론 및 국가과학수사정책 연구
2 (2019)	제2단계	정책적 지향해야 할 기본가치 (국민인권, 국가안보, 수사효과,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개별 현안별 정책대안 및 기법개선 방안 연구	국민인권보장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과학수사 관련 비교법제 연구
3 (2020)			국가안보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주요판례 연구
4 (2021)			수사효과성 개선을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및 정책 연구
5 (2022)			형사사법개혁 기여를 위한 과학수사정책방안 제시	국립경찰대학교	바이오 포렌식 기법 및 정책 연구
6 (2023)	제3단계	국가 과학수사발전 종합대책 및 제도정비방안 수립 및 2018-2022년 변화발전 내용 보완	국가과학수사정책 종합백서	한국법심리학회	법정심리 및 진술분석 기법 및 정책 연구

○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제1장은 국내 과학수사 법제 현안과 입법정책 분석은 과학수사 법제현안과 과학수사 입법정책을, 제2장 경찰 과학수사 정책 현안은 경찰 과학수사 관련 분법관련 현안과제, 업무 및 조직관련 현안과제, 전문화 관련과제, 발전과 협력 문제, 그리고 경찰 과학수사와 인권보장 및 윤리를 다룸.
- 제3장 검찰 과학수사 정책 현안에서는 검찰 과학수사의 연혁 및 발전과정, 검찰 과학수사의 정책현안, 과학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해 정리하고, 제4장 국내 포렌식 학계의 연구현안에서는 국내 포렌식 관련학계의 현황, 과학수사 법관련 연구현안, 디지털포렌식관련 연구현안, 바이오포렌식관련 연구현안을 정리함.
- 제5장 국가과학수사 정책 지향가치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서는 증거법과 인권보장, 압수수색과 인권보장, 바이오 및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대해 분석.

○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및 법적 과제

- 제1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각각 미국, 독일, 일본의 과학수사정책 및 법제 발전을 소개하고 분석.
- 제2장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의 국제적 기준에서는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 위원회, 유럽 개인 정보보호법과 포렌식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에서는 인터넷 패킹 감청,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및 기지국 수사, 기지국 수사 사안을 분석하고,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에서는 각각 미국, 독일, 일본의 과학수사 판례동향을 소개하고 분석.

- 제4장 과학수사절차상 통신수사 법제개선과제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제와 판례를 비교분석.

○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 제2장 첨단과학기술의 등장과 디지털포렌식 현안과제 부분에서는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포렌식 도전환경, 디지털포렌식의 확장과 적용법률의 확대, 체포현장에서 디지털증거 긴급압수수색, 디지털증거 복호화 대응 및 규제법제에 대해 설명하고, 제3장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권보장 방안에서는 인권보장 중심의 디지털 포렌식 모델 설계, 새로운 강제처분으로 정보영장 제도 도입, 저장매체 압수후 분석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구체적 보장방안, 디지털포렌식 전담조직의 중립성 및 현장지원 확대 논의.
- 제4장 디지털포렌식 발전과제와 국가전략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본법 제정, 디지털포렌식 연구기관 설립, 디지털포렌식 기술정책 체계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직무윤리 제정 방안을 제시.

○ 과학수사와 바이오포렌식 현안과 발전 과제

- 제2장 바이오 포렌식 증거와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부분에서는 바이오 포렌식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바이오 포렌식 증거와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실제 형사사건에서 바이오 포렌식 증거가 문제된 사례들을 분석.
- 제4장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감정(鑑定)절차 정비에서는 바이오 포렌식 감정실무 현황 및 개선점, 법과학자의 윤리규범 정비, 감정절차에서의 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현안과 발전 과제

- 제2장 거짓 탐지에 대한 법심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에서는 국내외 연구 최신 동향을 개관하고, 제3장 폴리그래프 관련 현안과 발전과제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기법, 폴리그래프 검사 타당도 관련 연구 동향, 폴리그래프 검사 관련 실무상 활용 실태, 폴리그래프 검사관련 정책적 발전 방향을 분석.
- 제4장 진술분석 및 행동분석에서는 각각 진술분석 방법과 행동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제5장 판례를 통한 거짓 탐지 기법의 증명력 부분에서는 판례를 통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증명력과 진술분석의 증명력, 거짓탐지 결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분석하고, 제6장에서 거짓 탐지 기법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

□ 정책제언

- 과학수사는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과 개인의 인권침해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보다 공익을 실현하는 수사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세부적 절차와 함께 과학적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

- 과학수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객관성이 절차적으로 보장될 필요하므로, 증거의 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재판에 활용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증거와 관련한 반대 당사자 등의 제거나 문제 제기에 충분하고 설명과 관련 대응이 가능해야 함.
- 그 동안의 디지털포렌식 모델이 증거의 무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피압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절차와 권리가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렌식 모델이 추구해야할 이념 혹은 원칙으로서 피압수자 등의 “인권보장”을 필수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기법 현안과 평가를 정리하고, 정책 전망과 향후 과제 전망으로서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국가안보·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기법 발전 연구과제를 제시.
- 과학수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 도입활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대응을 통해 형사사법 효과성과 공정성을 함께 증진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국내외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 법제, 전담기관, 정책 및 기술발전 현황과 정책적 논점들을 점검하여 체계적 국가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대책의 종합적 추진방안을 제시.

□ 주요 키워드

※ 과학수사, 인권수사, 디지털포렌식, 바이오포렌식, 법정심리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연구책임자: 박형민 연구위원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